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발간사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국가의 신인도와 연결된 '소프트파워'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는 사회 전반의 낭비요소와 불공정요소에 대한 점검과 제거를 통해 구축될 수 있으므로, 법 · 제도상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하는 데 기준이 되는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 · 정비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2006년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상 내재하는 과도한 재량이나 불투명한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정부 신뢰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0년에 중앙행정기관의 제 · 개정 법령안 1,269개를 평가하여 403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 개선하였고, 현행법령과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도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담당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전반적인 개념을 알기 쉽게 만화로 소개하였고, 부패영향평가의 9개 기준별 주요 사례를 삽화와 더불어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담긴 생각나누기 코너를 신설하여 각 기관 담당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자치법규 및 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각급기관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 O N T E N T S

제1장 부패영향평가 소개 7

제2장 평가 항목별 주요 개선 사례 13

제3장 제·개정 법령안 주요 평가

제1절 제·개정 법령안 평가 실적 분석 35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44

1. 재정·경제 분야

1) 기획재정부 44

2) 공정거래위원회 62

3) 금융위원회 65

2. 산업·개발 분야

1) 국토해양부 76

2)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포함) 92

3) 고용노동부 121

4)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포함) 131

3. 환경·보건 분야

1) 환경부 138

2) 보건복지부 151

3) 여성가족부 163

4. 일반행정 분야

1) 국무총리실 174

2) 행정안전부(경찰청 포함) 180

5. 교육·문화 분야

1) 교육과학기술부 185

2) 문화체육관광부 193

6. 법무·국방 분야

1) 법무부 199

2) 국방부 204

생각나누기 코너 206

제4장 현행법령 평가

제1절 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 209
제2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 228
제3절 사행산업 수익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256
제4절 교육 분야 선심성 예산 집행 차단 ····· 287
제5절 특별교부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 296
생각나누기 코너 ····· 318

제5장 자치법규 평가

제1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진단·평가 ····· 321
제2절 버스 운송 보조금 관련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 ····· 322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 직접평가 사례 ····· 344
제4절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입법례 사례 ····· 348
생각나누기 코너 ····· 354

제6장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진단·평가 ····· 357
제2절 인사·감사·계약 등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 359
제3절 심의·의결위원회 사규 부패영향평가 ····· 364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자율평가 개선과제 ····· 367

부록

1. 부패영향평가 제도 안내 ····· 399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410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8
4. 공익신고자 보호법 ····· 446

제 1 장 부패영향평가 소개

부패영향평가는 무엇인가요?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부패영향평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패영향평가는 무엇인가요?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부패영향평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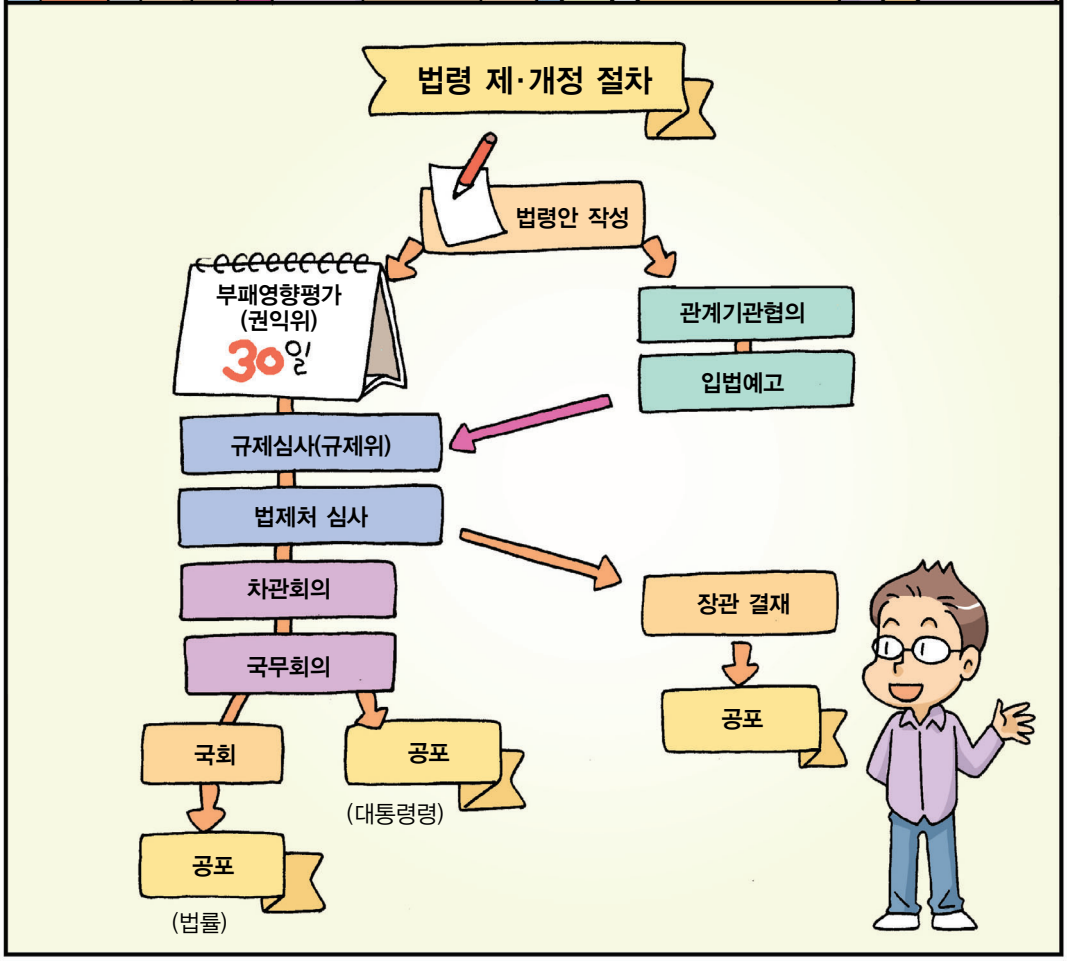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닐텐데 그 많은 법들을 권익위에서 처리하기는 벅차지 않을까?
권익위는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 · 이해관계자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 하죠.
공공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자문
부패방지를 위한 거라지만 권익위의 개선의견 반영이 그렇게 쉬울까?
부패영향평가 후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은 반영한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구요. 반영되지 않으면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소관 기관
결과
권익위
실제로 거의 모든 개선의견이 법안에 반영되고 있어요.
사회적이슈
파급효과
법안반영
부패 요소법령
권익위의 개선 의견이 거의 법안에 반영된다니…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매우 좋은 제도군
그나저나 삼촌 정말 똑똑하다~! 덕분에 쉽게 알게됐어~
저희도 제대로 알아야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죠~!
하하하
하하

제2장 평가 항목별 주요 개선 사례

사례1 | **준수의 용이성 중 준수부담의 적정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례2 | **준수의 용이성 중 제재규정의 적정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례3 | **준수의 용이성 중 특혜발생 가능성**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사례4 | **재량의 적정성 중 재량규정의 명확성**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사례5 | **재량의 적정성 중 재량범위의 적정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사례6 | **재량의 적정성 중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사례7 | **행정절차의 투명성 중 접근성·공개성**
전기사업법 개정(안)

사례8 | **행정절차의 투명성 중 예측가능성**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사례9 | **행정절차의 투명성 중 부패 통제장치**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사례 1

준수의 용이성 중 준수부담의 적정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0조의2(협회 가입 의무 및 윤리규정) 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및 제2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점 및 개선안

- 민간 협회에 감정평가사 · 법인의 의무 가입은 자율권 침해

  • 협회의 의무 가입은 권한과 영향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여 감정평사사 자율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입 의사가 없는 회원에게 협회비와 감정평가 수주의 수수료 납부 등을 강요

- 부감법의 자율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불부합

  • 규제개혁위원회(1998/1999년)는 협회를 의무 가입 단체에서 임의 단체로 변경하여 국토부(1999.3.31)는 협회 회원의 의무가입을 삭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9.3.31.)」 제30조(감정평가업협회) 제4항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조항을 개정 삭제

⇨ 공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독점 추천하는 조항 삭제

사례 2

준수의 용이성 중 제재규정의 적정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7조의2(과징금)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7조제1항의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안

- 중앙관서의 장은 공정한 계약질서 위반자에게 개정전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공부문 입찰 · 계약과정 특히, 대형 공사계약에서 관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제공, 부정한 청탁 등 부패행위 빈발하고 있음에도 대형 부패사건의 경우에도 금전적인 부담만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 저하로 인한 계약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곤란

  ※ 공공부문계약 발주건수가 증가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201건 '08년 1,272건 '09년 1,533건)

- 또한, 과징금 부과액을 계약금액(또는 추정가격)의 10% 이내로 한정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

  ※ 건설산업기본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등 유사입법례는 30% 범위에서 부과

⇨ 뇌물제공, 입찰담합 등 중대한 계약질서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상향할 필요(예시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30%)

사례 3

준수의 용이성 중 특혜발생 가능성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제15조(국 · 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 · 개발 · 제조 · 가공 · 조립 · 재생 · 정비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 ·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안

- 영리사업자인 항공우주사업자에게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 특혜 확대 등으로 인한 국가 ·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우려

  ※ 국 · 공유재산을 영리사업자에게 무상임대의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정도이며, 기타 '신 ·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경우에는 유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국·공유 재산 유·무상 임대 등에 대한 선택기준 부재하여 담당자 재량에 의하여 국 · 공유 재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각 · 임대될 수 있어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 및 무상으로 국·공유 재산을 이용하려는 업체의 로비발생 소지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는 유상으로만 국·공유재산을 매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책적 목적 등으로 무상임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무상 매각·임대 선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상 임대내역 등을 공개

사례 4

재량의 적정성 중 재량규정의 명확성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안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제점 및 개선안

-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단체 또는 동일업종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률에서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지역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사용한 불확정 개념(현저하게, 나쁜 영향, 미칠 우려 등)을 반복,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선별적 · 자의적 법 적용 소지
-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사업조정 심의 전 사업조정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기업 및 사업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불법로비 발생 가능성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행령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지역범위 규정 중 법률에서 반복 사용된 불확정 개념을 삭제하고, 지역범위를 구체화 · 객관화하도록 권고

※ 피해지역내 상권의 특성, 중소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

사례 5

재량의 적정성 중 재량범위의 적정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 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내용생략)

2. 과징금의 산정기준
   (내용생략)

   가. ~ 다. (생략)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위기 · 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안

- 감경한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50% 이내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감경이 면제수준 까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과징금 부과가 결과적으로 축소 운영될 소지

  ※ '09.6. 공정위는 (주)A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 과징금 751억원을 산정하고도, 경제위기, 경영상황 악화 등을 들어 시행령상의 50% 감경범위를 초과하여 감경율 80%를 적용하여 특혜 논란

⇨ 원칙적으로 감경은 50%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유사입법례도 과징금 감경을 5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

⇨ 예외적으로 50%를 초과하여 감경하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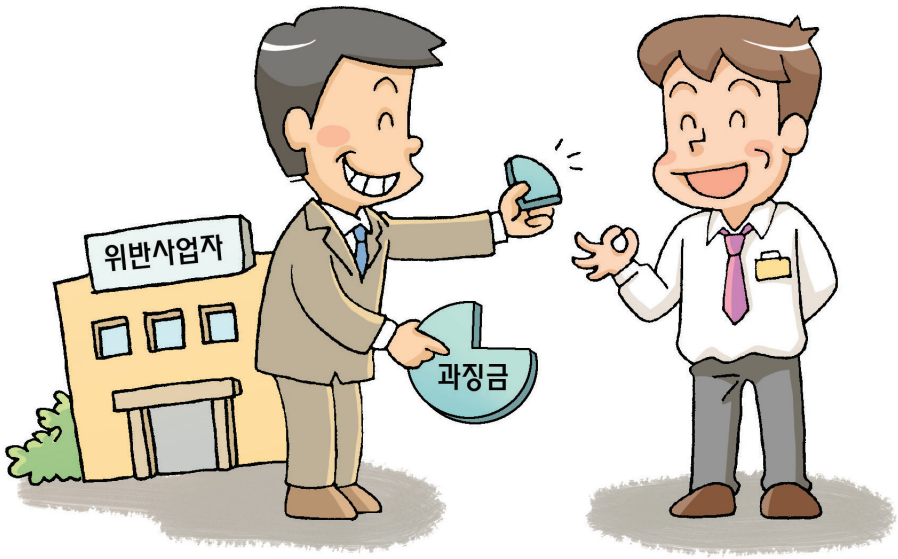

사례 6

재량의 적정성 중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17조(사고조사센터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사고조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품의 사고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출 것
2. 사업자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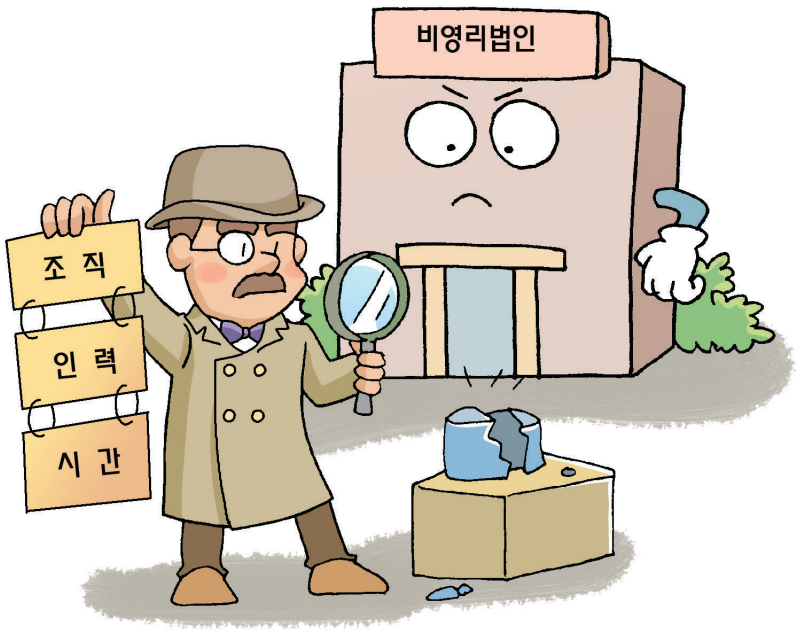

문제점 및 개선안

- 센터의 사고조사 결과는 제품 제조업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센터 지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

  ※ 도요타는 브레이크 결함 등으로 대규모 리콜사태를 거치면서 손실이 1800억엔(약 2조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10. 2. 4, 연합뉴스)

- 센터 지정기준이 "제품의 사고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성" 등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어 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센터 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및 부적합한 기관 지정으로 조사결과의 공정성 · 신뢰성 저해 우려

⇨ 센터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 인력 · 시설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품사고 조사를 행하기 위한 조직 · 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3. 제품의 사고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조사활동과 관련 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사례 7

행정절차의 투명성 중 접근성·공개성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 없이 제2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안

- 송전선로 등 전기설비 설치 등을 위하여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은 공익 목적 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인하는 상대방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그러나 평가대상 조문은 토지 소유자 · 점유자 부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등 최소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타인 토지출입을 시장·군수 등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 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자유권이 침해될 우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군부대 훈련장 확장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토지출입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토지 소유자 · 점유자의 주소 · 거소 불분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토지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8

행정절차의 투명성 중 예측가능성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법 제11조의4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탄광에서 근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가구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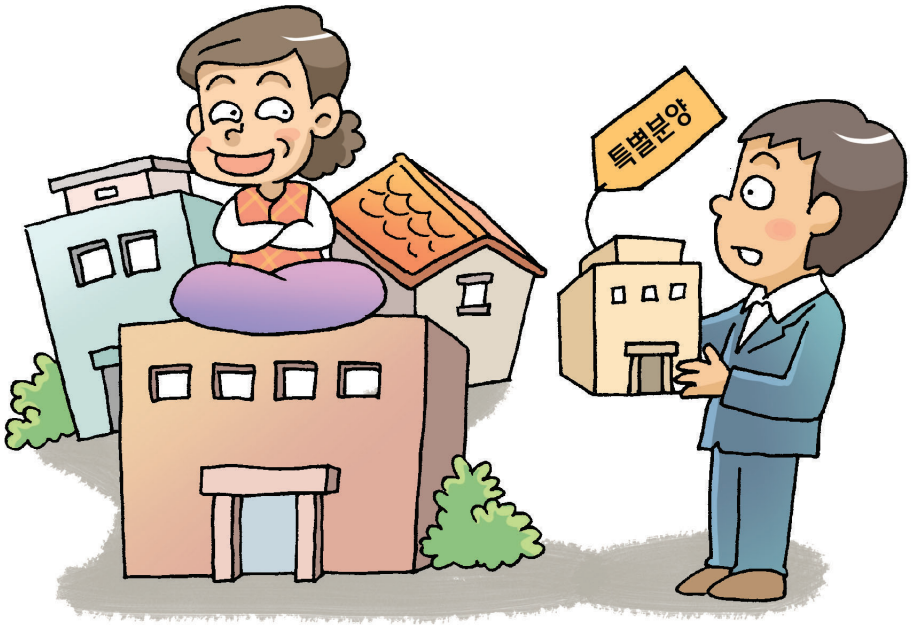

문제점 및 개선안

- 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은 국민(탄광근로자 및 유족)의 법률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대상자(200여만 명)에 비해 특별공급 가능 주택물량(연간 2만 채 정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준 ·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선공급이 이루어질 필요

  ※ 감사원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 감사 결과('06.12.)

  • 지체장애 3급인 ○○○는 매월 주민등록을 전국으로 이전, 위장전입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19채를 특별공급 받아 이중 10채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 그러나 평가대상 조문은 대략적인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의 정함도 없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를 원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담당자 자의에 의해 입주대상 기준이 결정될 우려

⇨ 무주택기간, 폐광지역 거주기간, 탄광 재직기간 등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평가요소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입주대상 순위 결정

※ 평가요소별 구체적인 점수배분, 제출서류, 공급절차 등 세부적인 평가요소는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규정

사례 9

행정절차의 투명성 중 부패 통제장치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 ④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식경제부 ·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각각 다음 각 목 별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의 임원**

나. 해운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다. **해운물류 관련기업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해운물류분야에서 나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문제점 및 개선안

- 대량화물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진출하려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등록여부가 결정됨

  ※ 정책자문위원회 : 해운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여부를 사실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과 같은 대량화물은 전체 화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여부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국내 해운운송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해운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투명성 저해 우려
- 또한, 기존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여부는 자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음성적인 로비 소지

  ※ 회사의 선박편 증선을 위해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해운업체 前 부회장 구속('08.7월, 한국일보)

⇨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물류 관련 기업체 등을 위원자격에서 배제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도입

※ 다만, 협회 · 해운물류 관련기업체 종사자 등 관계자 의견진술 또는 청취기회 부여

제3장 제·개정 법령안 주요 평가

제1절 제·개정 법령안 평가 실적 분석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1. 재정·경제 분야
   1. 기획재정부
   2. 공정거래위원회
   3. 금융위원회

2. 산업·개발 분야
   1. 국토해양부
   2.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포함)
   3. 고용노동부
   4.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포함)

3. 환경·보건 분야
   1. 환경부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4. 일반행정 분야
   1. 국무총리실
   2. 행정안전부(경찰청 포함)

5. 교육·문화 분야
   1. 교육과학기술부
   2. 문화체육관광부

6. 법무·국방 분야
   1. 법무부
   2. 국방부

제1절 제·개정 법령안 평가 실적 분석

1. 부패영향평가 실적(2006년~2010년)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입안단계에서부터 법령분석·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패의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통제의 수단으로 도입·시행되었다.

'06. 4월부터 평가업무를 실시한 이래 2010년까지 총 5,808개 법령을 평가하였고, 이 중 1,058개(18.2%) 법령에 대해 2,503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법령 소관기관에 개선 권고하였다.

〈표 1〉 연도별 부패영향평가 실적

(단위 : 개, %)

연도	접수 법령 수	평가 법령 수	개선의견 법령 수	개선율	개선의견 건수	수용율
2006	671	609	119	19.54	359	77.9
2007	1,150	1,168	259	22.17	737	72.1
2008	1,366	1,368	269	19.66	496	82.8
2009	1,386	1,394	229	16.43	508	85.3
2010	1,288	1,269	182	14.34	403	90.7
계/평균	5,861	5,808	1,058	18.21	2,503	80.8

※ 개선율 : 개선의견법령 수/평가법령 수

※ 수용율 : 부처수용(규개위-법제처 심사이전)의견 수/평가담당 부처 개선의견 수

〈그림 1〉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율과 수용율 추이를 보면 개선율이 2008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신정부 출범('08)이후 '국민 불편 법령 개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정책' 을 통해 제 · 개정 법령이 증가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수용율은 연도별로 매우 높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사전 업무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 평가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개선율과 수용율 연도별 추이

■ 분야별 현황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의 분야별 분포도를 보면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소관법령으로 구성된 산업 · 개발 분야가 1,712개 법령으로 29.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나, 개선율은 두 번째인 20.9%로 358개 법령이 개선되었다.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인 분야는 391개 법령 중 91개를 개선 권고한 과학/정보 분야로 23.3%를 나타냈다. 그 밖에 환경/보건 분야는 1,021개의 법령을 처리하였고 개선율은 19.7%로 201개 법령을 개선했다.

〈표 2〉 분야별 접수 및 개선 법령 현황('06.4.1.~'10.12.31.)

구 분	계	산업 개발	환경 보건	교육 문화	재정 경제	일반 행정	과학 정보	국방 보훈	형사 사법	기타
접수법령	5,861	1,712	1,021	864	769	447	391	408	244	5
비율(%)	100	29.2	17.4	14.7	13.1	7.6	6.7	7.0	4.2	0.1
개선법령	1,058	358	201	164	107	49	91	65	22	1
개선법령 비율(%)	18.1	20.9	19.7	19.0	13.9	11.0	23.3	15.9	9.0	20.0
개선건수	2,503	841	430	408	274	97	263	142	45	3

※ 개선법령 비율(%) : 개선법령 수/접수법령 수

〈그림 2〉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현황('06.4.1.~'1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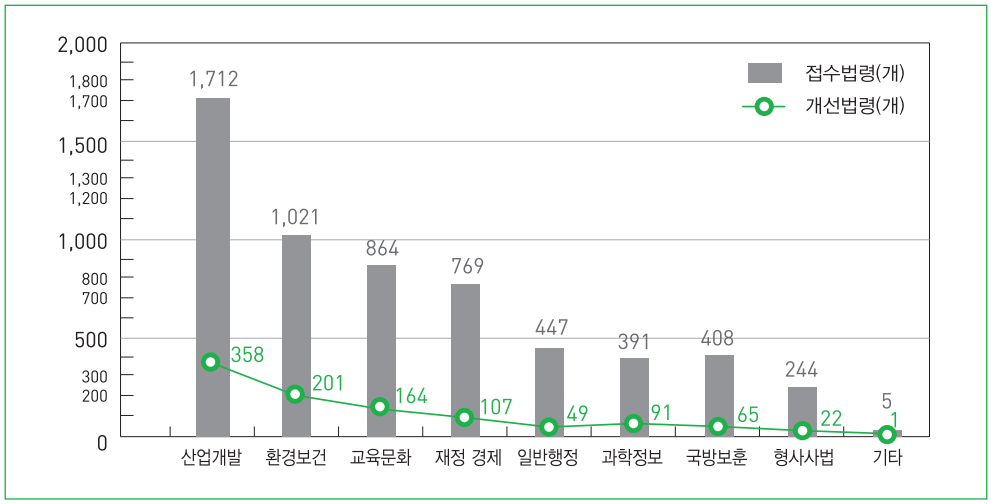

■ 평가 기준별 현황

개선사항 중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등 재량의 적정성 항목에서 1,139건(46%)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고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서는 901건(36.0%)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등 준수의 용이성 항목에서도 463건(18%)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다. 특히 위의 9개 세부기준 중에는 부패통제장치가 522건(20.9%)으로 가장 높았다.

〈표 3〉 평가기준별 개선의견 현황('06.4.1.~'10.12.31.)

(단위 : 개)

중점평가 기준		총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 적정성	140	17	31	40	35	17
	제재규정 적정성	140	13	21	34	35	37
	특혜발생 가능성	183	37	83	26	19	18
	소계	463	67	135	100	89	72
재량의 적정성	재량규정 명확성	473	74	118	124	96	61
	재량범위 적정성	223	33	64	49	53	24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443	74	140	90	69	70
행정 절차의 투명성	소계	1,139	181	322	263	218	155
	접근성 · 공개성	141	16	25	28	47	25
	예측가능성	238	22	65	54	74	23
	부패통제장치	522	73	190	51	80	128
	소계	901	111	280	133	201	176
합 계		2,503	359	737	496	508	403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준수의 용이성 항목 순으로 개선의견이 분포되었으나, 2010년에는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이 가장 높고 재량의 적정성과 준수의 용이성 순으로 개선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림 3〉 연도별 평가기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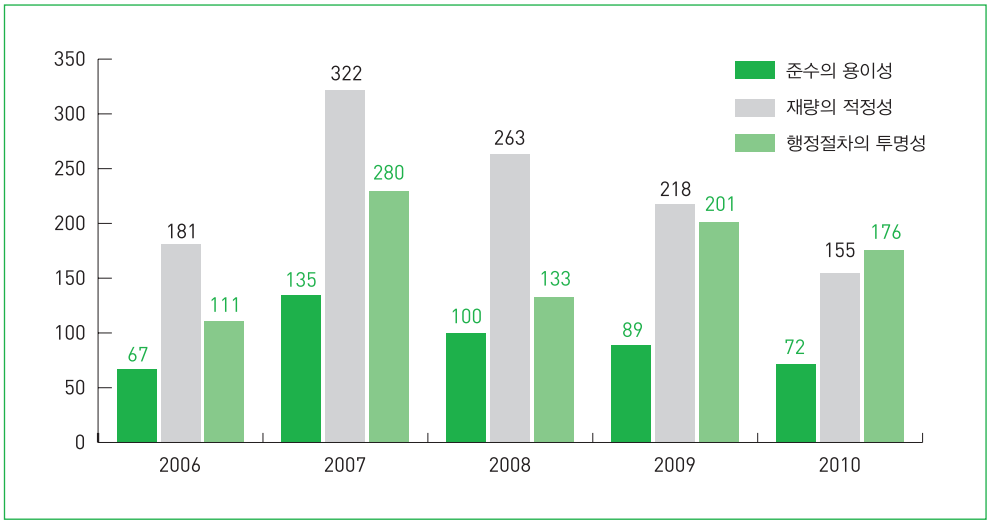

■ 개선의견 유형 현황

개선의견의 내용은 당해 법령의 구체화(943건, 37.6%), 부패통제장치 마련(371건, 14.8%), 하위법령에서의 구체화(295건, 11.8%), 재량범위 축소 · 제한 (206건, 8.2%)등의 개선사항이 있었다.

〈표 4〉 개선의견 유형

(단위 : 개, %)

개선의견 내용	평가 건수	비율	개선의견 내용	평가 건수	비율
당해법령 구체화	943	37.6	접근성 · 공개성 확대	113	4.5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295	11.8	예측가능성 제고	125	5
재량범위 축소 · 제한	206	8.2	부패통제장치 마련	371	14.8
특혜 제거 · 축소	112	4.5	기타 삭제 · 폐지	72	2.9
부담 완화 · 축소	57	2.3	기타 수정 · 보완	44	1.8
제재 적정화	82	3.3	기타 신설 · 도입	83	3.3
합 계				2,503	100

2. 2010년 부패영향평가 실적

2010년 부패영향평가로 처리한 법령은 〈표 5〉와 같이 법률이 278개인 21.9%를 차지하여 처리 건수는 두 번째이나, 개선율은 21.5%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령은 처리 건수가 515개(40.6%)로 가장 많았으나, 개선율은 13.8%를 보여 법률 보다 개선율이 낮았다. 총리령/부령의 처리 건수는 37.1%인 471개이고, 개선율은 10.8%였으며, 행정규칙은 5개로 0.2%를 차지했다. 또한, 제정 · 개정의 법령 구분에서는 제정 법령이 97개로 7.6%를 차지하고, 개정법령의 평가가 92.4%인 1,17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법령별 평가현황

(단위 : 개, %)

구분 \ 법령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계	1,269	278	515	471	5
제정 법령	97	17	42	38	0
개정 법령	1,172	261	473	433	5
개선의견 법령	182(403건)	60(146건)	71(148건)	51(109건)	0
원안동의 법령	1,087	218	444	420	5
개선법령 비율	14.3	21.5	13.8	10.8	0

※ 개선법령 비율 : 개선의견 법령수/처리법령 수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권고 의견은 182개 법령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403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나머지 85.7%에 해당하는 1,087개의 법령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의견이 통보되었다.

〈그림 4〉 법령별 개선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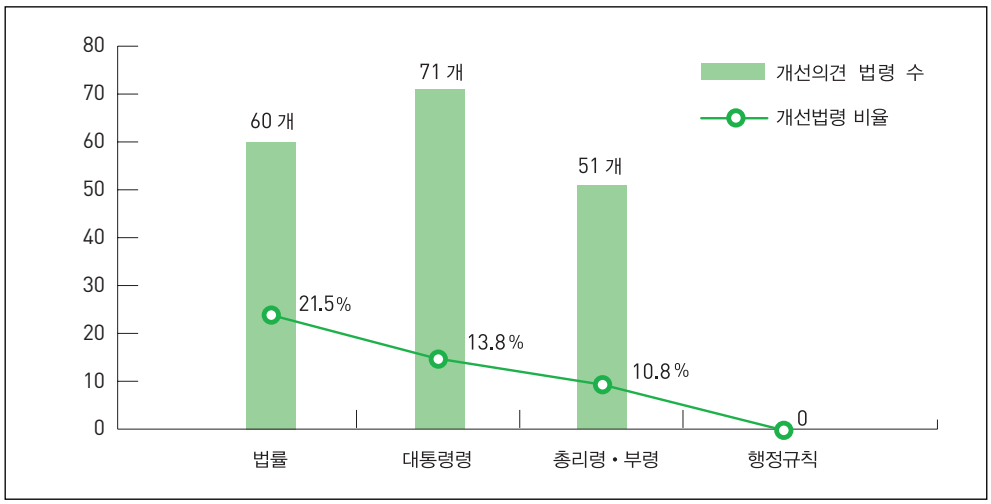

■ 월별 평가

월별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실적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월에 법령 처리 실적이 가장 많았고 4월부터 8월까지 전반적으로 매달 약 120건 정도를 처리했으며, 나머지 기간은 100건 안팎으로 분포되었다.

〈그림 5〉 월별 평가 법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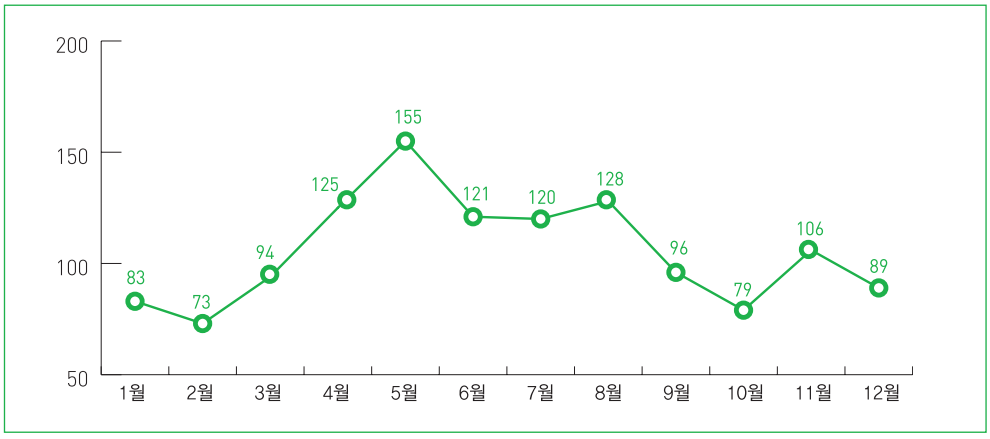

■ 기관별 평가

기관별 평가 법령수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가 213개로 가장 많이 평가되었고, 기획재정부가 114개, 보건복지가족부가 112개 순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 ·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표 6〉 기관별 평가 법령 현황

(단위 : 개)

기관명	법령수	제정	개정	기관명	법령수	제정	개정
국토해양부	213	12	201	여성가족부	23	3	20
기획재정부	114	7	107	금융위원회	20	0	20
보건복지부	112	6	106	특허청	19	0	19
교육과학기술부	94	4	90	산림청	18	1	17
농림수산식품부	79	14	65	국가보훈처	14	0	14
지식경제부	79	5	74	공정거래위원회	12	0	12
행정안전부	76	5	71	방송통신위원회	11	1	10
환경부	75	5	70	통일부	11	2	9
고용노동부	57	1	56	외교통상부	8	2	6
국방부	46	4	42	문화재청	7	4	3
법무부	43	8	35	병무청	6	0	6
문화체육관광부	31	2	29	국무총리실	6	4	2
소방방재청	31	0	31	법제처	3	0	3
중소기업청	24	0	24	기상청	2	0	2
경찰청	23	2	21	기타부처	12	6	6
총 계					1,269	98	1,171

(주 : 법령평가가 적은 부처는 기타부처에 포함하여 계상)

■ 기관별 개선의견

기관별 평가결과 개선의견을 권고한 법령 수는 국토해양부가 45개, 지식경제부 23개, 보건복지부가 17개, 교육과학기술부 11개 순으로 도출되었다.

〈표 7〉 기관별 평가결과

(단위 : 개)

기관명	법령수			개선	기관명	법령수			개선
	소계	원안	개선	의견수		소계	원안	개선	의견수
국토해양부	213	168	45	81	금융위원회	20	18	2	7
지식경제부	79	56	23	68	경찰청	23	21	2	5
보건복지부	112	95	17	32	공정거래위원회	12	9	3	5
고용노동부	57	47	10	27	국방부	46	43	3	4
교육과학기술부	94	83	11	26	소방방재청	31	28	3	4
기획재정부	114	106	8	21	특허청	19	18	1	4
환경부	75	69	6	17	산림청	18	14	4	4
행정안전부	76	73	3	15	문화재청	7	5	2	3
중소기업청	24	18	6	14	국가보훈처	14	14	0	0
농림수산식품부	79	69	10	13	방송통신위원회	11	11	0	0
법무부	43	37	6	13	통일부	11	11	0	0
여성가족부	23	18	5	11	외교통상부	8	8	0	0
문화체육관광부	31	25	6	10	병무청	6	6	0	0
국무총리실	6	1	5	10	법제처	3	3	0	0
감사원	1	0	1	9	기타	13	13	0	0
총 계						1,269	1,087	182	403

■ 평가기간 현황

평가기간은 부처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접수받아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말한 것으로 현행 「부패영향평가지침」에서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 내와 기간 외를 구분한 결과 1,167개(92%)가 기간 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평가기간 분포

(단위 : 개)

구 분	계	개선의견	원안동의
합 계	1,269	182	1,087
30일 이하	1,167	133	1,034
31일 이상	102	49	53

특히,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안동의의 경우는 1,087개 법령 중 1,034개의 법령인 95.1%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었고, 개선의견의 경우 182개 법령 중 73%인 133개 법령이 기간 내에 처리되었다.

〈그림 6〉 평가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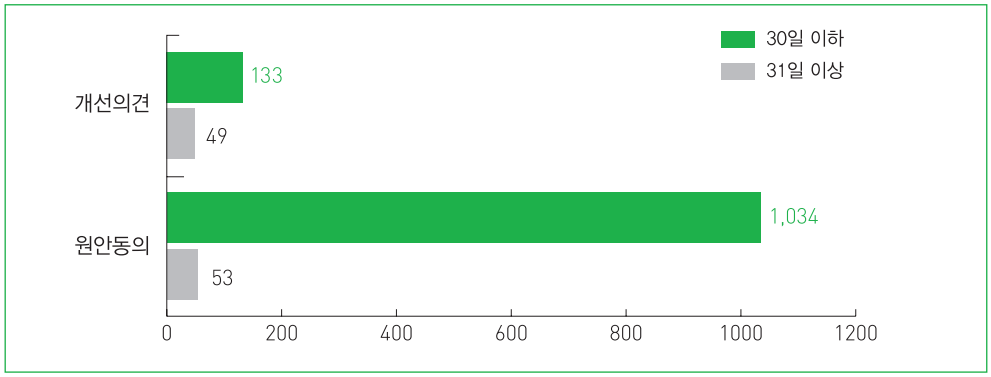

개선사항이 도출된 법령일수록 청렴도, 감사지적, 언론보도 등 부패실태자료의 수집과 전문가 자문, 기관협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 평가기간을 〈표 9〉에서 살펴보면 형사/사법 분야는 57개 법령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고, 일반 행정 분야는 74개 법령 중 71개(96%), 재정/경제 분야는 184개 법령 중 177개(96%)를 처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가기간을 준수하였다. 처리기간을 초과한 법률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방 · 보훈 분야와 환경/보건 분야로 각 76개 법령 중 65개(86%), 235개 법령 중 202개(86%)가 처리되었다.

〈표 9〉 분야별 평가기간

(단위 : 개, %)

분야 / 기간	계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방/보훈	산업/개발	일반행정	재정/경제	형사/사법	환경/보건	기타
계	1,269	36	188	76	415	74	184	57	235	4
30일 이하	1,167 (92%)	33 (92%)	177 (94%)	65 (86%)	381 (92%)	71 (96%)	177 (96%)	57 (100%)	202 (86%)	4 (100%)
31일 이상	102	3	11	11	34	3	7	0	33	0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1. 재정·경제 분야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 · 재정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예산 · 기금의 편성 · 집행 · 성과관리, 화폐 · 외환 · 국고 · 정부회계 · 내국세제 · 관세 ·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국유재산 ·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8개의 법령에서 21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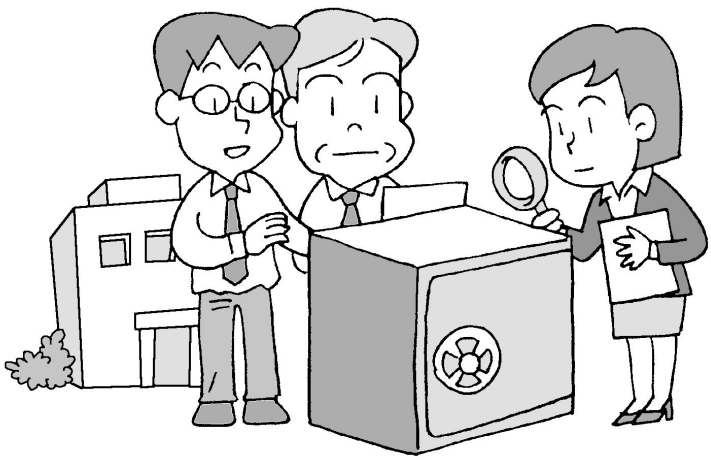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7조의2(과징금)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7조제1항의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예측가능성(3-2)

(2) 현황

- 중앙관서의 장은 공정한 계약질서 위반자에게 2년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등 21가지 사유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주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 계약의 부실 · 조잡 · 부당 · 부정이행	2월~2년
• 부당하도급	4월~1년
• 조사설계금액 · 원가계산금액 등의 부적정 산정	3월~6월
• 계약의 불체결 · 불이행	1월~6월
• 담합행위	6월~2년
• 입찰 · 계약 서류 위조 · 변조	6월~1년
• 고의 무효입찰	6월
• 입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	3월~2년
• 턴키입찰시 실시설계서 미제출 · 계약의 부실 · 조잡 · 부당 · 부정이행	3월

- 공공부문계약 발주건수가 증가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

구 분	'07년	'08년	'09년
발주건수	185,164	260,455	436,397
제재건수	1,201	1,272	1,533

● 이번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중앙관서의 장(자치단체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국가계약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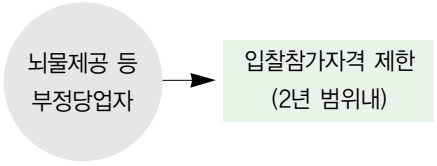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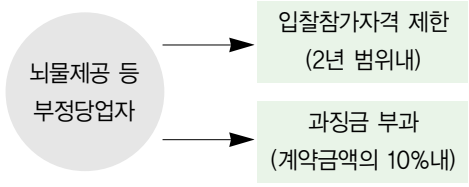

(3) 문제점

① 과징금 부과 제도의 불명확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 과징금 부과처분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

–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부적절" 또는 "과징금부과가 바람직"등 추상적인 요건은 실제 운용상 경제상황, 산업현황, 업계여건 등을 이유로 확대되어 과징금 제도가 남용될 우려

※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 요건

• 국가계약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계약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담합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향후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일뿐 당해 계약업무수행은 가능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계약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국가계약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없을 것임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

※ 입찰담합 등으로 모든 업체가 입찰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제재정도가 약화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오히려 계약질서 위반행위를 조장할 우려

● 부정행위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중에서 처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 등 또 다른 부패유발 가능성도 상존

② 뇌물제공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미흡

● 뇌물제공, 담합행위 등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계약질서 위반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부과

–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와 중복될 수 있어 이중제재 문제 발생 가능성

※ 계약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고,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 제82조제2항제5호, 국회계류중)에 따라 또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 입찰시 가격을 담합한 자는 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정거래법(제22조)에 따라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

– 계속적·상습적인 부정행위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금전적인 제재로 갈음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저하

● 과징금 부과액을 계약금액(또는 추정가격)의 10% 이내로 한정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

〈 부당행위 유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범위 〉

구 분	위반행위 유형	부과 범위
공정거래법(제22조)	부당공동행위(담합)	위반행위 전 기간 매출액의 10%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위반 등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1조)	불공정무역행위	거래금액에 100분의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명의신탁자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의2)	속임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담	부당금액의 5배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	부정 · 부당 진료비의 5배
외국환거래법(제12조의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인가	위반행위 취득이익 범위내

③ 과징금 부과 관리체계 불명확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곤란 및 운용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중앙관서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권이 있으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권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원화되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
- 개별계약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 심사를 당해 계약 소관기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하도록 하여 해당분야의 특수성 · 전문성을 담보하기 곤란하여 적정한 제재처분에 한계
- 과징금 부과권이 국가계약 총괄기관에만 부여되므로 권한의 집중과 복잡한 절차에 의한 행정의 비효율과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과징금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09년 1,533건)에 비해 제재수준이 낮은 과징금 부과 신청이 국가계약 총괄기관에 집중될 소지
- 이번에 신설되는 과징금 부과 제도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유사하며, 이 경우 과징금 부과권자는 영업정지 처분권자와 동일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권자 현황 〉

구 분	처분권자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장금
건설산업기본법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청장 또는 시 · 군 · 구청장	식약청장 또는 시 · 군 · 구청장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먹는물관리법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④ 과징금 제도 남용시 대형 부패사건 예방의 실효성 저하

- 공공부문 입찰 · 계약과정 특히, 대형 공사계약에서 관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제공, 부정한 청탁 등 부패행위 빈발
  - 대형 부패사건의 경우에도 금전적인 부담만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 저하로 인한 계약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곤란
-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제조 · 공사원가에 해당액을 반영하는 경우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⑤ 공공부문계약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배치

- 그동안 권익위에서는 공공부문 계약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계약제 법제화, 비리기업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

※ 공공계약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 뇌물제공의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청렴계약체결 법제화 권고('09.12)
- 지자체 · 공기업과의 계약에서 뇌물제공한 경우 국가기관에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의무화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10.1)
- 부패행위 건설업체 고발의무화 등 행정제재 실질화 제도개선('10.1)

-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에서도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① 과징금 부과요건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과징금 부과의 남용 방지

※ 과징금 부과요건(예시)

-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국가에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민(주민)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뇌물제공, 입찰담합 등 중대한 계약질서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제도 운용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권자 일원화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

※ 기획재정부 :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징금 부과 사유와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국가계약 운영 전반의 공정성 · 통일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부과제도의 엄격한 운용을 담보

※ 중앙행정기관 : 개별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재유형을 결정토록 하여 제재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7조의2(과징금)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계약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7조제1항의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⑥ (생 략)	제27조의2(과징금)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국가에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뇌물을 준 자,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④ 계약질서 위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상향 조정

-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상향할 필요 (예시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30%)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7조의2(과징금) ① (생 략)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27조의2(과징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방안 강구(시행령)

- 과징금 부과 적정성 심사의 전문성 · 객관성 확보 뿐아니라 공익성 ·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을 관계기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차수 명확히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7조의2(과징금)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의2(과징금) ① · ②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삭 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접근성과 공개성(3-1)

(2) 현 황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토록 규정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

-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가 곤란하여 보조사업수의 지속 확대 경향

〈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보조사업수 연도별 현황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규모(조원)	30.3	32.0	38.2	40.6	42.7
사업수(개)	1,163	1,421	1,711	2,003	2,081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평가는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무엇보다 평가자의 전문성과 평가과정의 공정성이 요구

(3) 문제점

-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 확보 미흡

  – 최근 보조금 횡령, 부정수급,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 · 수급과정에서의 끊임없는 위법 · 부당행위로 인하여 예산낭비 우려

※ '06년~'08년 까지 감사대상 543개 단체에 국고보조된 4,637억 원 중 140여개 단체와 관련하여 5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위법 · 부당하게 지원되거나 집행 〈'09.11. 감사원,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

-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보조사업 존치여부 평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정 불비
- 이에 따라 행정기관 자의적으로 평가단이 운영될 소지가 있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곤란

● 평가결과 공개 규정 미비로 운용평가의 투명성 확보 곤란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되므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최종수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
- 또한, 재정투입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에게도 지대한 관심사항임에도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국민 공개를 통한 평가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에 한계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고보조사업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예시)

- 위원의 장기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및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도입
-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 내부위원 및 공무원위원의 구성비율 상한선 설정 등

●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동법 개정법률안에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이 법 제2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 등에 전출(轉出)·예탁(預託) 또는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에서 기금 등의 자금소요, 심사평가 등을 감안하여 그 배분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

〈 연도별 복권기금 수입 현황 〉

(금액 : 억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계획)
합 계	28,803	27,047	27,197	27,395
복권판매수입	25,964	23,770	23,907	22,691
미지급당첨금	454	592	450	386
이자수입 등	96	160	202	203
기타 여유자금회수 등	2,289	2,525	2,638	4,115

〈 출처 : 감사원 감사자료 〉

●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등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법정배분금)

※ 복권수익금 :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 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

〈 법정배분 기금 · 기관 및 비율 〉

(금액 : %)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국민체육	국민체육 진흥기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근로복지 증진기금	국민주택 기금	산림환경 증진자금	사회복지 모금회	보훈복지 의료공단	문화재 기금	계
6.0435	6.0435	3.63	4.404	2.2245	1.8585	–	2.046	1.5	2.25	5	35%

* 국민주택기금은 법정배분 대상이나 배분비율 미규정(공익배분금으로 지원)

– 법정배분금을 제외한 복권기금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공모 · 선정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공익배분금)

〈 연도별 복권기금 지원액 현황 〉

(금액 : 억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계획)
합 계	10,316	10,715	10,235	7,713	9,048
법정배분금	3,230	2,994	2,777	1,943	1,873
공익배분금	7,086	7,722	7,457	5,806	7,175

〈 출처 : 감사원 감사자료 〉

● 이번 개정안(제22조제3항 · 제4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은

– 복권기금 사업에 대하여 복권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에서는 자금소요 및 심사평가 등을 감안하여 법정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문제점

● 복권기금 사업 평가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미흡

– 법정배분율에 따라 기금 · 기관 등에 의무 배분해 오던 것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배분율을 조정하여 배분

– 이에 따라 기금 사업평가가 해당 사업규모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그러나, 기금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임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로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 객관성을 담보하기 곤란

● 복권기금 법정 배분비율 조정 기준, 절차 불명확

– 법 제23조에서는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 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

– 이러한 법정배분율에 대해 자금소요 및 평가 등을 감안하여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비율 조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불명확하게 규정

– 이에 실효성 있는 기금배분 조정이 어려워 기금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복권기금의 공익 ·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취지를 훼손할 우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복권기금 사업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 기금 사업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운영단을 구성·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현재 기금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성과관리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고시)으로 규정하여 운영

–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예시)

• 평가위원의 장기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및 위원의 제척 · 회피 · 기피 등 이해충돌방지 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 위촉
- 기금사업 평가 결과의 공개 규정 마련 등

● 복권기금 법정 배분비율 조정 기준 및 절차 명확화

– 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기금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법정배분율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 · 관리한다. ② (생 략)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④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 · 관리한다. ② (생 략)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여부 및 기금지원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복권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복권기금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에서 **기금 등의 자금소요, 심사평가 등을 감안하여 그 배분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에서 **기금 등의 자금소요,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② ~ ⑤ (생 략)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거나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또는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그 밖에 이 법의 부대사업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③ ~ ⑦ (생 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접근성과 공개성(3-1)

(2) 현 황

- 민간투자 본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부대사업 활성화
  -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현행 12개 사업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
-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부대사업 허용 가능
  -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 시행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사용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시행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대사업을 허용토록 규정

● 부대사업 시행 필요요건

– 당해 총 민간사업비 범위 이내이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규정

(3) 문제점

●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적 통제장치 미흡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총 민간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 시행 가능

–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토지매입업무의 주무관청 대행, 국 · 공유지 및 공공시설의 점용 · 사용허가, 필요한 토지에의 출입허용, 토지등의 수용 · 사용 권한 부여

– 사업시행자에게 이러한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토지수용권 부여 등 특혜 지원이 있음에도 부대사업의 목적인 재정부담 완화, 사용료 인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 통제장치 미흡

– 이에 따라 이미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무관청의 부대사업 허용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곤란

※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할 경우,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BTL은 1천억) 이상 사업에 대해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 (법 제8조의2)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 사용료 ·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 · 평가 후 대상자를 지정 (법 제11조)

● 실시계획 승인 후 시행되는 부대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미비

–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대사업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주무관행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정보공개절차 규정의 미비로 투명한 정보공개에 한계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 시행을 허용하는 경우 재정부담 완화, 사용료 인하 등 부대사업 목적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부대사업 시행의 객관성 · 타당성을 확보토록 할 필요

●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 시행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할 필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③ ~ ⑧ (생 략)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대사업시행 목적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시행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부대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 ⑪ (생 략)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 심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등 경쟁정책과 불공정 약관심사,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등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법 시행령」 등 3개의 법령에서 5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8조의10(자율준수제도) ①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위한 제도("이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제도의 운영요건,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고시로 운영중인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의 법률상 근거규정 마련

- 법적근거 없이 고시('10.3.17., 고시 제2010-2호)로 운영하면서 사업자의 CP운영을 평가하여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 금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도입근거, 운영평가 및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근거를 마련하고 세부기준은 고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운영현황(고시) 〉

● **목적 및 도입요건**

-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법령에 대한 자율적 준수를 통한 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CP 모범적 운영평가를 통해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 직권조사 등에서의 혜택 부여

● **CP의 등급평가**

- CP도입 1년 이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고 경영자의 실천의지 등을 5단계로 평가하여 AAA(최우수) ~ D(매우 취약) 등 8등급으로 평가하여 이를 법 위반시 제재에 반영

● **등급평가의 활용**

등급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A1	0% 이내 감경	1년	공표크기 매체수 1단계 하향 및 공표기간 추가 단축
AA	15% 이내 감경	1년 6월	
AAA	20% 이내 감경	2년	

※ 담합, CP담당자 또는 임원의 직접개입, 과거 3년간 벌점 누산점수 5점 이상 등인 경우는 과징금 및 공표명령 감경 적용제외, 최근 2년간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등은 직권조사 면제 적용제외로 규정

(3) 문제점

- CP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하여 제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

  ※ 현재 공정위 고시('10.3.17., 제2010-2호)에서는 우대조치로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으로 구분('08.10.24. 이전까지 고발면제 및 하도급 벌점 감경이 포함되어 운영)

  ※ CP의 운영요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고시로 위임(개정안 제48조의10제3항)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과 이에 따른 우대조치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등 우대조치로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직권조사 면제 이외에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감경 등 제재처분의 감경 사항은 법률의 위임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고시를 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8조의10(자율준수제도) ①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이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10(자율준수제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준수제도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권조사 면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제도의 운영요건,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3)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2개의 법령에서 7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입 · 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 ⑤ (생 략)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이익 저해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허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접근성과 공개성(3-1)

(2) 현 황

● 법 제6조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자(카드회원,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신용카드 업자에게 자본금, 인적 · 물적시설, 사업의 건전성,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허가요건으로 규정

– 다만, 허가요건 중 인적 · 물적 시설 요건에 대하여는 경영건전성 확보와 거래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허가요건의 유지 의무를 면제

※ 인력 요건 : 300명 이상 임직원

물적시설 요건 : 30개 이상 점포, 일정수준 이상의 전산시스템 등

※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09. 12말 기준)

• 전업카드사(7)

– 은행계 : 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 기업계 : 삼성, 현대, 롯데

• 은행 겸영(14)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 유통계 겸영(11)

–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허가요건 유지의무 면제의 세부적인 요건을 개인정보의 보호, 신용카드 회원 · 가맹점 등의 이익 저해 우려 여부,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으로 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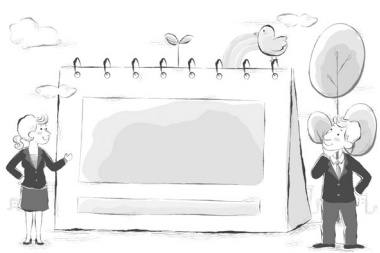

●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57조제2항)

–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허가 ·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회사에 주의 · 경고,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 직무정지 요구(법 제53조제4항)

(3) 문제점

● 추상적 · 포괄적인 허가요건 유지의무 면제요건으로 거래자 이익보호 한계 및 부패 유발 가능성

– 신용카드업자의 당초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건전성 확보와 거래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만 가능

– 이러한 예외적 허가요건 유지의무 면제 요건을 추상적 ·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예외 승인시 감독권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를 제공

※ 이번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 유지의무 면제 요건

①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고, ②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지연 등으로 인한 거래자 이익 저해 우려가 없으며, ③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 최근 신용카드업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구조조정 경영난 등으로 허가요건 유지가 곤란한 경우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동 규정을 악용하거나 불법적 로비 발생 가능성

※ 신용카드업 과당경쟁 실태 ('10.3.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 '09년 카드 발급건수 : 1억700만장 ('03년 카드대란 직전수준인 1억500만 상회)
- '09년 무실적 카드회원수 : 1,675만명
- 연간 카드발급비용 200억원 허비
- 연회비 대납, 경품 제공, 길거리 유치 등

● 허가요건 예외승인에 대한 투명성 · 공정성 확보장치 결여

–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 · 등록, 취소 · 말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규정 (법 제11조)

–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초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면제토록 승인한 경우, 그 대상, 사유, 면제기간 등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허가요건 유지면제의 예외적 승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곤란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용카드업 허가요건 유지 예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허가요건 유지의무 면제를 승인한 경우 그 대상, 사유, 면제기간 등을 공개토록 하여 예외적 승인에 대한 투명성 · 공정성 확보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 ~ ⑤ (생 략)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이익 저해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 신 설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허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및 공개 등)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⑦ 법 제6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그 대상, 사유,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허가 · 승인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 · 검사 · 제재) ① ~ ④ (생 략)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기관경고 ·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가 · 허가 · 신고 등을 담당하는 소관행정기관(이하 "소관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에게 **금융회사등에 대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소관행정기관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11조의2(과징금)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1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예측가능성(3-2)

(2) 현 황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고의 · 중대한 과실로 법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관경고 ·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하거나 소관기관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현행 법률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도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

  ※ '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에 대한 평가결과,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여 이를 강화토록 권고('09.6. FATF 상호평가보고서)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영업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직접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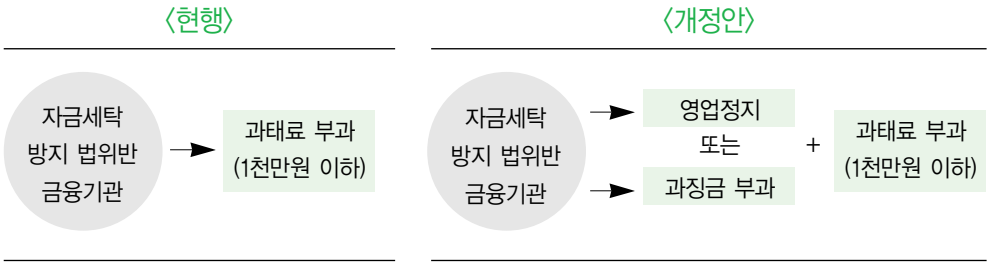

(3) 문제점

① 제재처분 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미비

  ※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경고, 기관주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토록 규정

- 금융기관에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 등 부패유발 가능성 상존

② 과징금 부과요건 · 기준 불비에 따른 제재의 적정성 확보 곤란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과징금 제도가 남용될 우려

  – 개정안에서는 영업정지기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과징금 부과액 산정시 행정기관 임의대로 감경할 경우 제재의 적정성을 벗어날 우려

- 계속적 · 상습적인 법 위반 금융기관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금전적인 제재로 갈음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저하

  ※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시 위반행위 전 기간 매출액의 10%,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범위 위반행위시 도급금액의 30%, 산업피해구제법상 불공정무역행위시 거래금액의 30% 범위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

〈 불법 · 부당행위 유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범위 〉

구 분	위반행위 유형	부과 범위
공정거래법(제22조)	부당공동행위(담합)	위반행위 전 기간 매출액의 10%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위반 등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1조)	불공정무역행위	거래금액에 100분의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명의신탁자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의2)	속임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담	부당금액의 5배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	부정 · 부당 진료비의 5배
외국환거래법(제12조의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인가	위반행위 취득이익 범위내

③ 제재처분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책임성 확보곤란

- 영업정지 처분권은 해당 금융기관 인 · 허가 기관에, 이에 갈음한 과징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부여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원화되어 행정의 책임성 확보 곤란

  – 대부분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시 그 처분권자는 영업정지 처분권자와 동일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해당 처분대상자의 인 · 허가, 시정명령, 등록 및 말소권 등을 가지고 있는 당해 소속 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부여(건산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권자 현황 〉

구 분	처분권자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장금
건설산업기본법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청장 또는 시 · 군 · 구청장	식약청장 또는 시 · 군 · 구청장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먹는물관리법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④ 과징금 제도 남용시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예방의 실효성 저하

- 금융거래시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등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을 위한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 '04년~'09년간 453건의 위반행위에 11억원의 과태료 부과
  - ※ 최근 ○○금융과 △△그룹, △△△△그룹 등 대기업 경영주와 최고경영자들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연일 제기
  - ※ '07년말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증권은 '01년~'07년 동안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2,700여 건이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00일보, '09.10)
-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인 부담만 지우게 하는 과징금 제도가 남용될 경우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 위반 금융기관 제재 강화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취지가 훼손될 우려
- 불법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는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
  - ※ '10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를 위해 법적 ·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력히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10.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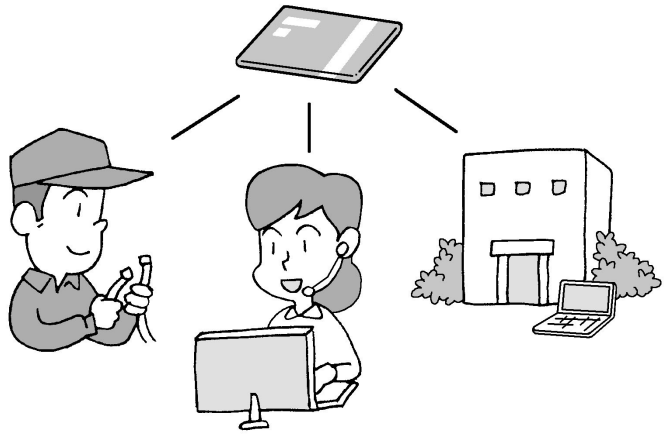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① 기관경고 ·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사유와 영업정지 · 과징금 제재사유를 각각 구분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4가지 제재처분에 대한 기준 부재

※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17조)

※ 영업정지 행정제재처분 기준 구체화(예시)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범위
법 제0조제0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조제△항제1호	6월	전부
법 제0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조제△항제△호	3월	일부
법 제00조제0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조제△항제△호	1월	일부
「별표」에 규정된 처분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조제△항제△호	6월	전부

②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과징금 부과 남용 방지

※ 과징금 부과요건(예시)

- 당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정지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주체의 일원화

● 과징금 부과도 영업정지 처분과 동일하게 소관행정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

〈 이 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인 · 허가권자 〉

금융기관명	근거법령	인 · 허가권자	처분내용
은행	은행법	금융위원회위원장	인가
보험회사	보험업법	〃	허가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법	〃	인가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	인가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	인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장관	인가

④ 과징금 부과기준 · 절차 명확화로 제재의 적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위반행위 내용 · 정도 · 횟수 등에 따른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를 위해 부과액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과징금이 영업정지 기간동안의 이익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제재목적 달성이 곤란하므로 부과기준 마련시 이를 고려할 필요

〈 영업정지 기간별 주요 시중은행의 영업이익 규모 〉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영업이익 ('10년 2/4분기)	영업정지 기간별 영업이익 규모			
		1월	2월	3월	6월
국민은행	105,563	17,594	35,188	52,782	105,563
우리은행	582,033	97,006	194,011	291,017	582,033
신한은행	1,221,425	203,571	407,142	610,713	1,221,425
하나은행	627,732	104,622	209,244	313,866	627,732
외환은행	692,944	115,491	230,981	346,472	692,944
한국씨티은행	230,995	38,499	76,998	115,498	230,995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자료 재구성〉

※ 과징금 부과기준(예시)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자본시장법 시행령)
-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자본시장법 시행령)

-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예시)

- 제재처분 전 금융기관의 의견제출 기회부여
-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규정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 등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 · 검사 · 제재) ① ~ ④ (생 략)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기관경고 ·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가 · 허가 · 신고 등을 담당하는 소관행정기관(이하 "소관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회사등에 대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소관행정기관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 · 검사 · 제재)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기관경고 ·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가 · 허가 · 신고 등을 담당하는 소관행정기관(이하 "소관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회사등에 대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소관행정기관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의2(과징금)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1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제11조의2(과징금) ① **소관행정기관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1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2. 산업·개발 분야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1)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접수하여 이 중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45개의 법령에서 81건의 개선의견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생략

1. 생략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에서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동일 생활권 외의** 다른 시·군·구로 퇴거할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다른 시·군·구로 이전 할 경우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

(3) 문제점

- 제 · 개정 법령(안)은 임차권 양도 허용이 가능한 거주지 변동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간의 이동에서 "출 · 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 동일 생활권 외의 다른 시 · 군 · 구로 퇴거하는 경우"로 인정
  - 그러나, 동일생활권 범위지정을 위한 거리,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동일생활권을 조례로 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
  - 각 지자체별로 출 · 퇴근거리 및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동일생활권의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동일생활권이 중복으로 규정될 소지도 있음
- 또한, 임차권 불법 양도를 방지하고자 질병치료의 사실확인 절차는 의료법에 따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강화하고 있으나, 임차권 편법양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무 · 생업 등에 대한 대책은 개정안에 미반영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출 · 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 동일 생활권 외의" 조항을 수정하여 불 · 편법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거주지가 이전조항을 명확화
- 임차권 양도허용 조항 중 편법양도로 악용되는 근무 · 생업에 대한 실제 주거이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전대 · 전매를 통한 임차권 양도차익의 부당이익 취득 방지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60조의2 (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는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의 이의가 없는 경우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하되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
-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소송이 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또한 분쟁 소송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하자보수의 종결 절차를 명시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청구권
  - 입주자 :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문제점

● 공용부분의 동의절차 미비로 분쟁해결의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만이 행사할 있어,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주거전용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임 및 동의절차를 거치는 경우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의 어려움 발생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주와의 하자보수 합의 효력 미비

–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합의의 위임 및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고 있으며, 그 효력은 합의를 위임 및 동의를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만 효력 발생

※ 하자담보추급권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하자보수 분쟁의 유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받아 건축주를 상대 청구소송을 제기

● 사업주체의 입주자대표회의 로비 가능성 소지

–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확인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다고 하더라도 로비 가능성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각종 이권 개입 및 뇌물 수수 등의 잡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뇌물수수 등으로 입주민들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제 해산되는 사례도 발생 (2010. 5. ○○일보)

※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 등은 아파트의 하자 보수공사에 써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2억 400여만원 중 5,000여만원을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뇌물로 받아 입건 (2008. 9 ○○일보)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입주자의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명 또는 날인시 주거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까지 포함
- 단, 공용부분에 한해서는 입주자 5/4 이상의 찬성과 입주자대표 회의의 3/2이상의 찬성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0조의 2 (하자보수의 종료)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 2 (하자보수의 종료)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5/4이상의 찬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3/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 ·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2.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근무 ·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입주 의무 기간 또는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입주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

(3) 문제점

- 해외체류의 사유와 기간의 명확한 규정 미비
  - "근무 ·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유학 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게 해석될 문제가 있음
  - 근무 ·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거주의무의 기간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 목적 가능성 소지
  - 거주의무의 기간제약을 받지 않아 해외체류 후 거주의무 종료후 매매허용기간에 매매를 하여 차액을 챙기는 투기문제 발생 소지

※ 사전예약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곡2 · 내곡지구 전용 면적85㎡(총 1068가구)의 분양가는 1가구당 4억3500만~4억6000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됨.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가 3.3㎡당 2000만원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2억원 이상 저렴 (2010. 4. ○○일보)

– 근무·생업이나 질병이 아닌 위장근무나 취업을 통하거나 허위 진단서 제출로 해외에 체류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필요한 실거주자가 분양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병원에서의 치료 및 입원 사실에 대해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내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차모(36.여)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09. 9 ○○일보)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근무 ·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등"을 삭제하여 다른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 필요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임차권의 양도에서 국내일 경우 근무·생업 그리고 질병치료의 예외 허용을 두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거주지 거리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질병치료의 기간은 정하는 것이 필요 (예 : 1년)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 ·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2.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 · 생업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단 그 기간은(예 : 1년 이하)로 규정한다.** 2.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의2 (타당성 평가의 공동 활용)

① 정부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의 공동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 조사"라 한다.)**이전에 완료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투자평가지침**의 내용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과 유사하여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내용에 관하여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교통수요 예측 분석기준 및 방법
2. 공공교통개발사업의 비용분석기준 및 방법
3. 공공교통개발사업의 편익분석기준 및 방법
4. 그 밖에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2) 현 황

- 국가교통체계구축 사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타당성 평가 실시
  - 교통시설개발 사업 중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사업의 타당성을 상세 분석 · 평가
- 타당성평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평가대행자에게 평가를 대행할 수 있음
  - 평가대행자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6조)

※ 평가대행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 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
  - 대상 :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
- 타당성 평가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상이한 경우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3) 문제점

- 국가 전체적인 종합적 분석 필요
  - 타당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완료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으로 국가 예산낭비 최소 및 효율적 집행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유발하는 사업을 우선순위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 요구
  -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1999년)은 1994~1998년 각 부처에서 자체 실시한 타당성 평가 조사결과 총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중립성 미흡

〈1994~1998년 대규모 재정사업의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단위 : 건)

타당성	건교부	철도청	농림부	해수부	문광부	환경부	과기부	계
유	9	6	1	14	1	1	–	32
무	1	–	–	–	–	–	–	1

자료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7, 건설교통부

- 1999~2008년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 378건(총사업비 규모 178.9조원)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43%인 162개 사업(88.2조원)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타당성 낮음			
	건수	사업비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1999	19건	27.2조	12건	63%	7.4조	27%	7건	37%	19.8조	73%
2000	30건	14.0조	15건	50%	6.1조	44%	15건	50%	7.9조	56%
2001	41건	19.8조	14건	34%	6.5조	33%	27건	66%	13.3조	67%
2002	30건	16.2조	13건	43%	6.2조	38%	17건	57%	10.0조	62%
2003	33건	21.5조	20건	61%	17.5조	81%	13건	39%	4.0조	19%
2004	55건	18.6조	41건	76%	13.3조	72%	14건	25%	5.3조	28%
2005	30건	12.4조	19건	63%	8.4조	68%	11건	37%	4.0조	32%
2006	52건	20.5조	28건	54%	9.3조	48%	24건	46%	11.2조	52%
2007	45건	16.8조	26건	58%	10.6조	63%	19건	42%	6.2조	37%
2008	43건	11.9조	28건	65%	5.4조	45%	15건	35%	6.5조	55%
계	378건	178.9조	216건	57%	90 .7조	51%	162건	43%	88.2조	49%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09.1〉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9조의2 제2항 삭제

※ 제3자의 검토가 필요하나 주무부처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종합적인 국가 사업의 균형적 검토가 미흡하여 오히려 예산낭비 초래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9조의2 (타당성 평가의 공동 활용) ① (생략) ②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 조사"라 한다.)이전에 완료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 ③ (생략)	제19조의2 (타당성 평가의 공동 활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③ (개정안과 같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11조의3(어린이놀이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어린이 놀이터와 놀이시설 및 기타필요한 시설의 재료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와 강도와 내구성을 갖추어야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3) 문제점

- 어린이놀이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재료비를 낮추기 위하여 불량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불량재료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큰 위험 초래
  - ※ 국내 대기업이 만든 고추장이 고춧가루 대신 중국산 다진양념으로 만들어져 팔려나가 재료의 문제 있었으며 다른 문제로는 식약청의 허술한 표기 기준도 그 틈을 만들어줌 (MBC. 2008. 10.28)
  - ※ 환경부가 전국 어린이 놀이터 340곳에 대해 환경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고무바닥재를 설치한 놀이터 117곳 가운데 13곳, 전체의 11% 정도에서 납과 발암물질인 크롬이 검출 (YTN. 2010.8.26)
  -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에서는 보육시설의 놀이터, 놀이 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의 기준을 명시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불명확한 사용재료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 필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1조의3(어린이놀이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제11조의3(어린이놀이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 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2조제 2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적정성(2-2)

(2) 현 황

-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공사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 개별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 〉

구분	신항만건설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공사법
사업시행자	국가, 국토해양부장관	주무관청	항만공사

- 항만공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되는 사항은 참여 가능
  - 민간유치사업으로 가능한 신항만건설사업에 항만공사의 참여는 부채 등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되어 옴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는 2010년 약 1조 4000억원, 인천항만공사의 부채는 2010년 약 2,506억

〈항만공사법 개정전과 개정후 비교 〉

구 분	개정전	개정후
항만공사의 민간유치사업 콘소시엄 참여 여부	불가능	가능

※ 개정 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로 규정

● 2010년 3개(부산 · 인천 · 울산)의 항만공사 일반 현황

〈2010년 항만공사현황〉

구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설립일	2004. 1. 16(법인)	2005. 7. 11(법인)	2007. 7. 5(법인)
항만위원회	10명	7명	7명
조직 · 인원	3본부 15팀(149명)	3본부 12팀(139명)	2본부 6팀 1T/F(46명)
예산	5,966억원	2,657억원	737억원

(3) 문제점

● 명확한 타당성 없는 사업에 무분별한 지분 참여 가능성

–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거나 사업참여의 필요성이 불명확한 사업에 무분별한 지분참여로 인해 각종 사업이 좌초할 때마다 부채를 떠안는 문제 발생 가능성

※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5곳의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참여를 하였으나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분을 참여하는 등 부채규모가 2010년 말 6조 6천억원에 육박함을 지적 (국정감사. 2010. 10)

● 민간유치 사업에 항만공사의 직접 참여는 재정 부담 우려

– 민간유치 사업이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항만공사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게 규정한 것은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하여 제한한 사항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는 2010년 약1조4,000억원 → 2015년 약3조8,000억 원이고, 인천항만공사의 부채는 2010년 약2,506억 → 2014년 1조801억으로 금융이자만 500억에 육박함을 지적 (국정감사 2010. 10)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무분별하고 방만한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한 통제장치 강구

– 다만, 항만공사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시행)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2조제2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시행) ①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2조제2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는 항만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민간유치사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재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2) 현 황

-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국토해양부령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재난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허용

●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 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체납방지 등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미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문제점

● 부담금 분할납부허가의 구체적 기준 결여

– 담당자의 부담금 분할납부의 과정과 관련하여 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자의적인 판단행위를 할 소지가 있는 등 구체적 기준 결여로 인한 통제장치 미흡

– 또한,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개발에 따른 어민과의 마찰이 발생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특혜발생의 소지

※ ○○시와 ㈜○○○심층수가 ○○○해안에서 진행 중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어민들이 조업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마찰 심화,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2009. 4. ○○일보)

● 부담금 분할 납부의 준수의무 미이행시 일괄 징수근거 미비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분할납부허용 이후 납부 준수의무 미행시 일괄 징수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부담금 징수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어려움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부담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

※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 사유 (예시)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준수사항 미행시 부담금 일시징수 사유 규정

※ 부담금 일시징수 사유 (예시)

-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재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음)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게 되는 때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지식경제부는 상업 · 무역 · 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 · 지하자원, 우편 · 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23개의 법령에서 68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정(안)

제7조(항공우주산업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 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 · 개발사업의 방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⑤. ⑥. (생 략)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법 제7조는 항공우주산업 중요정책 심의 등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 위원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
- 위원회는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자금 지원 등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위원의 공정성 · 청렴성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됨

(3) 문제점

- 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
  -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성 개입 우려
  - 심의대상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 등 이해관계자 및 결격자 · 비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

※ 현('10년 1월 위촉)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 중 '07년부터 '09년까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개발자금 지원대상 소속기관에 포함된 위원은 3명이고 이들 3개 기관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총 16,994백만원임

〈 現심의위원 소속기관의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 현황 〉

년도	과제명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2007	민간항공기 Door 시스템 개발	(주)○○○○	3,199백만원
2007	HDF장비를 이용한 첨단 항공기 복합소재 Stringer 부품개발	(주)○○○○	630백만원
2007	항공산업미래비젼 기획연구	▲▲▲▲▲연구원	150백만원
2007	항공핵심원천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연구원	15백만원
2008	초음속고등훈련기용 3D 전자지도 응용컴퓨터 개발	◇◇◇◇◇◇(주)	4,000백만원
2008	차세대초소형/고부하 압축기 다분야 통합 기술개발	▲▲▲▲▲연구원	3,000백만원
2009	항공부품정밀비행시험 시스템 개발 및 기본형 무인플랫폼 개발	▲▲▲▲▲연구원	6,000백만원

참고

● 석유 · 가스 및 광물자원의 해외개발사업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경우

– 융자 수요기관인 석유공사 · 광업진흥공사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석유공사 · 광업진흥공사의 임원 각2명이 융자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융자심의의 공정성 · 객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됨

– 융자심의회 운영을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석유공사 · 광업진흥공사 임원을 융사심의위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07년 전체 유전개발 융자액(4,260억원) 중 석유공사에 1,264억원(30%), 광업진흥공사에 20억원(0.5%)이 지원됨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항공우주산업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신 설〉	제7조(항공우주산업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자 가. 대학에서 항공우주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O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O년 이상 항공우주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그 밖에 항공우주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내지 나목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정(안)

제15조(국 · 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 · 개발 · 제조 · 가공 · 조립 · 재생 · 정비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 ·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 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 · 공유재산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 ·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 · 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차원에서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
- 국 ·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항공우주산업은 신규상품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정책적으로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국 ·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을 보장

※ 민항기인 에어버스 A350기종의 경우 개발비가 150억불, 전투기인 F35는 250억불의 개발비가 소요

〈 항공산업의 활동성 분석 〉

	항공	기계	자동차	조선
1회전기간	191일	68일	18일	55일
총자본 회전율	1	1	1	1
매출채권 회전율	2	5	8	6
재고자산 회전율	6	9	15	13

* 자료출처 : 2010 ~ 2019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지식경제부)

(3) 문제점

- 영리사업자에게 과다한 특혜제공 우려
  - 비영리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사업자에게도 국 ·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 특혜 확대 등으로 인한 국가 ·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우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 · 공유재산을 영리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무상임대의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정도(방위사업법 제45조)
  - 항공우주산업과 마찬가지로 신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인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 · 공유재산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유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
- 국 · 공유 재산 유 · 무상 임대 등에 대한 선택기준 부재
  - 담당자 재량에 의하여 국 · 공유 재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각 · 임대될 수 있어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 및 무상으로 국 · 공유 재산을 이용하려는 업체의 로비발생 소지
- 국 · 공유토지에 축조된 영구시설물 원상회복 절차 결여
  - 임대기간 만료, 임대 취소 등의 경우 원상회복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 · 공유토지 훼손 우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영리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철회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는 유상으로만 국 · 공유재산을 매각 · 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책적 목적 등으로 무상임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 · 무상 매각, 임대 선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상 임대내역 등을 공개
- 국 · 공유토지 훼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장치 마련
  -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분쟁, 국 · 공유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기부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국 · 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 · 개발 · 제조 · 가공 · 조립 · 재생 · 정비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 ·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국 · 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 · 개발 · 제조 · 가공 · 조립 · 재생 · 정비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 ·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도 · 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도 · 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센터(주식회사만 해당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거쳐 제27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부패 통제장치(3-3)

(2) 현 황

- 융합(Convergence)이 글로벌 산업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기존 법령이나 제도만으로 새로운 융합제품을 수용하기 어렵고, 시장창출에도 장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동법을 제정

  ※ 대한상의 조사결과 융합제품 출시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금확보 애로(25.7%)',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25.0%)'를 지적

-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융합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을 위하여 대학 · 단체 · 기관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산업융합지원센터 : 지식경제부장관이 융합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법인

- 파견을 요청받은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 센터 또는 중소기업은 파견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규정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융합기반 신제품(아이폰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융합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의 예외를 규정

- 그러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

(3) 문제점

● 산업융합지원센터 업무수행의 공공성 저해 우려

– 센터는 산업융합 관련 정보수집, 연구개발 사업 기획, 기업상담시설 운영,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융합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정부위탁 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

– 따라서 센터 업무수행을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주식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유사입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정보 수집, 컨설팅 지원,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등 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단체를 지정

• 또한 회사의 설립 ·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을 융합산업 촉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과도한 특혜발생 가능성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교수 및 연구원 등 우수인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에게 겸직 및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에게 겸직을 허용하면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제공 소지

– 특히 공직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상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등 공직자의 업무상 독립성 ·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

•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저촉되는 문제

※ '06년도부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재산등록 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개정되었고 주식에 관한 직 · 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산업융합지원센터 업무수행의 공공성 제고

– 센터의 공공성을 고려 센터업무를 수행할 자에서 주식회사를 배제하고 센터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한

– 교육공무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및 사익추구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 입법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교육공무원 등을 제외

– 정책적 목적 등으로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특례를 산업융합 기반조성이라는 법률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인정하고

※ 부칙으로 법률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및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등 구체적인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센터(주식회사만 해당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거쳐 제27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거쳐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경우 **신제품개발 또는 융합신산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자(제28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은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4(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 영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란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연간 발전량의 합계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1.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 **원자력발전량의 20퍼센트**
3. 영 별표1 중에서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발전용 에너지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2) 현 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총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함

  ※ 공급의무자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

  ※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량 : 총발전량 × 의무비율

- 동 조항은 공급의무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산정기준이 되는 총발전량 산정 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한 발전량은 제외하여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

  - 이는 "공급의무제도"의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이므로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해오던 발전량이 제외된 총발전량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

  - 총 발전량 합계 중 공제부분은 의무공급을 일정부분 면제해주는 일종의 혜택

(3)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도입취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인 점을 고려컨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발전량을 총발전량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카목에서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

-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하여 공제특례 인정 시 그 공제부분에 대한 타 발전사 전가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특혜 소지 우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총발전량 산정 시 원자력발전량을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산정 시 "원자력발전량의 20퍼센트"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 삭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조의4(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 영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란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연간 발전량의 합계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1.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 **원자력발전량의 20퍼센트** 3. 영 별표1 중에서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발전용 에너지	**제2조의4(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 영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란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연간 발전량의 합계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1.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삭 제〉 2. 영 별표1 중에서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발전용 에너지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제품의 결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샘플링, 시험 ·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 · 검사기관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5.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비자원
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 인증기관**
8. 그 밖에 제품안전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국내 · 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③. ④. (생 략)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시행령 제4조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

  ※ 그간 제품 안전관리는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 ·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되어, 제품 안전사고의 효과적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였음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당해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통보

(3) 문제점

- 안전성조사 위탁기관 선정시 공정성 · 객관성 확보수단 불비

  – 제정(안) 제4조제2항 6호 및 7호에 따르면 안전성조사 대상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이 당해제품의 안전성조사도 수행이 가능

– 따라서 안전인증을 수행한 기관이 자신이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의 공정성 · 객관성 저해 우려 및 조사자와 피조사자간 업무유착 발생 가능

● 안전인증기관은 인증한 제품의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이 금지되는 등 안전인증업무와 안정성조사 상호간 이해충돌 발생

※ 권익위 'ISO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10. 4.)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면서 인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문규정 위반 사례 빈발

구 분	자문규정위반 건수	인증기관	처분 및 통보현황
국내	37건	000인증기관 등 8개 기관	인증기관 업무정지(2~4주) ('08. 12. 4.)
외국계	13건	000인증기관 등 4개 기관	UKAS 등 3개 인정기구 통보 ('09. 02. 10.)
계	50건	12개 기관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과 안전성조사를 동일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제한

–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수행한 기관은 당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안전성조사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제품의 결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샘플링, 시험 · 검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1. ~ 8. (생 략)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제품의 결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샘플링, 시험 ·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수행한 단체 또는 기관에게는 의뢰할 수 없다.** 1. ~ 8. (개정안과 같음)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조(지능형전력망 기반 조성) ①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의 선도, 저탄소 녹색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사업자, 국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형전력망기술과 관련 기기, 제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복합 등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저탄소(低炭素) 에너지이용환경의 조기구현과 전기에너지 이용자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및 전기에너지이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의 도입 및 교체 등 시기별·단계별 전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2) 현 황

- 정부는 녹색성장형 미래산업인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사업의 안정적·체계적 구축 등을 위하여 동 법 제정(안)을 마련
- 지능형전력망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인프라
- 제정(안) 제7조제3항은 저탄소 에너지이용환경의 조기구현과 전기에너지이용자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관련 설비·기기의 도입 및 교체 등 시기별·단계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계량기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가구에 보급할 예정

※ 스마트계량기(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에너지사용 정보의 실시간 확인 능력과 양방향 통신능력을 갖춘 계량시스템으로 스마트그리드의 기초적 인프라에 해당

(3) 문제점

- 신규사업자의 지능형전력망 사업 참여 제한 우려

– 제정(안) 제7조제3항은 관련기기의 도입 및 교체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 · 시행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추진 정보(예컨대 계량기 교체 일정, 대상지역 등을)를 공개하는 규정은 부재

– 따라서 기존 전기판매사업자가 자사 계획에 따라 계량기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는 신규사업자의 지능형전력망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신규사업자는 예측가능성 저하 및 중복투자 등의 우려로 신규진입을 꺼리게 되어 관련 시장의 경쟁촉진이 제한되고 기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 발생 우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능형전력망 설비 도입 · 교체 등 관련 구체적인 정보 공개

–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설비 또는 기기의 도입 및 교체 등 시기별 · 단계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

– 또한 제7조제3항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규사업자의 사업참여 유도 및 지능형전력망 산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지능형전력망 기반 조성) ① ~ ② (생 략) ③ 정부는 저탄소(低炭素) 에너지이용환경의 조기구현과 전기에너지 이용자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및 전기에너지이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의 도입 및 교체 등 시기별 · 단계별 전환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 ⑧ (생 략)	제7조(지능형전력망 기반 조성) ① ~ ② (생 략) ③ 정부는 저탄소(低炭素) 에너지이용환경의 조기구현과 전기에너지 이용자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및 전기에너지이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의 도입 및 교체 등 시기별 · 단계별 전환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의 구체적 일정, 대상지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 ⑨ (제정안 ④ ~ ⑧과 같음)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조 (구축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지능형전력망 사업 구축에 필요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비를 제21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原價)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2) 현 황

- 제정안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와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에 반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3) 문제점

- 전기사용자의 부당한 부담 증가 우려
  -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제정(안)은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하나인 전력판매사업자가 자신의 요금에 구축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

-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전기요금 관련된 부분은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설치된 전기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전력판매사업자가 요금에 투자비를 반영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9조 (구축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지능형전력망 사업 구축에 필요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비를 제21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原價)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 (구축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지능형전력망 사업 구축에 필요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비를 제21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原價)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 : **17억원** 이상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 : 5억원 이상
3. 시 · 군에 소재하는 자 : **2억 5천만원** 이상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접근성 · 공개성(3-1)

(2) 현 황

-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의 개선 · 발전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 · 운영되는 법정경제단체

  ※ '09년 말 현재 전국 71개 지방상의에 53,000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개정(안)은 폐지예정이었던 당연회원제가 존치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당연회원이 되는 기준을 조정

  - 규제개혁위원회는 '98년 사업자단체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37개 단체의 가입강제, 회비납부 규정 폐지 등을 추진

  - 상공회의소도 '98년 법 개정을 통하여 '03년부터 임의가입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되다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당연회원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

〈상공회의소법상 회원관련 규정 연혁(국회)〉

구 분	회원제 유형	당연회원제 적용대상	시행일	비 고
'98년 이전법률	당연회원제 (법 제6조제1항)	모든 상공업자	-	
'98년 개정법률	**임의회원제** (법 제6조제1항)	-	**'02년말**까지 시행유예(부칙 제1항)	정부 입법
'02년 개정법률 (전부개정)	임의회원제 (법 제10조제1항) **부분당연회원제** (법 제10조제3항)	매출세액 기준 특별시 : 7억원 이상 광역시 : 3억원 이상 시 · 군 : 1.5억원 이상	부분당연회원제 **'06년말**까지 한시적용(부칙 제2조)	정부 입법

구 분	회원제 유형	당연회원제 적용대상	시행일	비 고
'06년 개정법률	상동	매출세액 기준 특별시 : 10억원 이상 광역시 : 4억원 이상 시 · 군 : 2억원 이상	부분당연회원제 **'10년말까지** 한시적용(부칙 제2조)	의원 입법
'09년 개정안 (김태환의원 대표발의)	상동	매출세액 기준 특별시 : 15억원 이상 광역시 : 5억원 이상 시 · 군 : 2.5억원 이상 **※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부분당연회원제 **영구적용** (부칙 제2조 삭제)	**의원 입법**

● 개정(안)에서는 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인 : 10억원 → 17억원 이상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인 : 4억원 → 5억원 이상

시 · 군에 소재하는 상공인 : 2억원 → 2억 5천만원 이상

〈법 개정 전 상공회의소 회원제도 현황(지경부)〉

종류	회원 자격	회비납부 기준
당연 회원	관할구역내 매출세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 – 특별시 소재 상공인 : 10억원 이상 – 광역시 소재 상공인 : 4억원 이상 – 시 · 군 소재 상공인 : 2억원 이상	각 상의 정관(매출세액의 0.4%범위 內) – 특별시 : 매출세액의 0.1% – 광역시 : 〃 0.22% – 시 · 군 : 〃 0.278%
임의회원	관할구역내에 당연회원이 아닌 자	연간 50만원의 범위 內
특별회원	관할구역내에 상공업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연간 150만원의 범위 內
준회원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상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	임의가입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각 지방상의가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3) 문제점

● 법률상 당연회원제도 유지에 따른 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발생

– 상공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기업은 법률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당연회원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해당기업에게 선택권을 제한

※ '09년도 당연회원 회비납부율이 24%에 그치고, 전체 회원의 4%인 대기업이 전체 회비의 37%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대한상공회의소)

– 관할구역별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회비납부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어 준조세 성격으로 작용할 소지

– 당연회원제도 유지는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상생 등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존재

● 당연회원 자격기준이 대 · 중소기업간 형평성 문제 초래

– 당연회원 자격기준과 회비납부 기준이 사업소재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기업에게 더 불리

※ 서울소재 상공인은 매출세액 17억원 이상이나 시 · 군소재 기업인은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상공회의소 회원자격 및 회비납부 기준(지경부)〉

회원자격	회비납부 기준
관할구역내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중 매출세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 • 특별시 소재 : 17억원 이상 • 광역시 소재 : 5억원 이상 • 시 · 군 소재 : 2억5천만원 이상	지경부장관 지침에 따라 각 상의 정관에 규정(매출세액의 0.4%범위 內) • 특별시 : 매출세액의 0.1% • 광역시 : 〃 0.22% • 시 · 군 : 〃 0.278%

– 개정안은 광역시, 시 · 군에 비해 특별시의 당연회원 가입과 회비납부 면제범위가 넓어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소지

〈당연회원 기준조정(안)〉

구 분	현 행	시행령 개정안
특별시(1개)	10억	17억(70% ↑)
광역시(6개)	4억	5억(25% ↑)
시 · 군(64개)	2억	2.5억(25% ↑)

● 지역상공회의소의 지나치게 높은 회비 의존도 비율

– 전체 71개 상공회의소 가운데 48개 상공회의소는 총수입 중 회비수입 비중이 50% 이상일 정도로 회비 의존도가 높음

※ 우리나라와 기능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운영재원 중 회비(18.3%)에 비해 사업수익(32.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대한상공회의소)

– '98년 이후 10여년에 걸친 임의회원제 시행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차원의 대체수입원 개발 등의 노력 없이 회원사에게 부담을 전가할 소지

● 당연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회비운용의 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회비지출 세부현황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비공개

– 지역상공회의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71개 상공회의소에 대한 외부통제가 한계가 있어 도덕적 해이현상 발생 소지

※ ○○상의는 연간 예산 20억여원 가운데 자체 수익은 1억원도 되지 않으면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매일신문, '10.11.)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향후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통해 당연회원제를 폐지하고 임의회원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검토

※ 무역협회(1996년), 해외건설협회(1998) 등은 임의가입제로 전환하였으며, 감정평가협회는 현재 임의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음

● 지방소재 기업과 특별시 소재 기업간의 역차별 현상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의 당연회원제 가입기준과 회비납부 기준을 재검토

● 사업비 및 회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적극 강구

– 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하는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 세부 사업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개

– 회비 등의 집행내역을 정기적(1년 2회 이상)으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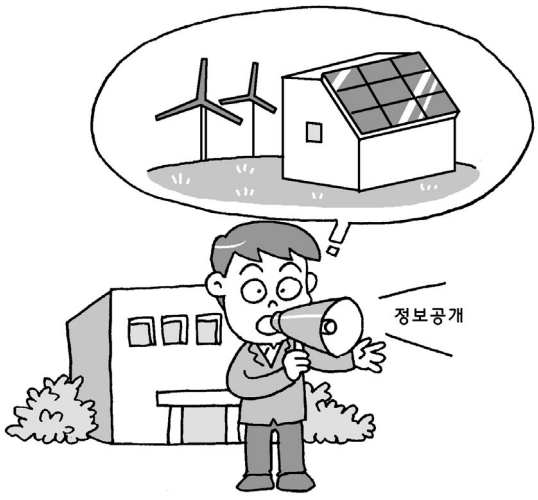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 · 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3),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사업조정 :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관련 업종의 여러 중소기업이 수요 감소 등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업인수나 개시 ·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2009년 148건, 2010년 현재까지 53건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급증 추세 ('10.6월,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조정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공무원 각 1인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

-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조정에 대한 권고 및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 위원의 공정성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됨.

  ※ SSM 진입규제 문제가 WTO유통시장 개방안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

(3) 문제점

- 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
  - 위원의 자격기준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심의결과의 공정성 ·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
    ※ 위원의 자격기준을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규정
  - 민간위원의 참여가 7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거나 위촉되더라도 소수만이 위촉되어 심의의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
    ※ A부처에서 운영중인 ○○심의회의 경우 민간위원을 ○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민간위원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10.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장치 불비
  - 심의위원과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대해 해당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제도가 없고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을 막는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부재
    ※ 연임 제한규정 미비로 A시 도시계획위원회 3회 연임 1인, B시 도시계획위원회 3회 연임 2인, 농식품산업위원회 3회 연임 1인, C구청 3회 연임 1인 등('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원이 심의 과정관련 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
    ※ 환경영향평가위원 이모 교수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심의 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대가로 2억원 수수('08.10월)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 연구기관 등 근무경력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구체화
    ※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적 · 세무 · 회계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할 필요
  -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7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

● 심의위원 활동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신설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차수 제한

–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 규정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등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 · 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 **가. 대학에서 중소기업 및 소비자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O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O년 이상 중소기업 및 소비자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 · 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안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그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재량규정의 명확성(2-1),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단체 및 동일업종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조정의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 · 도의 공무원에 의한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청의 현장조사, 경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실시
  -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실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사실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3) 문제점

- 법률에서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지역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확정 개념을 반복, 법의 해석에 있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선별적 · 자의적 법 적용 소지
  - ※ 법률에서 사용한 불확정 개념(현저하게, 나쁜 영향, 미칠 우려 등)이 시행령에서 구체화, 객관화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

〈사업조정 신청〉

법 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행령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사업조정 심의 전 사업조정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기업 및 사업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로비 등 발생 가능성

● 지정기준 · 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 결여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정 협회나 단체 등을 사실조사 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

- 지정취소 등 규정이 부재하여 사실조사 관련 부적합한 기관이 계속 사실조사 기관으로 지정 · 운영 되는 등 사실조사의 신뢰성 · 공정성 저하 우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지역의 범위 규정 중 법률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을 반복 사용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 · 객관화하는 방안 재검토

● 사실조사 기관 지정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지정요건, 절차, 방법 등 사실조사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사실조사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마련

-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 행정절차법에 지정취소 절차(청문 등)를 준용하도록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00조 〈신 설〉	제00조 (사실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00조에 따른 사실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00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00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기관의 지정취소에 있어서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행위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2) 현 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3) 문제점

- 주요 출자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투자대상에 편중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동 조문을 신설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거래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거래 및 행위"라고 정하여
  - 행정기관이 이를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경우 투자조합의 투자결정이 주요 출자자에 좌우되는 등 모태펀드의 투자 목적을 회손 할 우려

▶ E2투자조합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 62억원으로 100%편중 투자 (감사원 감사결과, '09.10.)

- 또한 행정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회사가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해당 행위에 따르는 제재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거래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및 행위로 명확히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행위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노동위원회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법령에서 27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 · 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마련(3-3), 제재규정의 적정성 (1-2)

(2) 현 황

-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 판결 및 조정문제를 결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
  - 이에 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영리추구 행위 및 비밀누설 행위 등은 노동위원회 판결 및 조정의 공정성 ·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시 벌칙을 규정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벌칙의 대상을 영리추구 행위에 있어 비밀을 누설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영리추구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삭제

(3) 문제점

● 사후제재 수단 불비로 인한 관련 규정의 실효성 저하

– 노동위원회 위원 자격을 노사관계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건을 변호사 및 노무사로 수임할 가능성 등이 높아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해야 하나, 현행 제재규정 삭제로 관련 규정의 실효성 확보 곤란

※ 노동위원회는 공익, 사용자, 노동자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의 자격을 노동문제 관련 부교수 이상 재직한 자, 판사 · 검사 · 변호사 또는 노무사에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 (법률 제8조)

〈공익위원의 직업별 분포 –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09년 6월)〉

(단위 : 명)

구분	법학	변호사	판사	검사	전직 노동부 관료	노무사	국책 연구원	기타	계
인원수	165 (33.9%)	265 (54.4%)	5 (1.0%)	1 (0.2%)	31 (6.4%)	5 (1.0%)	3 (0.6%)	12 (2.5%)	487 (100%)

● 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해당사건에 대한 영리추구 행위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공적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위원회 결정의 공신력 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 중노위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인 A변호사의 경우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한 부당해고 사건을 수임해 구설에 오르기도 함. 한 변호사는 "공익위원 출신 변호사 중에는 공익위원직을 활용해 사건을 싹쓸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 (법률신문, '06년 12월)

● 벌칙규정의 적정성 미흡

– 비밀엄수 의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을 담보해야 할 책임에 비해 벌칙(특히 벌금)이 경미하여 비밀누설을 담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

※ 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법정형을 분석한 결과 "징역 2년 ~ 3년 이하가 55개(57%)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42개(43%)"로 가장 많이 분포 (부패영향분석과-1398, '09년8월)

●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익위원과 사건담당자가 비밀엄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의 경중이 달라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

※ 공인노무사의 경우 비밀엄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2010.5.25.)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해당사건 영리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여 관련 조항 위반시 제재토록 함.
- 비밀엄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공인노무사의 비밀엄수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으로 강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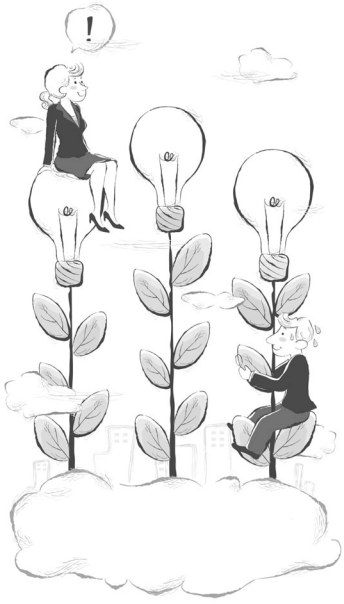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7] 〈신 설〉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금액
법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 상습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26조의 2	300만원
2. 고의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3. 그 밖에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자격증을 불법대여하는 사례 발생

  ※ 국가기술자격증은 17개 부처·청 소관의 556종목으로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등이 있음. ('10. 9월 제도개선 자료)

〈최근 5년간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112	203	214	314	226

- 현재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각 부처에서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하여 자격취소 및 벌칙 등 제재 조치

  ※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혹은 자격취소 (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26조)

● 그러나 이러한 단속 및 제재에도 자격증 불법대여가 근절되지 않아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 저해,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 저하,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 등 각종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

※ 지역에서만 자격증 불법대여가 50여곳이 넘는 만큼 전국적으로 건설업계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전문인력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 (대전일보, '10. 1월)

● 이에 조사권 강화 등을 통한 조사 ·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불분명한 조사권한을 분명하게 하고(법 제15조의3) 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을 개정

(3) 문제점

● 벌칙규정의 적정성 미흡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얻는 이익에 비해 벌칙(특히 벌금)이 경미하여 제재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자격증의 불법 대여를 알선해주고 수수료 수억 원을 챙긴 업체를 적발해 수사 (YTN, '09. 7월)

※ 자격증 대여료로 받은 금액은 1억6500만원에 달하며 A씨는 알선료 명목으로 이 중 5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짐. (뉴시스, '10. 5월)

●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중앙부처에서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일정비율 단속대상자를 선정하여 연 1~2회 실시하는 단속으로 브로커 등을 통한 조직화 · 지능화 된 자격증 불법대여를 단속하기에는 한계

– 자격증 불법대여는 보통 기업 및 자격증 소지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아 단속으로 적발하기 어려움.

※ 학원생 46명을 "자격증을 썩히지 말고 용돈도 벌고 경력도 쌓자"며 건당 150~500만원을 주고 유인하여 업자 31명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 (뉴시스, '10. 5월)

※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300만원 이상 줘야 하지만 자격증을 대여하면 연간 150~2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불법 대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 (매일경제, '09. 6월)

– 현재 조사 ·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신고접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신고건수가 저조

※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 접수를 받고 있으나 한달 평균 10건 내외 (산업인력공단, '10. 10월)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타 법령의 불법대여에 대한 제재(특히 벌금) 수준으로 강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6조(벌칙) ① (생 략) ②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2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③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포상금제도 도입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

– 포상금의 지급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구분	해당 조항	위반행위	부과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제2항)	법 제72조 제3항	○ 최근 3년 이내에 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요양 28일 이상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50	500	800
		○ 최근 1년 이내에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 재해는 3회 이상, 요양 28일 이상 84일 미만 재해는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	400	700
		○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0	350	6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600	1,000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2) 현 황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규정
  -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의 경우 사고의 은폐 및 조작을 막아 정확한 재해원인분석 등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보고토록 함.
- 산업재해 보고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의 위임근거 없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

(3) 문제점

●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기업에 부과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산재사고 은폐나 증거 조작 소지

– 건설업체의 경우 산재발생이 환산재해율(사망재해를 일반재해보다 10배의 가중치를 줘 계산한 재해비율) 산정에 이용되며 환산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입찰,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에 있어 불이익

※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면, ① 향후 1년 동안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면제되고, ② 공사 준공시까지 6개월에 1회의 확인검사도 면제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산업재해 보고 의무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낮아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 다수 발생

※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연 800곳에 이르며 1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이 30회에 달하는 업체도 존재

〈노동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10. 4, 건강보험공단)〉

(단위 : 개소)

구분	행정조치	사법조치	계
2006	806	37	843
2007	690	34	724
2008	863	32	895

● 산업재해 은폐에 따른 로비 등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

※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제거 등 사망재해 사고원인 은폐를 위한 불법적 실태 만연 (KBS, '08.11., 내일신문, '06.2.)

●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하여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낮아 과태료 처분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저하 우려

※ 사망사고 미보고의 경우(150만원)를 기타 법령 요지의 게시 · 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율안전 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과 과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사망사고 미보고의 경우 재해자의 보상 및 재해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추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감독의 필요성이 큼.

〈 사망재해 보고의무 위반에 상응한 과태료 위반행위 비교〉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단위 : 만원)
법령 요지의 게시·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0만원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	

●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재발생이 많아질 경우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기업 이미지 훼손 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 감소로 직결

– 기업들이 근로자 산재를 보고 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을 일반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가

※ '07년~'09년까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93천건, 180억원 환수

※ 근로자의 75.5%, 사업주의 60.2%는 산재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2007.10)

근로자 응답 결과	사업주 응답 결과
• 산재보험 처리하였다(24.2%) • 별다른 보상없이 술 한잔 마시고 끝냈다(25.8%) • 전문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4.2%) • 팀, 반장이나 일반 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어 처리하였다(16.1%) • 일반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 돈으로 주었다(9.7%)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39.8%) • 전문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5.7%) • 팀, 반장이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0.4%) • 일반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어 처리하였다(5.3%) • 별다른 보상없이 술 한잔 마시고 끝냈다(8.8%)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 예를 들어, 사망사고 보고 의무위반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의 사망사고 발생 보고 누락에 대하여 700만원을 부과하는 점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타 의무위반 행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근절하여 재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산업재해 조사의 신뢰성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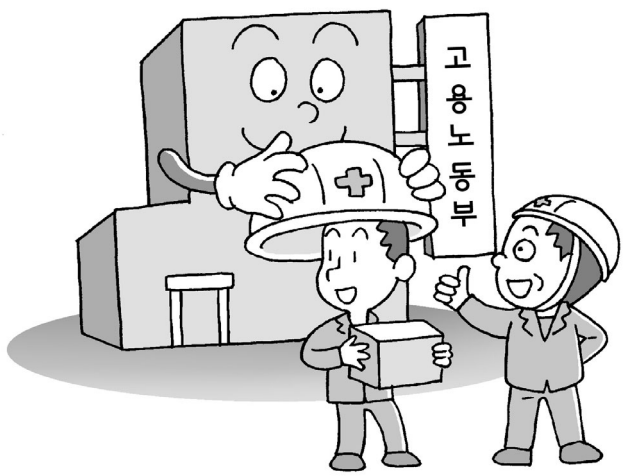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4)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 · 수산 · 축산, 식량 · 농지 ·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등 10개의 법령에서 13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외해수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간조대를 기준으로 해안선에서 3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수면을 말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그 양식어업을 하더라도 해수유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 황

- 법 제2조제6호에서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을 "외해"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간조대를 기준으로 해안선에서 3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수면을 "외해수면"으로 규정함
-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그 양식어업을 하더라도 해수유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외해수면으로 규정

(3) 문제점

- "외해수면"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해수유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은 세부기준이 없어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량권이 과도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적지조사요령에 해수양식장과 담수양식장은 적지조사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신청인이 어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로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

※ 친환경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무한 잠재력이 있는 외해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의 경우 외해 양식업의 정의, 면허 또는 허가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고 내만 가두리 구조조정 지원방안도 다뤄진다.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은 외해 적지조사 및 향후 1조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참치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종묘 생산 기술개발과 양식 기반시설 지원 등 이다. (한국농어민신문2009.5.18.)

※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비 확보(10년 국비44억원) : 참치양식 기반시설 24억원, 참치양식 기술개발 연구 20억원(농림수산식품부)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해수유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적지조사기준을 정하여 고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조의2(외해수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간조대를 기준으로 해안선에서 3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수면을 말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그 양식어업을 하더라도 해수유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외해수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간조대를 기준으로 해안선에서 3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수면을 말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지조사기준에 적합하여 그 양식어업을 하더라도 해수유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문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

가. 농업인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

4. (현행과 같음)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및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차·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

나. **등록하는 직전 연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제2조의2

(2) 현 황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조건 추가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차·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법 제5조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
  - 등록하는 직전 연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3) 문제점

- 직불금 신규 추가 등록의 "등록하는 직전 연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인 조건은 농지의 기준 없이 농산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농지외의 농산물 생산이 있을 수 있는 등 자경 확인이 곤란
- 농산물 판매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직불금 신규 추가 등록의 "등록하는 직전 연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인 조건에 대하여 판매한 농산물이 자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금액으로 규정
-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등록하는 사람의 농산물 판매금액에 대한 증명방법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문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 가. 농업인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문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 가. 농업인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농업인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및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차·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및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차·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	가.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
나. **등록하는 직전 연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등록하는 직전 연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6. (신설)	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 받고자 등록하는 사람의 농산물 판매금액에 대한 증명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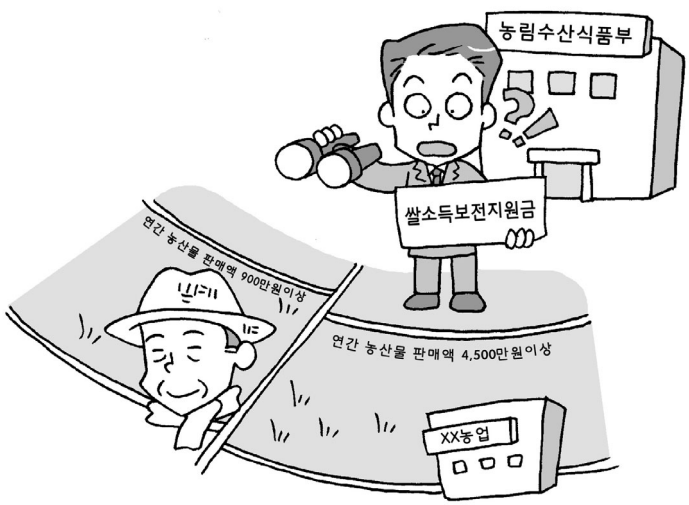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②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구역을 확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제6조의2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한 산림. 다만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면적이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 면적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2) 현 황

-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 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산림의 경관 · 생물 · 개발여건 등의 타당성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지정 및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예외적으로,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면적이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 면적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3) 문제점

- 자연휴양림 면적의 20% 이하 확대 변경 시 타당성평가를 면제해 주는 것은
  - 기존의 지정 면적이 큰 경우 20% 이하라 하더라도 면적의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자연휴양림의 무분별한 확대로 산림훼손이 우려되며
  - 또한, 지정된 자연휴양림 면적의 3%내에서 숙박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자연휴양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산림도 타당성평가 면제를 악용하여 확대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타당성평가가 필요한데도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함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연휴양림의 확대 변경에 대한 타당성평가 면제 기준을 자연휴양림의 면적비율로 할 것이 아니고 확대하려는 면적으로 하되, 타당성평가의 실익이 없는 소규모의 확대면적에 한해 면제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②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구역을 확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제6조의2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한 산림. 다만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면적이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 면적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②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구역을 확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제6조의2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한 산림. 다만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면적이 (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보건 분야

환경부

1) 환경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접수하여 이 중 「수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령에서 17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제9조(석면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 등의 사용이 승인되었거나 허가된 경우
2. 그밖에 군사용·연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유통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석면 함유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석면함유 제품의 조사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석면 등의 사용금지 일반원칙
  - 다른 법률에 따라 승인 · 허가된 경우나 그밖에 군사용 · 연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석면 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석면 등의 사용 실태확인조사 및 자체조사 결과보고 등
  - 석면사용에 대한 실태확인 조사 및 자체조사 결과보고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이 법 벌칙 제정안(제57조제1호 및 제58조제3호)으로
- 석면 등을 승인 · 허가 없이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결과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3) 문제점

-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 신뢰성 확보 미흡
  - 제조 · 수입 · 유통업자에게 자체조사의 요건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조사 및 보고하도록 정하여 석면 실태조사가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조사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
- 회수 · 유통금지 처분의 공정성 · 실효성 저하
  - 석면제조업자 등이 자체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라 회수 · 유통금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은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곤란
  -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두고 로비 등 부패유발 발생 우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체조사하게 하는 경우 긴급한 필요성 등 조사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
- 또한, 자체조사의 경우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의 결과를 첨부토록 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9조(석면 등의 사용금지)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조 · 수입 · 유통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석면 함유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9조(석면 등의 사용금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행실태 확인의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 수입 · 유통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석면 함유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 · 수입 · 유통업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제정안과 같음)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제11조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원석 또는 분말형태(이하 "파우더"라 한다)로 수입 ·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승인 또는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석 형태의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수입 · 생산하여 골재, 파우더 등으로 변형하여 유통하거나 다른 상품 등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변형 · 제조 · 유통 등의 과정에서 제32조에 따른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변형 · 제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제품 등이 유통되었을 경우 해당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회수 또는 유통금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2) 현 황

- 석면함유 가능물질 수입 · 생산자에 대한 승인사항을 규정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원석 또는 분말형태로 수입 ·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원석 형태의 석면함유 가능물질 제조자 등에게 허용기준 준수의무 및 기준 초과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제조자 등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
-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변형 · 제조 과정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환경부장관에게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제품 등이 유통되었을 경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등을 명하도록 규정

(3) 문제점

- 기준초과 석면함유 제품이 유통된 경우 위해정보 접근성 미흡
  -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나 제품 등이 이미 유통된 경우 공개 · 열람 등의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이 떨어짐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유통된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나 제품 등의 유통 규모와 양, 피해가능지역 및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11조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① ~ ⑤ (제정안과 같음) 〈 신 설 〉	제11조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① ~ ⑤ (제정안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한 경우 이미 유통된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나 제품 등의 규모와 양, 피해가능지역 및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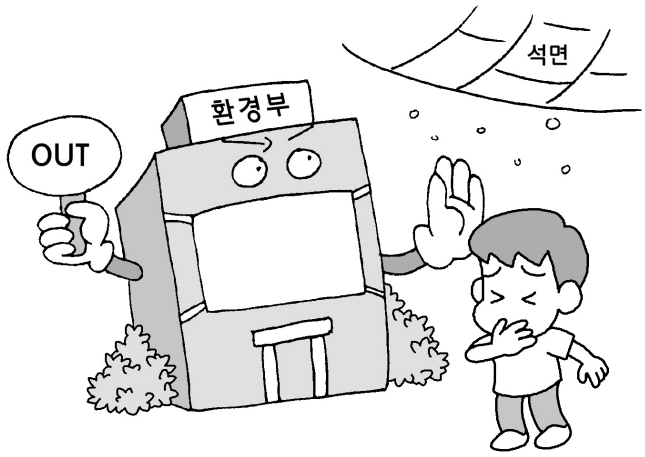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제25조 (농어촌건축물 등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태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 · 제거 ·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비용지원
  -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의 사용실태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실시 근거를 마련
  - 석면의 해체 · 제거 ·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08,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 주거건물 중 슬레이트 지붕재 비율 약 40%로 추정되고,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은 가구당 300~400만원(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자료인용, '09.7.10.)

(3) 문제점

- 비용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의 불명확
  -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 하여금 석면의 해체 · 제거 ·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이러한 비용을 누구한테 지급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아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이 결여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용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
  -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한 경우
  -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예산의 낭비 우려 및 부패통제장치가 부재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 환수장치를 마련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25조(농어촌건축물 등 석면조사)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농어촌건축물 등 석면조사 및 비용지원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체·제거·처리 등을 직접 수행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정안과 같음)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제33조 (작업 중지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체작업자가 제32조에 따른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해체작업자는 허용기준 달성을 위한 개선계획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을 경우 석면해체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중지기간, 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석면해체작업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서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석면관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석면해체작업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배출작업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③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은 석면해체 작업으로 인하여 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규정에 의한 석면농도기준 등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석면해체작업 등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은 해체작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2) 현 황

- 석면해체작업자에 대한 작업중지 및 재개요건 등을 규정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체작업자가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도록 의무를 규정
  -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해체작업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은 경우 석면해체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
-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의 작업중지 요청권 및 보고 권한
  -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여(단,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둔 경우는 예외)
  -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은 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 등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또는 석면해체작업 중지를 요청

– 이러한 작업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하면 이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

(3) 문제점

-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미흡

– 석면해체작업 관리인에게 작업중지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보고의무를 부여하면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하지 않아 작업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 공사감리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 부족

– 또한, 공사감리자를 둔 경우는 석면해체작업 관리인 지정의무의 예외로 하고 있으나, 공사감리자에게는 이러한 보고의무 등을 정하지 않아 석면노출에 따른 위해발생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부족

▶ ○○○ 직원이 지하철 역사의 석면 제거 공사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부실 공사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 △△경찰서는 22일 ○○○ 역사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맡은 3개 건설 업체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 직원 ☆모(39)씨와 브로커 ★(39)씨를 구속하고,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일보, '09.12.23)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작업중지 명령 요건에 석면해체작업 관리인의 보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

-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자를 석면해체작업관리인으로 의제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33조(작업 중지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체작업자가 제32조에 따른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34조 (석면해체작업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서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석면관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석면해체작업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배출작업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작업 중지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체작업자가 제32조에 따른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 ⑤ (제정안과 같음) **제34조 (석면해체작업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서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석면관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석면해체작업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배출작업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석면해체작업관리인으로 본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제5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업 또는 석면조사기관과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석면관리업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 석면관리업, 석면조사기관 및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의 위탁근거 규정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3) 문제점

-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의 준수부담의 적정성 미흡
  - 석면관리업, 석면조사기관 및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상의 뇌물죄 등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포괄적으로 정하여
  -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역할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은 준수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
-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 부족
  -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상의 뇌물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석면관리업, 석면조사기관 및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상 뇌물죄 등을 적용할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토록 할 필요
-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5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업 또는 석면조사기관과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석면관리업, 석면조사기관, 인증기관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 제정안 없음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의무위반 또는 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석면안전건축물인증 업무를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제정안 제27조) 하는 등
-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증의 취소(제29조), 석면관리업 또는 석면조사기관의 등록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40조), 석면환경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46조) 등

(3) 문제점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부재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갯수, 횟수 및 기간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 제정안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을 우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재량규정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 신 설 〉	제0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보육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접수하여 이 중 「영유아보육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법령에서 32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해야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 황

-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 중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비용을 징수
- 허위 보고 또는 증명,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경우에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수급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
- 기간 내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3) 문제점

- 수급자의 부당한 부담 증가 우려
  -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나 월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등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없는 경우까지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준수부담의 적정성에 문제
- 구체적인 결손처분 대상 · 절차 등 미비
  - 결손처분 대상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로 포괄적,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이 떨어져 예외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
  - 또한 결손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행정편의적 또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이 결정되어 예산을 낭비할 우려

※ 병원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해 지원하였다가 채권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미조치로 되돌려받지 못한 차관자금이 2백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04.10월, 경향신문)

※ ○○시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해서만 납세고지와 독촉을 한 후 재산조회 없이 소멸시효 및 불납결손 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한 사례가 5179건, 38억3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남. ('06. 12월, 행자부 감사결과)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귀책사유가 수급자에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 제36조제1항제5호(잘못 지급된 경우) 삭제
  - 제1호의 경우도 월 한도액을 미리 통지하여 수급자가 자신의 급여액을 사전에 인지하였던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
- 결손처분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
  - 결손처분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법률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 잘못 지급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 설〉 시행령 〈신 설〉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 잘못 지급된 경우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⑥ 재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방법, 결손처분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 (결손처분)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2.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 · 군 ·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채권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63조 (위임 및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기관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공용위원회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1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평가 · 인증 및 위원교육에 관한 업무
3. 제24조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1조 제2항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5. 제33조 제3항에 따른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제33조 제3항에 따른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7. 제35조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에 관한 업무
8. 제43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관리에 관한 업무
9. 제50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부패 통제장치(3-3)

(2) 현 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기관위원회의 평가 · 인증,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관리 및 줄기세포주 등록에 관한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3) 문제점

- 구체적인 지원규모 · 방법 등의 결여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 개정안에는 재정지원 근거만이 명시되어 있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 및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등으로 로비소지

● 보조금의 부정당 사용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의무 등 사후관리 수단 미비로 재정지원 효과 미흡 우려

※ 권익위 광업자금 지원 실태조사 결과('07. 4.)

• ○○업체는 광업자금을 융자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당해 시설설치와 관련이 없는 자회사에서 전액 발급받아 허위 제출

• △△업체는 지원자금중 일부(약 40여억원)를 시설 설치 등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 구입자금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

● 정부업무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장치 부재

– 공공성을 띄는 정부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 수단이 없어 수탁업무의 공정성 · 책임성 저해 우려

※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이 수행하는 '건설신기술 심사업무' 관련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06.11.)

• 인증신청업체 관계자들이 심의일 전에 기술설명 등을 이유로 인증심사 위원을 찾아와 금품 등을 건네려 하는 등 심사통과를 위해 학연, 지연 등을 총동원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로비 성행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정지원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선정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사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지원금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 및 해당 기관·단체에 대한 일정기간 지원 금지 의무화 등

※ 동법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따라 정하거나, 보조금법(제22조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30조~제33조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등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 신설

※ 수탁업무의 성질, 임직원의 업무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임원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3조 (위임 및 위탁 등) ① ~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제63조 (위임 및 위탁 등) ① ~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의 보조, 보조금 환수, 지원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6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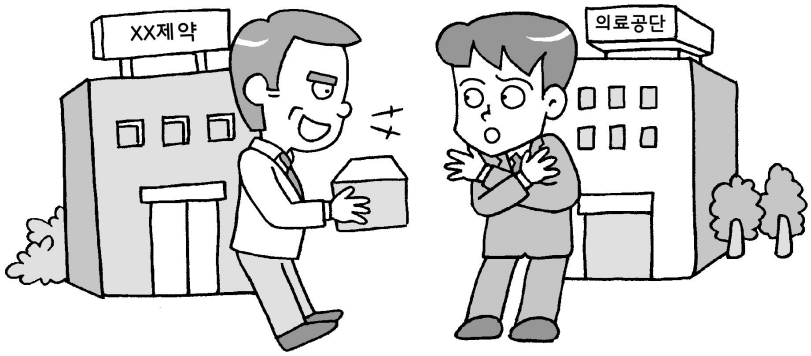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이라함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5의2]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62조제5항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품 제공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 수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요양기관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2. 학술대회 지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가 개최하는 의 · 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 좌장 ·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 식비 · 숙박비 · 등록비 1. 의 · 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 3. 대학, 산학협력단 4.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해외 학회를 포함한다),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3. 임상시험 지원	• 제31조 부터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정 연구비 * 다만, 전임상(동물시험, 실험적 시험 등)의 경우는 요양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
4. 제품설명회	•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 · 연구세미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약사 · 한약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기념품(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음료** * 다만, 제품설명회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소요되는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어서는 아니 됨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거래금액의 0.5% 이하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거래금액의 1.0% 이하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거래금액의 1.5% 이하 *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 함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 등도 포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6. 시판 후 조사	• 법 제32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다만,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사례비
7. 기타	•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 의학서적 등 물품(의 · 약학의 교육 · 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 **경조사비(혼례 · 장례에 한한다)로써 20만원 이하의 금품** • **명절(설, 추석에 한한다) 선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 •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 이하의 강연료(의 · 약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전문지식을 강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강연에 소요되는 실비의 교통비 · 숙박비 · 식비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사업자와 보건의료인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 · 약학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은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1)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 황

● 이 법에서는 약사 · 한약사 · 의료인 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 허용범위 이외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

● 별표 5의2에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 임상실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제품설명회 참석에 따른 교통비 · 기념품 · 숙박 · 식음료,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명절선물,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 등의 제공이 가능

〈 허용 가능한 금품 · 접대 제공 범위 〉

구분	허용 범위	제한 사항
경조사비	20만원	결혼 · 장례만 해당
명절선물	10만원	추석 · 설만 해당
식사접대	1인당 10만원(식음료 포함)	월 4회까지
강연료	1일 100만원 이하(시간당 50만원)	제한 없음
자문료	연간 300만원 이하(1회 50만원)	서면계약만 있으면 가능
학술대회지원	발표자 · 좌장 · 토론자로 초청할 경우 교통비 · 식비 · 숙박비 · 등록비 등 비용일체	단순 참가자 및 수행가족은 지원 불허
제품설명회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 숙박비	제한 없음

(3) 문제점

● 허용범위 중 일부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배

– 국 · 공립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배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빈발해 왔음

【행동강령 위반 사례】

- 한국△△의료공단 직원○○는 직무와 관련하여 PMS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23,680천원을 송금받고 회식비 지원 명목으로 218천원 상당을 제공받아 사용
- ○○의료원 장례식장 직원△△는 2004.4.~2008.3. 물품구매로 발생한 포인트를 공식처리하지 않고 이 중 2,608,400원을 임의로 사용
- 한국△△의료원 ○○는 2008. 9. 추석 무렵 입원환자 보호자 2명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수수

– 부령으로 국 · 공립병원의 의료인 등에 대해 일정 범위의 금품, 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부당이득의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 행동강령과 충돌

※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고, 제15조에 따라 대가성 외부강의 · 회의 등 참석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상호 법령간의 상충되는 내용으로 인해 부패발생의 사전 차단 · 예방 기능과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행동강령의 기능 약화시켜 공정한 사회 추진 등 국가정책수행의 걸림돌로 작용 소지

〈 복지부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간 상충 사례 〉

구 분	별표 5의2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국 · 공립병원 의료인 등 허용여부
학술대회 지원	• 보건의료단체 등이 주최하는 국내 · 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	• 가능하나 외부강의 신고 필요
제품설명회	•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지원(월 4회로 제한)	• 불가(행동강령 제14조 위배)
기 타	•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물품(의약학 교육 · 연구 및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경우에 한함.)	• 가능하나 의료인 개인이 편익을 위해 받는 것은 불가
	•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하의 금품	• 불가(행동강령 제17조제1항에 의해 직무관련자인 사업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으며, 제17조제2항에 의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수수할 수 없음)
	• 설, 추석에 10만원 이하의 물품 •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시간당 50만원) •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 • 의약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1% 이하의 카드포인트 등	• 불가(행동강령 제14조 위배) • 가능하나 외부강의 신고 필요 • 가능하나 외부강의 신고 필요 • 가능하나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

● 허용범위의 혼선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위협

– 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범위가 국가기관이 정한 구체적 기준과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 적용에 혼선을 일으킬 우려

※ 부령이 시행될 경우 허용가능범위의 상호 충돌로 180개 국공립 병원에 재직하는 의료인, 임직원의 혼선 유발

– 입법취지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부령으로 허용 가능 범위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리베이트 빌미 제공 소지

① 교통비·숙박비 :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에 참석한 의사·약사에게 어느 수준의 교통비·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 로비수단으로 이용될 우려

※ 월 처방액이 높거나 처방증대가 기대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회 참석시 관광 · 여행 등을 함께 지원하고 주요 핵심의사(KOL)들에 대해 해외학회 참여시 비즈니스클라스의 항공권(VIP대우)를 제공('09.1. 공정위)

※ (주)△△제약은 2006년 한해에만 종합병원 소속 의사 336명에 대해 항공료 · 숙박비 등 총 1,336백만원의 해외학회 참석경비를 지원('09.1. 공정위)

② 적정 연구비 : 임상시험지원과 관련하여 적정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정 연구비를 얼마나 정할 것인지,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 우회적 로비수단 소지

– 예산낭비 방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수립 필요

※ ○○대학교병원 ○○은 임상의학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평소 거래하던 △△회사에서 실험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재료비 명목으로 5,900천원을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음('10. 8. 감사원 감사결과)

※ 광주지검은 납품사례비와 시판후 임상조사를 하는 PMS 비용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강연료, 학회 경비 지원금, 회식을 빙자해 금품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병원 의사 31명을 적발('09.12.29. 경향신문)

③ 견본품·샘플 : 최소 포장단위,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제약사들이 과다한 견본품, 샘플을 제공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 우려

④ 경조사 : 혼례와 장례로 한정하면서 어느 범위 친척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 세부기준이 없어 4촌, 8촌 등 친 · 인척으로 확대될 소지

●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되어 의료비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작용

※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약 2조1천8백 억원으로 추정('07.12. 공정위)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실비의 교통비 · 숙박비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과도한 연구비 지급 방지를 위한 임상연구비 기준, 사후관리방안 마련

※ 연구비 지급기준, 집행실적보고서 제출, 지원내역 공개 등

– 견본품, 샘플 제공시의 포장단위, 수량 등 제공 범위의 기준 마련

– 경조사의 적용범위 구체화

※ 통상 혼례는 본인과 자녀, 장례는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 존 · 비속 · 형제자매에 대해 경조사 통지를 하고 있음

● 이법 시행으로 법 적용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의료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허용범위보다 엄격한 공직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따르도록 지침 통보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3)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 · 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 · 종합,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법령에서 11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 황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설치 · 운영하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2010년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약 87개소 운영 중이며 연간 사업비는 8,227백만원 지원 중

●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법률에 평가관련 규정을 마련, 이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신설

(3) 문제점

● 법령에 지원기준이 불분명하게 규정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준비자료 등 평가관련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규정할 경우 수검기관의 과도한 준수 부담 및 예측 가능성 저하 우려

※ 보육시설 평가 등 관련 평가항목만 알 수 있을 뿐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관찰자가 점검하는 서류 종류를 알지 못하여 시간과 업무의 부담으로 평가인증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 발생 ('07.11. 여성가족부)

● 또한 수검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및 감사 등이 달라지므로 평가등급을 잘 받고자 수검자에게 로비 소지가 있는 등 지원시설과 상담소 평가에 투명성 결여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원시설과 상담소 평가에 투명성 제고

–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준비자료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 특히 평가기준 중 '기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큰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1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등) ① ~③ (생 략)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서면동의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마련(3-3)

(2) 현 황

- 국제결혼중개 시 결혼당사자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맞선 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결혼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한 경우 결혼중개를 거부토록 함.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3만6204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배우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혼을 성사시켜 가정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3) 문제점

- 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제공관련 관리규정 부재

  – '신상정보제공 확인서(별지1호) 및 제출받은 서류'의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상정보 제공 관련 정부의 관리 · 감독이 어려워질 우려

  – 국제결혼중개업체 및 결혼상대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보관치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브로커 등을 통한 신상정보 조작 및 위조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

  ※ 검찰에 따르면 A사는 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결혼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한국 남성의 혼인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조작한 신상정보를 제공한 혐의 ('10.6월 아시아경제)

- 신상정보 제공관련 제재규정 미흡

  – '허위임을 알면서도 중개한 경우' 또는 '과장된 신상정보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부재하여 결혼 상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씨의 경우처럼 결혼중개업체는 건강진단서를 엉터리로 제출하거나 가짜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허다함. ('10.8월 시사N)

  ※ 국제결혼 중개업체 ○○사는 한국남성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등을 왜곡한 신상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중 ('10.6월 국민일보)

※ 속전속결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업체들은 한국 남성들의 직업과 경제능력을 과장. 예를 들어 남자 직업을 소개할 때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업자'로,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은 '대형 슈퍼마켓 운영자'로 포장 ('10.7월 동아일보)

– 이로 인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서류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적발 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금품 · 향응제공 등 부패 발생 가능성 증가

※ "위조된 서류로 혼인신고를 올리기 위해 몽골 혼인청에 뇌물까지 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08.3월 연합뉴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상정보제공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신설

–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위해 신상정보제공확인서 및 제출서류의 보존기간을 신설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서면으로 제공한 신상정보를 0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제공관련 제재규정의 실효성 제고 (법률 및 시행규칙)

– '허위임을 알면서도 중개한 경우' 또는 '과장된 신상정보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

※ 예시 : 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공한 중개한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

신상개요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통반		
	④ 전화번호		⑤ e-mail	
	⑤ 휴대전화번호			
신상정보	**① 혼인경력**	초혼	재혼(이혼, 사별)	재재혼(이혼, 사별)
	②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기타 결혼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기재할 것)		
	③ 직업	직 종	직장명	
	④ 범죄경력	(※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을 기재할 것)		
	⑤ 기타정보	기타 상대방의 소속국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상기인의 신상정보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상기 본인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틀림이 없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상기 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 서류	비 고
	1.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법 제2조에 의한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명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여부가 포함된 것) 3.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 확인서, 근무처 대표확인서, 기타 직업 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4. 범죄경력증명서(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등 관련범죄경력에 한한다) 5. 기타 상대방 소속국가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 황

● 국제결혼중개 시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 제공확인서 및 신상정보 확인서 작성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3) 문제점

● 신상정보 구비서류의 구체적 기준 부재

- 신상정보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 요건 및 확인사항이 없어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중개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혼인관계증명서,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구체적 유효기간 없이 관련 서류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정보의 경우 결혼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정보가 무엇인지 불분명

※ 관련 서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의 경우 제출서류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등기규칙
>
>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 · 초본, 주민등록등 ·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중개업체 및 결혼상대자가 제출서류의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 현재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조작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

※ 베트남 ○○씨 사건의 경우 상호 교환한 남편의 건강진단서에 남편이 지난 8년간 57차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으며 병원측 단순 실수인지, 중개업체와 병원의 거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10.7월 국민일보)

- 또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한 허위여부 및 누락사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배우자의 신상 정보를 예비 배우자들에게 양국 언어로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검증할 장치와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에 그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남 ('10. 7월 부산일보)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상정보제출 서류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신상정보 제출서류의 구체적 요건 및 확인사항을 마련하여 결혼중개업체에 신상정보 서류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

※ 예)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포함)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0개월 이내의 것 (임시직, 정규직 여부 포함)

건강진단서 : 최근 0개월 이내의 것 (후천성명역결핍증 및 성병등의 감염여부 외에 정신질환, 간질병, 결핵환자, 마약 ·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가 포함된 것)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규정 없음.〉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마련(3-3)

(2) 현 황

● 국제결혼중개업체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부재

(3) 문제점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련 정보 제공 미비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경우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련 정보가 없어 미등록 업체 및 허위 · 과장 광고를 하는 부적합한 업체를 선택하는 역선택 발생

– 특히 미등록 업체 이용자의 경우 사기결혼 피해를 받더라도 보상을 못받는 문제

※ 국제결혼중개업협회는 한 해 치러지는 2만5000여 건의 국제결혼 가운데 등록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동아일보, '10.7월)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법률위반 사항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실적을 올리기 위한 허위 · 과장 광고 및 브로커 개입에 의한 그릇된 정보제공 등 무리한 이윤추구 행위가 발생 할 우려

※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무등록 업소를 운영한 65명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중개업자 16명 등 모두 11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베트남인 35살 ○○씨 등 2명을 구속 (MBC, '10.8.)

※ 이주여성 인권단체 관계자는 "남성이 정신장애가 있거나 알코올의존증 환자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런 사실을 속이고 결혼중개업체에 고객으로 등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함. (동아일보, '10.7월)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도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및 법률위반사항 등 정보를 공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실적 및 법률위반사항 등 공시를 통해 일반인이 이와 관련 정보를 얻어 투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라. 4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차 위반시의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처분한다.

2. 개별기준(생 략)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마련(3-3)

(2) 현 황

-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허위 · 과장 광고를 하거나 신상정보를 미제출한 경우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
  - 법률 위반으로 등록취소 시 3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에게만 행정처분이 승계

(3) 문제점

- 등록제한 규정이 있으나 폐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한 승계는 1년 이내에 한정되는 점을 악용, 등록취소 전 미리 폐업하고 1년 후 재등록하여 또다시 법률 위반을 통해 이득을 얻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될 우려
  ※ 단기적으로 한탕 해먹고 휴 · 폐업 해버리는 악질 업체도 많아 이들 업체에 당한 이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는 문제 발생(시사IN, '10.7)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률 위반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게 된 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등록사항 자동효력 상실 규정을 배제하는 단서규정 신설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5조(휴업 · 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 설〉	**제5조(휴업 · 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 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생 략)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마련(3-3), 제재규정의 적정성(1-2)

(2) 현 황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미등록 업체 증가
  ※ 한국중개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로 신고가 들어온 미등록 업체의 중개행위를 적발한 건수만 최근 3~4년 사이에 1000곳이 넘음. (시사IN, '10.7)
- 대부분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
  ※ 돈만 받으면 '묻지마 주선'을 해주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난립하는 상황 (연합뉴스, '10.7)
- 또한 미등록 업체의 경우 거짓정보 제공, 신상정보 미제공 등 제재요건 발생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관리 · 감독의 한계

(3) 문제점

- 국제결혼의 수요 및 중개업체의 이해가 일치하여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수시 또는 사후점검으로는 적발에 한계
  ※ 여성부 관계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하는 소규모 영세 업체가 많이 있으나 이들 업체의 영업행위 경계선이 불분명해 단속에 어려움. (연합뉴스, '10.7)

● 미등록 중개업체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 미등록 업체 적발 시 이에 대한 제재가 법률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작아 제재의 실효성 저하 우려

※ 35살 황티 ○○씨는 이런 무등록 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위장 결혼을 알선해 한 사람당 2,000만 원 가량, 지난 3년 가까이 16명에게서 3억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 (YTN, '10.8월)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미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 내 ·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

● 미등록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

※ 기타 다른 법률의 경우에서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

4. 일반행정 분야

1) 국무총리실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국무총리실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현안과제의 관리, 정책분석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접수하여 이 중 「지식재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5개의 법령에서 10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155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항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 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금 보조 · 융자 및 알선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부지 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3) 문제점

-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재정지원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나
  - 신설되는 안에는 재정지원 근거만이 명시되어 있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정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지원 및 부지 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5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항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5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항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 신 설 〉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286조의2(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제266조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 ·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2) 현 황

- 개발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 ·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3) 문제점

-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 개발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이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되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경우 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과 평소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만 운영될 소지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86조의2(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제266조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 ·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86조의2(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제266조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 ·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17조(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5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주요 심의 · 조정 결과**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
- 차관, 유상원조 등 유상협력(유상지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술협력, 무상원조 등 무상협력(무상지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하여 추진

  ※ 유상협력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을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고, 무상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에서 담당

  – 법 제14조에 따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10년도 ODA 사업 및 예산현황은 무상지원이 100여개국 929개 사업에 4,400억원, 유상지원이 26개국 84개 사업에 4,740억원 수준으로 이중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민간협력사업 등에 약 15,467천불(한화 185억원 가량)을 책정

- 개정령안 제17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분야별 연간종합 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그 밖의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

(3) 문제점

●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투명성 · 책임성 확보절차 미흡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해당 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금 운영현황 공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원금 부당 사용 등 예산낭비 우려

※ ○○협회는 서명없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주유소영수증으로 홍삼을 구입하는 등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유용('09.10. 국감지적)

※ ○○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과정에서 북한 어린이 영양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모 재단에 3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이중 2,077만원을 과다지급한 사례를 지적('08.4. 감사원)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예산낭비 방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원금 운영상황을 공개

– 정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과 해당 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지원금의 수입 · 지출 내역, 세부운용실태 등을 포함한 지원금 운영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17조(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5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주요 심의 · 조정 결과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 〈신설〉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	**제17조(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5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주요 심의 · 조정 결과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14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무 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 재정 ·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 · 민방위 · 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감사 규정」 등 3개 법령에서 15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5조(세부기준 등) 동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동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직무활동을 규정하고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하여 동 규칙에서 집행대상의 직무활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부적정 집행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예산 낭비적 부패가 지속되고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낭비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에 따른 절차, 방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5조 (신설) 제6조(세부기준 등) 동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기준 등) 동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사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유관기관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활동의 범위를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으로 규정함

(3) 문제점

- 유관기관에게 식사 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활동의 범위를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으로 규정한 것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집행될 수 있으므로 판단착오 또는 부적정한 대상에게 집행하여 예산 낭비적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낭비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에게 식사 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활동의 범위를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로 명확하게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사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한다)와의 공동행사(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사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사이버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개정(안)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병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 황

-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병원장이 임명함
- 연구비는 1인당 1건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2,500만원 이하로 지급함

(3) 문제점

- 위원회 구성인원만 규정하고 있어, 병원장이 내부 직원만 임명하는 등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소지가 있으므로 연구비지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 공동연구비 지급기준이 학술지 게재로만 되어 있어, 어떤 학술지인지 또는 어는 정도 권위가 있는 학술지인지를 알 수 없어 아무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의 소지가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일정 수(과반 수 이상)를 민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게재대상 학술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병원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계획서의 타당성 및 연구비 지급 대상 여부 심의 등 2. 임상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 논문의 결과 평가 등 3. 연구비 지급 제외 대상 여부 심의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내 진료 1,2,3부장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로 병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임상연구 논문 과제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 진행 및 결과(보고)의 평가에 관한 심의 사항 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 심의에 관한 사항 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상연구 계획 검토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상연구 논문에 관한 제반사항 ⑤ 여비 및 수당은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 설〉	
제6조(지급액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건의 과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과제당 연구비를 2,500만원이하로 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등)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 ――――――

5. 교육 · 문화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 · 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1개의 법령에서 26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원**, **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및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2) 현 황

-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원, 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

(3) 문제점

- 교원과 직원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측 대표자의 참여비율 확대하는 등 편법적 운용 가능성
  - 법률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 시행규칙에서는 학교측을 대표하는 교원과 직원을 분리하여 규정
  - 교원과 직원은 학교측을 대표하는 구성단위로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각각 하나의 구성단위로 분리
  - 교원과 직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저해 우려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방안 미흡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방지를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학교와 학생 및 관련전문가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함
  - 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 선정 방법을 학교에서 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측 입장에 유리한 관련 전문가가 선정될 가능성이 큼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미흡
  -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 방지를 위해 법률에 등록금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는 필요한 등록금 인상률보다 등록금 상한선이 클 경우 법이 정하는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산정근거 없이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장치 필요
  - 향후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위해서는 회의록을 기록 ·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교직원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하나의 구성단위로 규정
  ※ 개정안에 교원과 직원이 분리하여 규정된 것을 교직원으로 통합하여 교직원이 위원회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 타당성 확인 장치 마련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기록 · 보관 의무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원, 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및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및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당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학교에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심의 일시 · 장소 · 내용 ·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9조(징수금액 및 인상률 보고 등)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금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정한 등록금 징수금액 인상률이 법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적정등록금 산정 내역 등)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 · 재정적 제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제출한 사유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 정원관련 제재,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차등지원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법률에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해당 대학에 행정적 ·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규정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함 〈고등교육법 개정이유(법제처)〉

- 학교의 장이 정한 등록금 징수금액 인상률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 사유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정원관련 제재,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차등지원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제재 부과 가능

(3) 문제점

- 법률에서 정한 등록금 상한선 초과 금지 규정 위배
  - 법률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
  - 시행규칙에서 등록금 상한선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유서 제출 · 검토 규정을 이용하여 등록금 상한선을 초과하려는 학교측의 로비 발생 가능성

– 학교의 장이 제출한 사유서의 합리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성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 개입 가능성 내재

– 등록금 인상률이 법에서 규정한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유서가 불합리한 경우에만 행정적 · 재정적 제재를 부과토록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유서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행정적 · 재정적 제재 없이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게 되므로 사유서의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는 학교의 로비 가능성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상위법을 일탈한 등록금 인상률 초과 허용 규정을 삭제

– 등록금 상한선 초과시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 사유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만 행정적 · 재정적 제재를 부과토록 한 규정 삭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9조(징수금액 및 인상률 보고 등)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금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정한 등록금 징수금액 인상률이 **법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적정등록금 산정 내역 등)**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금액 및 인상률 보고 등)**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금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행정적 · 재정적 제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제출한 **사유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 정원관련 제재,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차등지원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 · 재정적 제재)**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등록금 징수금액이 **법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결정된 때**에는 학생 정원관련 제재,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차등지원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34조(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2) 현 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에 위탁
- 한국연구재단은 기금지원대상사업자 선정 · 지원 및 기금 운용 · 관리에 따르는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

(3) 문제점

-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투명성 확보절차 미흡
  -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효율성 제고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운용현황 보고 및 공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만한 기금 운용이 우려됨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기금운용상황 보고 및 공개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금운용현황을 보고하고 기금의 수입, 지출내역 등 세부기금운용실태를 공개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4조(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O조(기금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①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금의 운용현황,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종료후 2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세부기금운용실태를 매 6월마다 1회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개정(안)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2) 현 황

- 수익자부담경비는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데
  - 동 개정안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면서 사업별 예산 · 결산내역을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3) 문제점

- 수익자부담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토록 한 규정의 신설 취지와 모순
  - 수익자부담사업 종료 후 정산시기를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에 대한 예 · 결산내역 공개를 강화해야 하나
  - 30일 이내에 예 · 결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그 내역에 대한 공개가 익년도에 이루어지게 됨
- 수익자부담경비 예 · 결산내역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의 실효성 저하
  - 학부모에 대한 수익자부담사업 예 · 결산내역 공개가 익년도에 이루어져 외부통제의 실효성 확보 곤란

※ 학교회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공개됨(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 · 결산 내역을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한 현행규정 유지(개정안 철회)

예시

현행	개정안	개선의견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 · 결산내역을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 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 · 결산내역을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 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간행물 · 체육 ·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국어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6개의 법령에서 10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33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는 때에는 당해 콘텐츠사업자에게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마련(3-3)

(2) 현 황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의 기술 및 서비스 기반을 갖춘 콘텐츠제공서비스업자를 선택 ·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란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서비스기술, 서비스 기반, 고객관리, 피해발생지수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 품질인증을 통해 저품질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품질인증 한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

(3) 문제점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사후관리 수단 부재

– 콘텐츠제공서비스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품질인증은 유효**하여 인증에 따른 서비스업자의 이익증가 등 **부정혜택 발생** 소지

※ **부정행위**로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이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인증서는 유효**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 ('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러한 부적합한 서비스업자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인증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증에 따른 국가적 예산만 낭비** 될 가능성

※ 비정상적 연구비 관리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하고 관련 기관의 수사가 진행돼도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어** 연구비 우수기관**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 ('10.6월 연합뉴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취소규정 마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인증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인증취소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5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립미술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마련(3-3)

(2) 현 황

- 미술관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문제점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금계획 등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기부금 모집이 청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씨는 신규 교사 채용과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전환 시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8명의 교사로부터 총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10.3. 문화일보)

- 또한 기부금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용도 지정 된 기부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될 소지

  ※ 모 단체는 지난 3년간 유흥주점 등에서 306차례에 걸쳐 2억3,000만여원을 쓰는 등 협회비로 '술잔치'를 벌였지만 정부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기부금 등 공금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2009.9.서울경제)

  ※ A씨는 또 2006년 6월12일 ○○협회에 기부된 기부금 1510만원과 같은 해 시체육회 예산 중 2112만원 등 3912만원을 빼돌려 전국체전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08.1.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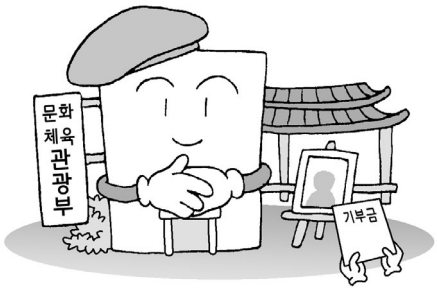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기부금 모집계획의 경우 문광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기부금 모집대상 및 모금액 등 기부금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기부금 모금절차, 방법, 사용내역 공개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경우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모집의 계획 승인 및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15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립미술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신 설 〉	제15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립미술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 기부금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번역 · 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 · 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한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번역 · 출판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접근성 · 공개성(3-1), 부패통제장치 마련(3-3)

(2) 현 황

●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도서의 해외출판을 장려하고자 간행물의 번역 · 출판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지원대상 선정은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함.

※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 · 출판 지원 사업에 연간 약 21억원 지출

(3) 문제점

●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의 비공개로 인한 투명성 저하

–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문학번역원의 규정(현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으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등으로 인한 로비소지**

– 또한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등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

※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에 번역 · 지원 대상 사업의 구체적 선정기준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금 결정에 있어서도 국가와 도서장르에 따른 차등지원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구체적 결정기준이 없음.

● 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장치 불비

– 번역 · 출판 지원 신청자와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및 부적절한 심의를 한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미흡**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지원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4조의2(번역 · 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 · 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한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번역 · 출판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번역 · 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 · 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한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번역 · 출판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선정위원 운영의 **공정성 제고** (한국문학번역원 규정)
  - 번역 · 출판 지원 신청자와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 · 기피 · 회피제도를 마련**

    ※ 예시
    - 지원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지원신청자와 학습 ·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그밖에 지원신청자 등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등을 제외
  - 선정위원의 결격사유 및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부적절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 예시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 담당 지원대상 선정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6. 법무·국방 분야

1)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접수하여 이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국적법 시행령」 등 6개의 법령에서 13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5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① 법 제14조에 위배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받은 기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지원받은 기금 중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금을 지원 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이나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2) 현 황

- 범죄피해 구조금, 보조금,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외 사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기금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반환
- 결산보고서 미제출 또는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기금 지원목적을 달성 또는 활동종료로 더 이상 계속할 사유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3) 문제점

-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투명성 확보절차 미흡
  - 기금 일부반환의 경우에 반환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질 우려
    ※ 사업자가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는 지원받은 기금의 일부에 대하여만 반환하도록 규정(시행령 제15조 제1항)
  - 또한, 결산보고서 미제출, 지원 받은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활동이 종료된 경우는 잔여 기금을 반환하고 기금지원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재량에 따라 기금의 지원 중단이 이루어질 우려
    ※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09년에 지원된 사업 중 50% 이상의 사업이 사업종료 후 4개월이 지난 '10.5월 까지 정산보고를 하지 않음. ('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금 반환 절차 구체화**
  - 일부반환 해당여부, 금액 등을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반환 절차 등을 법령에 구체화**
    ※ 반환금액 결정방법, 반환기한, 반환 절차 등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목적외 사용 등 발생시 기금지원 중단 의무화**
  - 결산보고서 미제출, 소명자료 제출 불응, 기금 지원목적 달성, 활동 종료된 경우에 **기금지원을 중단**하도록 명확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① 법 제14조에 위배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받은 기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지원받은 기금 중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금을 지원 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이나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금을 지원 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이나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4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실적
3. 사업수행능력
4. 신청사업의 타당성
5.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보조금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재규정의 적정성(1-2)

(2) 현 황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지정법인' 이라 함)이 보조금을 신청
- 법무부장관은 지정법인의 자산, 1년 이상의 사업운영실적, 사업수행능력, 동일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중복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 지정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 47조 및 48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

  ※ 부정수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목적외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 밖에 비밀누설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요구 등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3) 문제점

- 타법과 비교할 때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인해 **부패 억제력 약화**

  – 범죄의 일반예방 및 재범방지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 개정** 필요

  ※ '03.4.9.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 "을"뿐이 지방순회음악회 개최 관련 연주자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된 5천만원을 횡령하였으나, 벌금 2백만원 판결('04.12.9. 서울지방법원)

  ※ '03.12월경 ○○영농법인 조합원 박모씨가 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을 보조받기 위해 포장재 8만 2천개(1,456만 원)을 구입하였으나 18만7,250개로 부풀려 약 3천9백만원을 더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4천1백만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나 벌금 5백만원 판결('07.10.30. 전주지방법원)

  ※ 우리 위원회는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정도를 분석하여 '처벌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금형의 개선방향'을 각 부처에 제공('09.8.),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벌칙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한 보조금법 개정이 진행 중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징 역	벌금형 기준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2년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외 사용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법과 형평성 유지**
  - 보조금 부정수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에 비밀누설, 금품요구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국방부 소관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접수하여 이 중 「군수품관리법」,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의 법령에서 4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탄약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탄약의 추진제는 민간 전문업체에서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이나 **민간전문업**체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 황

- 탄약 폐기를 위한 군 소유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탄약 추진제는 민간 전문업체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함

(3) 문제점

- 군 소유 탄약폐기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탁 운영 절차와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업체에 위탁할 소지가 있음
- 폐 탄약 추진제를 민간 전문업체에서 폐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처리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무 업체에서나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의 소지가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탁 운영절차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폐 탄약 추진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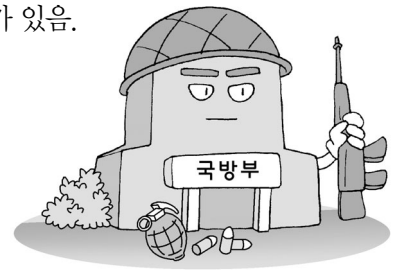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②(생 략)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탄약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탄약의 추진제는 민간 전문업체에서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이나 민간 전문업체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탄약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절차와 감독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탄약의 추진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해 허가받은 민간 전문업체나 「방위사업법」 제53조에 의해 허가받은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에서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이나 민간 전문업체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이 정 표

조사관 김 옥 희

대부분의 산에는 이정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정표는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부패영향평가는 베테랑이 아닌 신규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얼마 전 강촌역 부근에 있는 삼악산에 간적이 있었다.
삼악산 역시 이러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정표가 있다.
그런데 이정표가 참 이상하다. 아니 허술하다고 해야 할까?
산 중턱까지의 이정표는 그냥 길을 따라 쭈욱 걷기만 하면 되는 ‘직진 표시’의 방향표시 였다.
그러나, 산 정상 부근쯤의 이정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같은 길을 몇 번씩 맴돌게 했다.
이정표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 이정표를 만든 사람이 이 산을 너무 잘 알아서란다.
본인은 삼악산을 너무 잘 알다보니 대충 만들어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거였다.
그러나, 이정표는 초행길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닌가?

최근 모 부처에서 ○○제정안을 만들 때 법률에서 부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평가 의뢰한 적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다.
담당자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자라서 미처 모르고 그랬다며
대단히 고마워했다.
오히려 내가 다 미안할 정도였다.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담당자들 모두는 각 부처의 담당자가 제·개정 법령안과 관련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부패소지를 차단하는 이정표이자 길잡이로서 나아갈 방향을 표시하는 나침반 역할.
이것이 부패영향평가가 아닐까 싶다.

제4장 현행법령 평가

제1절 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제2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3절 사행산업 수익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제4절 교육 분야 선심성 예산 집행 차단

제5절 특별교부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1절 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Ⅰ. 추진배경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물품, 용역, 시설공사 및 군수조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

-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는 정부예산의 낭비, 기업생산성 저하는 물론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제공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과 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틀 마련이 필요

■ 공공부문 계약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금품제공 등 중요 계약법 질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재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담보하는 한편,
- 경미한 제재사유나 불확실한 제재기준에 대해서는 제재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개선

▲ 추진경위

- 외국기업과 독점적 거래관계에 있는 공기업 간부의 뇌물수수 등 비리로 국제신인도에 부정적 인식 초래

  ⇒ 공기업 반부패 점검회의시('09. 4.) 「공기업 관련 국가청렴도 제고방안」에 본 과제가 포함

- 과제선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9. 7. 30.)

Ⅱ. 현 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 뇌물제공 비리기업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1월~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명,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에 게재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도 재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다만 담합, 허위서류 제출자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계약의 부실 · 조잡 · 부당 · 부정이행
제2호	부당하도급
제3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2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경우
제4호	조사설계금액 · 원가계산금액 등의 부적정 산정
제4의2호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제5호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생
제6호	계약의 불체결 · 불이행
제7호	담합행위
제8호	입찰 · 계약 서류 위조 · 변조
제9호	고의 무효입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0호	입 · 낙찰 또는 계약체결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
제11호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제12호	입찰참가 · 계약이행 방해
제13호	감독 · 검사의 방해
제14호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심사 포기
제14의2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심사 포기
제15호	턴키입찰시 실시설계서 미제출
제16호	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G2B에 등록된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07~'09. 10.)〉

■ 제재기관별 현황

구 분	계	업종별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기타
계	3,666	1,096	1,616	419	535
국가기관	1,688	280	1080	149	179
지자체	1,016	466	177	190	183
교육기관	348	102	116	25	105
공기업 · 준정부기관	559	236	217	54	52
기타공공기관	1		1		
지방공기업	9	2	3	1	3
기타기관	45	10	22		13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업종별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기타
계	3,666	1,096	1,616	419	535
2007	1,201	330	558	115	198
2008	1,272	361	556	165	190
2009	1,193	405	502	139	147

■ 제재기간별

구 분	계	1월 이하	1~3월 이하	3~6월 이하	6~12월 이하	13월 이상
계	3,666	184	315	893	2,102	172
2007	1,202	73	105	237	732	55
2008	1,271	53	102	290	750	76
2009	1,193	58	108	366	620	4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분	세부추진과제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의무화
	2.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3.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4.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명확히 규정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합리적 개선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2. 제재사유의 중요도에 따른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3.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및 관리시스템 개선	1.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통보(등록) 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2. 부도 등 경영위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합리적 개선
	3. 부정당업자제재 관리시스템(조달청 G2B) 개선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1) 현 황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는 1월이상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0호)

● 뇌물제공 금액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

–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자 : 2년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 1년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 6월

– 1천만원 이하의 뇌물을 준자 : 3월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의무화

① 문제점

●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흡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제한 가능(임의규정, 자유재량)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9개 사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반면

– 뇌물제공 행위는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입찰참자자격 제한을 하는 사유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임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

※ 계약관련 뇌물제공 사유로 국가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입찰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음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국가계약법의 경우)	
제1호	계약의 부실 · 조잡 · 부당 · 부정이행
제2호	부당하도급
제3호	공정위가 요청한 자
제3의2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자
제4호	조사설계금액 · 원가계산금액 등의 부적정 산정
제4의2호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제5호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생
제7호	담합행위
제8호	입찰 · 계약 서류 위조 · 변조

② 개선방안

●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입찰 · 낙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부터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위 개선안을 참조하여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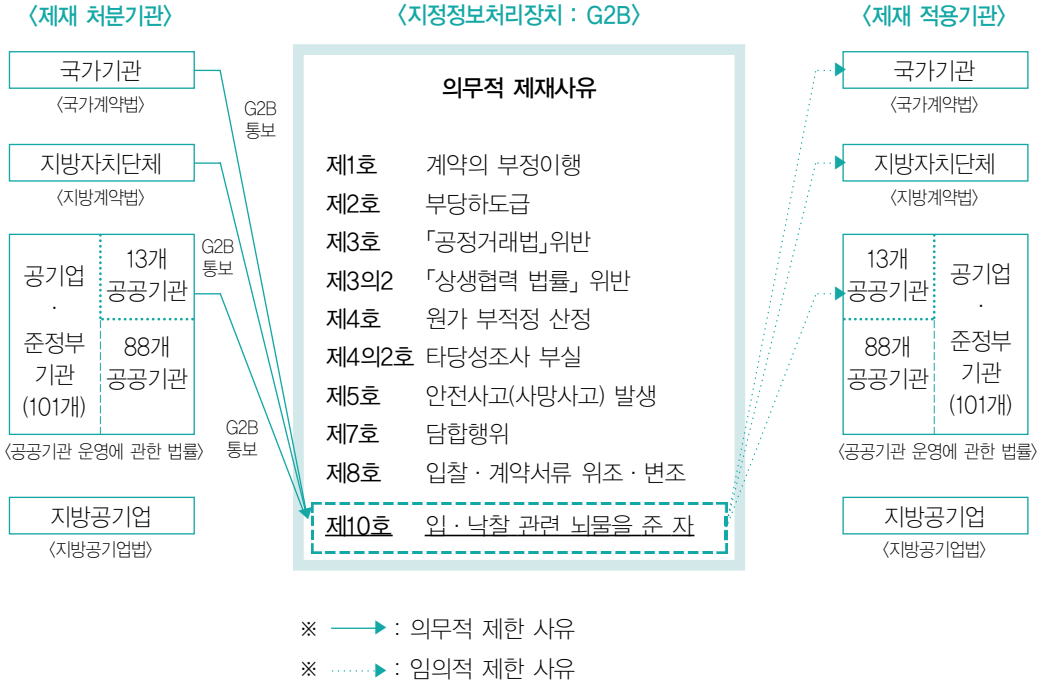

※ ——▶ : 의무적 제한 사유

※ ·····▶ : 임의적 제한 사유

〈부정당업자 제재(개선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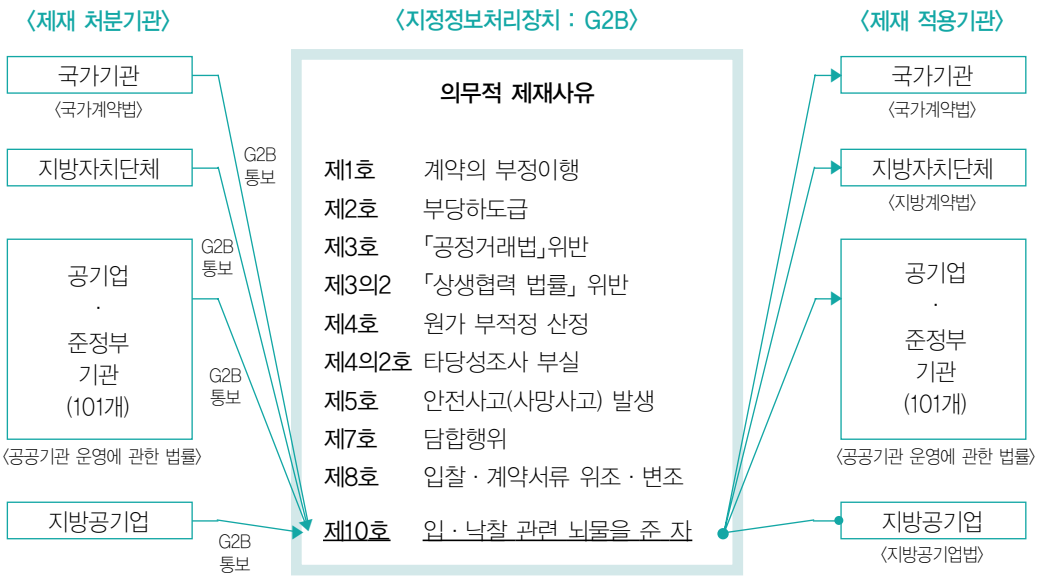

※ ⟶ : 의무적 제한 사유

1-2.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 확보

① 문 제 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 공기업 : 시장형공기업(6)과 준시장형공기업(18)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3)

  – 기타공공기관(204)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후 G2B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없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에서 13개 기관만 G2B에 통보하도록 규정

  – 13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G2B에 게재하지 못하여 사실상 해당기관만 제재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한국도로공사 등과 같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규모 철도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임에도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치 못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G2B에 게재되어야 다른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

▲ 공기업 · 준정부기관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⑦ 기관장(별표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2】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 또한 이들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G2B에 게재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여부 불명확

※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타공기업(204개)은 부정당업자제재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자체 내부규정을 제정 운영)

② 개선방안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분류체계에 맞추어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들은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처리사실을 G2B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공공성이 강하고 계약집행 건수가 많은 기타공기업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적용받도록 개선

예시(안)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현행	개선안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⑦ 기관장(별표 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은 ~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⑦ 기관장은 ~ 그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관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 확보

① 문 제 점

-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미흡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할 수 없어 제재사실을 어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 하여 해당기관에서 법률에 근거없이 임의대로 타 기관에 통보하고 있어 혼란 초래
    ※ SH공사의 경우 자체 회계규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의 통보대상을 정하여 운영

▲ SH공사 회계규정 제26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⑤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다른 투자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G2B에 게재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가 불명확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원칙 등)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개선방안

●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지방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입낙찰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 제재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제재 사실을 G2B에 게재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예시(안)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현행	개선안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부터 92조까지(제92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이하생략 ")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하생략")

1-4.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명확히 규정

① 문 제 점

-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 사유를 형법상 용어인 '뇌물(賂物) 제공'으로 규정하여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미흡
  - '뇌물(賂物)'이란 형법상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를 의미하는데, 이때 '직무' 관련성 여부가 뇌물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도 당사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할 경우 '뇌물'의 인정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징계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도 금품을 제공한 법인에 대한 제재는 뇌물죄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제재 처분이 어려움
  - 공무원은 '금품 ·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04. 9월)에 따라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됨

② 개선방안

- 금품제공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현실성 있게 개선
  -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를 '금품 ·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로 개선

    ※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행정적 제재이므로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품제공자에 대하여도 즉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하생략")에게 뇌물을 준 자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하생략")에게 **금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대법원은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고 전제하고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대법원80도1445판결)
-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
- 재산상 이익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고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합리적 개선

(1) 현 황

- 국가계약법 등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중앙관서의 기관장에게 보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하고 그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에 게재(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G2B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제4항)
  -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제재기간 동안 동일 법률을 적용받는 각급 기관별로 입찰참여를 제한 하여야 함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 다른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G2B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재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7호, 8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기타 사유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① 문 제 점

- 법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 속에서 합목적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 기업의 법질서 위반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며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합치하나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시간적 제한 없이 운영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대한 불안감과 애로 발생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사실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불안감 증대

② 개선방안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토록 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⑬ (신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⑬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후 0년이 경과되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2. 제재사유의 중요도에 따른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① 문 제 점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중요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7호, 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나머지 사유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은 기관에서는 임의적 재량으로 제한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행정편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준수부담 과다

※ G2B에 게재된 최근 3년간('07~'09) 부정당업자 제재 총 3,666건 중 선택적제재사유는 3,207건(87.5%) 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별 현황〉

구 분	계	의무적제재	선택적 제재		
		(1~5, 7, 8호)	6호	10호	기타
계	3,666	459	1,990	47	1,170
국가기관	1,688	259	1,287	21	121
지자체	1,016	112	225	12	667
교육기관	348	40	226	1	81
공기업 · 준정부기관	559	44	230	13	272
기타공공기관	1	–	–	–	1
지방공기업	9	2	2	–	5
기타기관	45	2	20	–	23

② 개선방안

- 제재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제재토록 하고, 기타 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적용 대상기관만 제재토록 개선

  〈예시(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8항 ⇒ 1-1 개선안과 동일

3.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및 관리시스템 개선

(1) 현 황

-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에 게재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추가로 제재를 받을 경우, 처분의 개시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제재처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중한 것을 적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통보(등록) 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① 문 제 점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 이를 즉시 G2B에 게재하여야 하나, 게재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실이 늦게 G2B에 게재될 경우 제재사실을 타 기관에서 알지 못해 부정당업자 제재효과 상실

    ※ 조달청 G2B에 게재된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3,666건을 분석한 결과 521건(14.2%)이 제재시작일보다 늦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 제재시작일 보다 90일 이상 늦게 게재된 건수도 96건이나 되는 등 게재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G2B에 등록된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구분	총계	제재 시작전	제재 시작일	제재시작일 이후 게재						
				계	1일	2~5	6~10	11~30	31~90	90일 초과
계	3,666	2,314	831	521	150	184	27	20	44	96
국가기관	1,688	1,482	125	81	17	35	7	3	12	7
지방자치 단체	1,016	331	406	279	101	86	14	11	23	44
교육자치 단체	348	199	98	51	5	33	–	1	1	11
공기업 · 준정부기관	559	294	182	83	18	15	6	5	6	33
기타공공기관	1	–	1	–	–	–	–	–	–	–
지방공기업	9	6	3	–	–	–	–	–	–	–
기타기관	45	2	16	27	9	15	–	–	2	1

② 개선방안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재시작일 전까지 G2B에 게재하도록 법령에 명문화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 **처분에 정해진 제재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2. 부도 등 경영위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합리적 개선

① 문 제 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로 규정

  ※ 조달청 G2B에 게재된 부정당업자제재 3,666건 중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건수가 1,990건으로 54.3%를 차지

-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가 발생한 시점은 공사의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에는 채권 · 채무의 조정, 자본재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가 있음에도

  –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경우, 부도로 인해 경영위기에 있는 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 공사를 포기하여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하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음에도 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 기업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음

② 개선방안

- 부도 등 경영위기로 인한 공사수행 지연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 마련

  – 부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기관의 공사수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포기를 하여 보증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생략")하지 아니한 자(단서 신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생략")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부도 등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공사수행명령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협조한 자는 제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부정당업자제재 관리시스템(조달청 G2B) 개선

① 문제점

-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이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G2B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제재기관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일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정당업자 관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경우 각급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한 경우 제재사유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시스템 상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행정편의에 의한 과도한 기업규제로 작용

② 개선방안

- 각급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G2B에 게재할 때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제한하는 사유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만 제한하는 사유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제2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I. 추진배경

■ 교육 분야 부패방지 종합대책(2010.3.10.) 추진

- '교육' 은 전 국민의 관심 사안으로 교육 분야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은 타 분야에 비해서 훨씬 높으며, 교육 분야의 부패는 장기적 국가적 손실을 야기
- 교육 비리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제도개선, 청렴컨설팅,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등 위원회 기능을 포괄한 종합대책 마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개선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관리부실

-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해제,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비 등 정화구역 관리가 부실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해당 교육청)

-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업무에 대해 민원인은 기준 · 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정보 공개가 소극적이며,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곤란한 것으로 인식(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정화구역 금지시설 해제 관련 청렴도 변동 추이〉

평가항목	'03	'04	'05	'06	'07	'08	'09
ㅇ 금품 · 향응 제공인식	7.55	7.86	8.72	8.89	9.02	8.19	8.82
ㅇ 금품 · 향응 경험	8.48	9.64	9.85	9.42	9.71	9.03	10.00
ㅇ 업무환경	7.79	8.24	8.35	8.53	9.26	–	–
– 금품 · 향응 제공 관행화	8.09	8.31	8.47	8.62	9.13	7.97	8.17
– 추가면담 필요성	7.20	8.09	8.12	8.35	9.52	–	–
ㅇ 행정제도	4.63	5.06	5.57	5.86	6.26	–	–
– 기준 · 절차 현실성	4.47	4.75	5.60	5.88	6.18	–	–
– 정보공개 정도	4.85	5.47	5.53	5.84	6.37	6.37	6.97
ㅇ 개인태도	7.46	7.77	7.76	7.96	8.29	–	–
– 업무처리 공정성	6.64	6.99	6.93	7.22	7.62	–	–
– 금품 · 향응 수수 기대	8.69	8.93	9.00	9.07	9.29	–	–
ㅇ 부패통제	5.38	6.00	5.53	6.00	6.50	–	–
– 부패방지 노력도	6.29	7.07	6.84	7.36	7.88	7.23	7.30
– 이의제기 용이성	4.10	4.49	3.68	4.09	4.56	4.01	4.50
ㅇ 책임성지수	–	–	–	–	–	7.24	7.73
– 공직윤리 준수	–	–	–	–	–	7.61	8.15
–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	–	–	–	–	7.18	7.34
– 권한 및 권위의 정당성	–	–	–	–	–	7.29	7.92
–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	–	–	–	–	7.10	7.73
–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	–	–	–	–	–	6.56	7.29

Ⅱ. 현 황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정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주는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구역

※ 학교정화구역제도는 1967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러한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

(2) 정화구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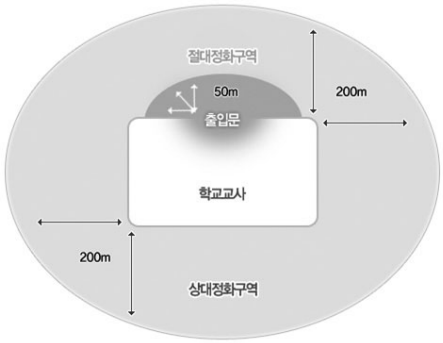

(3) 정화구역내 입지제한

- 정화구역(절대/상대)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업종과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업종으로 구분
  - 정화구역내 시설입지 금지 : 도축장, 화장장, 폐수처리시설, 전염병원,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가능 : 극장, 숙박업소, 단란 및 유흥주점,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당구장, PC방 등

    ※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설치 가능

(4)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 구성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화구역 해제여부 결정
  -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선정의 실효성 제고

(1) 문제점

-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해 학습 환경의 유해성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 절차 등이 없어 시행령 등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금지시설 지정이 될 우려

  ※ 금지시설 지정 : 노래방('93.9.27.), PC방('99.5.15.), 비디오감상실 · 전화방 · 성기구취급소('98.1.16.), 미니게임기('08.8.4.)

- 금지시설 지정이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

  ※ 안마시술소는 대표적인 성인업소 임에도 금지시설로 미지정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운영상 혼란초래

  – "호텔, 여관, 여인숙에"에 '모텔'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2) 개선방안

-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학습 환경의 유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금지시설 선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 사회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재지정

  – 금지시설에서 포함할 업종 : 안마시술소 등

  –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업종 : 당구장, 증기탕 등

-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

  〈예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등

2.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 구체화

(1) 문제점

● 지역교육청 별로 정화구역 해제 심의기준(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없어 정화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등 재량권 남용 소지

–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 각 교육청별 심의기준이 지역여건, 유치원 · 대학 등 학교의 급별에 따른 특성, 시설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

※ 최근 3년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 16,084건 중 9,711건(60.3%) 해제

(2) 개선방안

●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지역여건, 학교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마련토록 법령에 규정

〈예 시〉

– 지역의 특성 : 1) 도로, 하천, 철도, 건물 등 지형 · 지물로의 단절여부 등 학생들의 접근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유해 정도를 판단

– 형평성 : 1) 유해업소가 전혀 없는 학교이거나 동일업종이 심의 해제된 바 없는 학교인 경우 청정지역으로 보호 관점에서 가급적 해제를 억제

2) 기존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 학교의 경우 주변 기존업소와의 형평성, 심의 사례, 행정소송(심판) 결과 등을 반영하여 판단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확보

(1) 문제점

- 학교정화구역의 관리자인 학교장은 정화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출만 할 뿐 심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
-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 자격상실 사유 불합리
  - 정화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학생이 졸업 · 휴학 · 전학 및 퇴학 하였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시로 정화위원이 교체되는 등 전문성 · 공정성 확보 미흡
- 정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확보 및 부패통제장치 미흡
  - 정화위원회 위원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해제 등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제척 · 회피 · 기피제도 등 부패통제장치 미흡

(2) 개선방안

- 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시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역할 강화방안 마련
  - 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시 해당 학교장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
  - 해당학교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허용
  - 정화구역 해제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결격사유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 학부모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
-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 학교정화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제척 · 회피 · 기피제도 신설하고,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4. 정화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1) 문제점

-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받아 설치한 업소의 불법여부(성인컴퓨터방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근거 미비
  - 교육장과 학교장 등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지해제된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 금지시설 설치예정 건물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해제심의 및 관리 주체 불명확

(2) 개선방안

-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를 받은 업소의 편법 · 불법영업 등에 대하여도 학교정화구역내 불법행위 점검시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련
- 해당학교 학부모위원이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 점검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금지시설 설치예정 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심의 및 관리자를 명확히 규정

Ⅳ. 세부평가서

>> 1.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선정의 실효성 제고

▲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 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 · 처리하는 시설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 · 경마장 ·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 · 무도장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재량범위의 적정성(2-2), 예측가능성(3-2)

(2) 현 황

● 금지시설은 학교정화구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과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규정

- 정화구역내 시설입지 금지 : 도축장, 화장장, 폐수처리시설, 전염병원,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가능 : 극장, 숙박업소, 단란 및 유흥주점,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당구장, PC방 등

● 금지시설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금지시설로 선정

※ 금지시설 지정 : 노래방('93.9.27.), PC방('99.5.15.), 비디오감상실 · 전화방 · 성기구취급소('98.1.16.), 미니게임기('08.8.4.)

● 금지시설로 지정된 정화구역내 기존 업소는 일정기간내(1년)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심의를 받든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개정안 부칙에 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제13982호, 1993.9.27.〉

②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4년 8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제2호	총포화약제조·저장소/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	×	○	×	○	
	제4호	제한상영관	×	×	×	×	
	제5호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	×	×	×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	○	×	○	
	제7호	폐기물처리/폐수종말처리/축산폐수배출/분뇨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제9호	전염병원/전염병격리병사/격리소	×	×	×	×	
	제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	○	×	○	
	제14호	당구장	○	○	—	—	헌재결정(97.3.27.)반영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	○	×	○	
	제16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	—	—	
	제17호	미니게임물/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포함)	×	○	×	○	대학 적용 제외
영 제6조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제19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	×	×	×	
	제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제2호	만화가게	×	○	—	—	
	제3호	무도학원/무도장	×	○	×	○	
	제4호	노래연습장	×	○	—	—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	○	—	—	

(3) 문제점

■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해 학습환경의 유해성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 절차 등이 없어 시행령 등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금지시설 지정이 될 우려

-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금지시설의 지정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면서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편의에 따라 임의대로 선정될 우려
- 금지시설을 학습환경의 유해성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지정할 경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 금지시설 지정이 사회여건의 변화나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추가하거나 조정

- 안마시술소 : 대표적인 성인업소임에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음
- 콜라텍은 주류를 판매하지는 않고 있으나 성인 남녀가 춤을 추는 곳으로 무도학원, 카바레 등 유사한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7.16.〉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이라 하고, 무도장은 '무도하는 곳', 무도는 '춤을 춤'이라는 뜻이므로, 무도장은 디스코텍이나 콜라텍을 포함하여 널리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지칭하고, 무도장업은 유료로 무도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볼 것이다.

- 당구장 : 올림픽 주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체육시설임에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서는 정화구역 해제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도한 규제

〈헌재판결내용 중〉

– 당구장업은 과거에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여 허가대상업이었으나, 1989. 7. 1.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신고대상인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었다
– 당구장업은 이와 같이 법령상 엄연히 체육시설업의 하나이며, 나아가 당구경기 그 자체도 남녀노소 누구나 여가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체육이다. 이는 당구경기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장애자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선 시범종목으로 각 채택되었고,

1995. 10. 세계당구협회가 88번째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의 가맹단체로 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 헌법재판소도 1993. 5. 13. 당구장 출입문에 18세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한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운영상 혼란초래

● 제2호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에 '총포사'가 포함되는지 불분명

– 총포 · 화약류를 판매하는 총포사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나,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

● 제2호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에 가스 충전소나 가정용 LPG가스 판매소가 포함되는 지가 불분명

– 법령에서 정의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빈발하고, 법령상의 흠결을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을 통해 해결

※ 가정용 LPG가스 판매소는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저장능력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금지시설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저장능력이 총 5톤**(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25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의 범위에 포함**됨('04.9.17. 질의회신)

● 제5호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다른 법령의 개정을 통해 수정된 용어가 미반영된 채로 잔존

– 납골과 같은 일본식 표현이나 화장장과 같은 혐오적 인식이 강한 표현을 순화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사용하도록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07.5.25.)

● 제6호 '폐기물 수집장소'에 고물상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고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나 국민들이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인식하여 집단민원 빈발

●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에 '자동차폐차장'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 자동차폐차장 자체는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폐차장에 소각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으로 금지시설에 포함됨

▲ 자동차폐차장의 폐기물소각로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96.1.24.)

⇒ 자동차폐차장의 소각로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1호에 의한 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치가 불가함

● 제13호 '호텔, 여관, 여인숙'에 모텔도 포함되는지 불분명

– 학교보건법은 '모텔'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은 숙박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규제

▲ 공중위생보건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시행령 제6조 제1호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업종이나 여전히 금지시설로 규정

– 목욕장업을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 등으로 구분하던 「공중위생법」이 폐지(1999. 2. 8)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목욕장업으로 일원화 되어 증기탕은 법률규정에서 폐지

(4) 개선방안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대한 학습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금지시설 선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 금지시설에 대해 폭력성, 선정성, 중독성, 정서적 유해성, 혐오성, 안전성 등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여부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 금지시설 선정시 국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 유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금지시설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예시(안) 「학교보건법」

현행	개선안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④ (신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폭력성, 선정성, 중독성, 정서적 유해성, 혐오성, 안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사회변화와 현실에 맞추어 재지정

● 금지시설에 포함해야 할 업종 : 안마시술소 등

●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업종 : 당구장, 특수목욕탕 중 증기탕 등

※ 콜라텍은 기존 금지시설인 무도학원, 무도장과의 형평성을 고려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정의와 업종형태를 관련 법령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

● 금지시설을 국민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시설의 인 ·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내용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

예시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제25조에 따른 저장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 · 가스제조 · 저장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제조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저장소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장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 제외)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축장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11호에 따른 봉안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2.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 구체화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20. "생략"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4조에 따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자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2-1),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 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입지를 금지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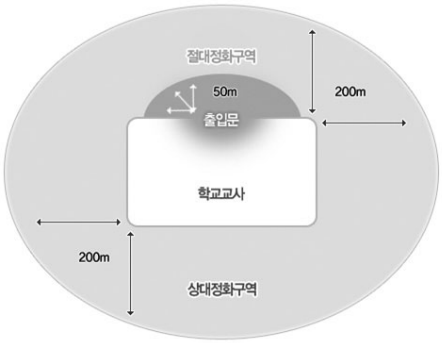

- 정화구역 지정절차
  - 교육감은 정화구역 설정 · 공고자료(공고문 및 정화구역도 등)를 당해 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교육청과 학교 게시판에 게시 및 홈페이지에 게재
  - 정화구역도는 코팅 등을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한 후 민원인이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 · 관리
  - 정화구역도(지번일람표 작성시 지번일람표 포함)를 학교별로 스캔하여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 및 인 · 허가 부서에서 항상 열람이 가능토록 함

〈학교정화구역 지정현황〉

구 분	지정현황			비고
	학교수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계	16,175	208,955,320	3,239,084,704	
서울특별시교육청	2,251	19,506,776	415,584,492	
부산광역시교육청	1,036	8,201,548	213,688,082	
인천광역시교육청	841	12,970,533	167,483,437	
대구광역시교육청	707	7,341,438	148,590,669	
광주광역시교육청	479	5,428,270	104,765,315	
대전광역시교육청	485	1,957,842	56,777,452	
울산광역시교육청	395	7,472,187	70,548,344	
경기도교육청	3,590	34,619,642	618,341,177	
강원도교육청	777	6,521,290	183,134,270	
충청북도교육청	630	7,160,220	143,685,000	
충청남도교육청	869	16,205,360	255,919,025	
경상북도교육청	1,270	49,929,762	275,207,814	
경상남도교육청	1,439	19,644,400	274,777,099	
전라북도교육청	221	2,089,681	29,320,769	
전라남도교육청	963	7,838,232	230,201,5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22	2,068,139	51,060,212	

- 금지시설 현황 : 학교정화구역내에는 금지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정화구역내 시설입지 금지 : 도축장, 화장장, 폐수처리시설, 전염병원,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 가능 : 극장, 숙박업소, 단란 및 유흥주점,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등
-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청은 정화위원회 심의(정화위원회 위원 2/3의 찬성)를 거쳐 정화구역 해제여부를 결정

  ※ 심의절차 : 정화구역 해제신청(민원인) → 서류검토 및 학교장 의견수렴, 현장조사(시군구교육청) →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민원인)

(3) 문제점

■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우려

● 상대정화구역안에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해제 심의기준을 법률에 미규정

– 해당 교육청별로 정화구역 해제기준을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정화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재량권 남용 우려

-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각종 질병을 발생 하게 하거나 전염하게 하는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정화구역해제 심의기준 비교〉

서울시 서부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청
대상물의 위치가 학생 주통학로에 위치하는지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업소의 출입구 및 내부행위가 학교에서 보이는지	주 통학로 및 학교내에서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행위 및 내부시설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학교와 업소 설치예정 장소와의 주변상황 – 건물로 차폐, 도로(왕복4차선이상), 하천 · 철도 · 공원 등으로 이격 여부	간판과 현란한 광고행위 및 조명등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주 통학로 및 학교내에 소음, 악취, 분진등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소음, 먼지, 악취, 위생해충 발생, 돌발사고, 기타 요인 등)이 있는 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주통학로 및 학교내에 위생해충 또는 각종 질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전염하게 하는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동 업소가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은	기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 불명확한 해제심의 기준으로 인해 금지시설 해제가 정화위원회 위원이나 교육청의 업무담당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

● 또한, 세부심의 기준이 일반국민에 알려지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유발 소지

– 심의기준 중 주요 요소인 주통학로는 재적학생 1,000명 이하의 학교는 5분지 1 이상, 1,000명 초과의 학교는 300명 이상 등 · 하교하는 길로 정의되고 있으나, 학교별로 '주통학로'를 사전에 지정 고시하지 않아 국민의 예측가능성 저하

■ 정화구역이 일률적으로 지정(200m이내)되고 있으나, 정화구역 해제 심의기준에 지역실정 및 시설여건 미반영

● 정화구역 경계지점의 토지 일부가 정화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 금지시설 해제 심의 대상 여부가 법령에 불분명하게 규정

– 금지시설이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대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이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 금지시설이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재산권 침해소지

※ 정화구역 경계지점의 경우 금지시설이 정화구역 내에 있으나 출입문은 정화구역 밖인 경우와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동일 필지 중 극히 소수의 면적이 정화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등 다양한 사례 발생

●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하천 등의 시설로 생활권이 단절되어 학생들의 통행이 불가한 지역 등

※ 최근 3년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 16,084건 중 9,711건 해제(60.3%)

구 분	계		2007		2008		2009	
	신청	해제	신청	해제	신청	해제	신청	해제
계	16,084	9,711	4,735	2,807	6,201	3,678	5,148	3,226
서울특별시교육청	4,105	2,453	1,184	673	1,558	37	1,363	843
부산광역시교육청	1,156	717	339	226	451	251	366	240
인천광역시교육청	1,326	723	368	189	456	256	502	278
대구광역시교육청	423	245	145	84	161	95	117	66
광주광역시교육청	826	547	236	133	324	246	266	168
대전광역시교육청	406	270	148	96	137	97	121	77
울산광역시교육청	423	231	115	66	150	86	158	79
경기광역시교육청	3,466	2,014	1,001	536	1,419	794	1,046	684
강원광역시교육청	456	254	154	92	188	99	114	63
충청북도교육청	493	316	152	102	182	117	159	97
충청남도교육청	318	193	103	66	101	50	114	77
경상북도교육청	600	292	150	85	268	107	182	100
경상남도교육청	831	552	258	176	326	214	247	162
전라북도교육청	253	185	69	54	108	81	76	50
전라남도교육청	658	452	211	154	237	150	210	148
제주특별자치교육청	344	267	102	75	135	98	107	94

■ 유치원, 대학 등 학교의 급별 특성이 해제심의기준에 미반영

●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도심지내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 · 고등학교 및 대학생과 연령이나 신체 · 지능의 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금지시설별로 특성이 미반영

● 대학생은 대부분 성인업소 출입이 가능한 성인으로 유해환경에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데도 학교의 급별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심의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정 운영

■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규정

●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 천연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시설의 경우 저장용량에 따른 이격거리 등 미반영

● 유흥주점, PC방, 사행행위장 등 학생들의 등하교 과정에서 유해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위치 및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

(4) 개선방안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지역여건, 학교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마련토록 법령에 규정

● 지역여건

– 동일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전체토지의 1/2이하)이 정화구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된 토지의 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고속도로, 철도, 하천(폭30m이상) 등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시설로 분리되어 생활권을 달리하는 지역 등

● 유치원, 대학 등 학교특성

–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약100m) 이상 떨어진 곳

– 대학의 상대정화구역내에서 유흥주점, 호텔 · 여관 · 여인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무도학원/무도장 등 성인출입 업소

● 금지시설의 특성

– 가스저장소, 총포화약 저장소 등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은 안전에의 영향정도, 시설규모 등 관련 법령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시설별로 다른 이격기준 마련

– 유흥주점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은 학교와의 이격거리, 주통학로와의 인접여부, 학교내에서의 가시여부, 동종 유사업종의 설치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해제여부 판단

※ 심의의 주요 요소인 '주통학로'를 학교장이 지정하여 정화구역도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시

>>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위원임기·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설치) 교육장소속하에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정화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학교정화구역 설정 및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등을 심의
  -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정화위원회의 위원임기·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 지명위원 : 교육장소속 공무원 중 학무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위촉위원 :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련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위촉

● 정화위원회 임무(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심의

– 학교설립예정지로 결정 · 고시된 이후 학교주변의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 학교의 보건 · 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정화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예 : 경기도 교육청 조례)

–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은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등

(3) 문제점

■ 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시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 참여 미흡

● 정화구역 해제심의는 지역교육청 별로 설치된 정화위원회에서 관내 모든 학교의 정화구역 해제 심의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 학교정화구역을 관리자인 해당 학교장은 정화구역 해제심의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 정화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1/2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화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학교 학부모 위원은 정화구역 해제심의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학생수 : 200명 미만(5~8명), 200~1000명(9~12명), 1,000명 이상(13~15명)

○ 일반학교의 경우

– 학부모위원 : 40~50%, 교원위원 : 30~40%, 지역위원 : 10~30%

2)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불합리로 수시로 정화위원이 교체되는 등 전문성 · 공정성 확보 미흡

●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부분 2년이나 ○○교육청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의의 전문성 · 독립성 부족 예상

※ 대부분의 기관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곳도 있음(인천, 경기)

– 또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교육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정화위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심의의 공정성 확보 미흡

▲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은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정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확보 및 부패통제장치 미흡

- 정화위원회 위원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해제 등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사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장치 부재
-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 · 향응 수수한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정화구역 해제 등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처벌에 있어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필요

(4) 개선방안

■ 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시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역할 강화

- 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시 해당 학교장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
  ※ 현재 학교장은 심의 참고자료로 서면의견만 제출
- 해당학교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허용
- 정화구역 해제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예시(안) 「학교보건법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⑦ (신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⑦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장은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심의시 해당 학교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신설)	⑧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해제심의시 해당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⑨ (신설)	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화구역 해제결정에 대하여 이의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결격사유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라도 위원의 임기를 보장
- 정화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 · 향응 수수 등 부적절 행위자에 대한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
- 정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척 · 회피 · 기피제도 신설
- 정화위원회 위원이 심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입법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 3. "생략"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생략)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략"

>> 4.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8조(조치 등의 요청)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영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 정화구역의 관리는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나,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개교전 까지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
  - 상 · 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가 관리하나,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상급학교가 관리
  -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관리
  -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
- 정화구역 관리자(학교장)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치(고발)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시행령 제8조)

▲ 학교보건법 제6조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 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 · 등록 · 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 ·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998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무단 설치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1년 징역 또는 100만원 벌금 →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3) 문제점

■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받아 설치한 업소의 불법 여부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근거 미비

● 교육장과 학교장 등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지해제된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 금지시설 설치예정 건물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해제심의 및 관리주체 불명확

●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예정 건물의 소재지와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의 교육청에서 해제여부를 심의(질의회신, 2009.3.2.)

– 그러나, 학교정화구역을 설정자(학교소재지 관할 교육청)의 위임을 받지 않은 타 교육청에서 정화구역의 해제심의를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정화구역의 관리주체가 불분명

※ 서울시교육청은 금지시설 설치 소재지 교육청에서 해제심의를 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소재지 교육청에서 해제심의를 하는 등 운영상 혼란 초래

– 학교정화구역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불법업소에 대한 점검 · 단속 떠넘기기 사례도 발생

(4) 개선방안

■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를 받은 업소가 편법 · 불법영업으로 발생하는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도 학교정화구역내 불법행위 점검시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련

■ 해당학교 학부모위원이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 점검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금지시설 설치예정 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심의 및 관리자를 명확히 규정

예시(안)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현행	개선안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 ~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 ~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해제심의를 받은 시설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시(안) 「학교보건법」

현행	개선안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해제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내용과 달리 불법으로 금지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 한 경우 포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절 사행산업 수익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Ⅰ. 추진배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확충, 기금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행산업의 규모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98년 이전에 경마, 경륜, 복권만으로 유지되던 사행산업이 스포츠 토토('01.10), 경정('02.6), 소싸움('10년 도입예정) 도입 등에 따라 OECD 국가 중에서 사행산업의 종류는 최다

■ 사행산업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 축산발전 등 공익사업을 통한 사회환원이라는 긍정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수익금의 집행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수익금이 외부인사 참여없이 내부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거나 수익금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 · 감독 부실로 목적외 사용사례 발생

※ 수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익금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됨.

● 이는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가 내부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지원대상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집행내역이 비공개 되어 수익금을 지원받는 수탁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때문

■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령」, 「경륜 · 경정법령」, 「한국마사회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금을 지원받는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

Ⅱ. 사행산업 현황

1. 사행산업 시행체계 및 법적근거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경륜 · 경정, 경마 등의 사행산업은 발행이 **개별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

〈사행산업 시행체계 현황〉

산업	주무부처	시행기관	법적근거
체육진흥투표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법령 •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등 (내부지침)
경륜 · 경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 · 경정법령 •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내부지침)
경마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법령 • 특별적립금 운용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 프로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등의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한 후 베팅하여 실제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게임

2. 사행산업 수익금 및 집행 현황

● 사행산업 수익금은 발매금액에서 환급금, 제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09년은 8천8백억원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

〈사행산업 수익금 현황(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단위 : 백만원)

사행산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302,645	384,150	616,275	742,157	882,210
체육진흥투표권	114,230	231,963	352,178	416,517	487,674
경륜 · 경정	47,765	9,487	58,297	52,240	99,036
경마	140,650	142,700	205,800	273,400	295,500

● 사행산업으로 조성된 사행산업 수익금은 대부분 기금에 적립하거나 국민체육진흥, 축산발전 등 공익사업으로 집행

〈사행산업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용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체육 진흥 투표권	기금 출연(80%)	10,398	34,269	85,737	281,742	333,213
	주최단체 지원(10%)	3,466	11,423	23,196	35,218	41,652
	문화 · 체육사업 지원(10%)	3,466	11,423	23,196	35,218	41,652
	월드컵경기장 건립비지원	17,330	57,115	99,833	–	–
경륜 경정	국민체육진흥기금(40%)	32,830	19,106	3,795	23,319	20,896
	청소년육성 기금(30%)	24,623	14,330	2,846	17,489	15,67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7.5%)	14,363	8,359	1,660	10,202	9,142
	지방재정지원(10%)	8,207	4,776	949	5,830	5,224
	문광부 인정 공익사업(2.5%)	2,052	1,194	237	1,457	1,306
경마	축산발전 기금(56%)	81,617	67,512	68,496	98,784	131,232
	경마사업확장적립금(20%)	51,010	42,195	42,810	61,740	82,020
	이익준비금(10%)	17,003	14,065	14,270	20,580	27,340
	농어촌 복지 등 (14%)	20,404	16,878	17,124	24,696	32,808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대상에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 · 보수**를 위한 지원이 신설('10.1월) 되어 사용비율(5%)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조정될 예정

3. 기금을 제외한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과정

● 사행산업 수익금 중 기금에 적립하지 않는 일부 수익금은 주무부처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집행 가능

〈주무부처에서 집행가능한 공익사업 관련 수익금 현황〉

구분	총수익금 중 공익사업 비중	집행대상
체육진흥투표권	20%	• 문화 · 체육 지원사업(10%) • 투표권 발행 주체단체 지원(10%)
경륜 · 경정	2.5%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
경마	14%	• 농어촌 복지 등 특별적립금

● 수익금은 주무부처별로 직접 사용하거나, 수탁기관을 통해 집행을 위탁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현황〉

구분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	경마
수익금	문화 · 체육 지원사업	투표권 발행 주체 단체 지원	문광부 인정 공익사업	농어촌 복지 등 특별적립금
배분 비율	체육분야(70%), 문화분야(30%)	투표권 발매액 비율별로 주체단체 지원	–	지원대상 사업에 분야별 한도배정
지원대상 세부사업	• 체육인재 양성 • 비인기 종목 지원 •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등	•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 • 프로스포츠 지원 등	•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원 • 소외계층 지원 등	• 농어촌 복지 증진 • 농업농촌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 마사진흥 등
지원대상 결정권자	문광부 장관	문광부장관, 주체단체	문광부 장관	• 농림부 • 사업주관기관 (농촌희망재단, 한국마사회 등)
심의절차	문광부 내부 심의	주최단체 세부사업 결정 → 문광부 승인	문광부 내부 심의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외부통제	집행실적 국회보고	집행실적 국회보고	–	집행실적 국회 보고

Ⅲ. 세부평가서 : 사행산업 집행과정의 문제점

1.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결여

● 수익금의 지원대상이 **법령과 행정규칙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세부지원 사업선정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소지

– 또한, 포괄적인 선정기준은 **목적외 사용에 대한 판단**, 지원사업의 **효과성 · 타당성 평가, 교부 취소 및 환수 등을 곤란**하게 하여 사후 통제가 미흡한 요인으로 작용

〈포괄적인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법령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	경마
법률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그 밖에 문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시행령		문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시행규칙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		
내부지침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수요) 등

● **지원대상 선정근거가 내부지침(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어 입법예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수시로 변경가능**

※ 내부지침상 수익금 지원대상 변경 현황 (체육진흥투표권)

-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예산 조항을 추가 신설('06.11월)
-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 신설('07.5월)
-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08.2월)

● 또한, **경마의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수요)는 세부집행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적립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고 있어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집행될 우려

2.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가. 수익금 지원과정의 접근성 · 공개성 결여

● 사업선정시 **사회적 수요**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을 통한 **외부의견 수렴 장치가 없어** 불요불급한 사업에 수익금이 지원될 소지

– 경륜·경정은 공모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공모지원의 실효성 저하

※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공모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륜·경정의 경우 '09년 공모지원 사업이 전무한 실적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현황〉

구분	5억원 초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체육진흥투표권 (71개 사업)	18개 (25%)	12개 (17%)	21개 (30%)	13개 (18%)	5개 (7%)	2개 (2%)
경륜·경정 (11개 사업)	–	–	–	–	–	–
경마 (68개 사업)	7개 (10%)	7개 (10%)	14개 (21%)	19개 (28%)	6개 (9%)	15개 (22%)

● 수익금 신청절차가 내부지침(경마 제외)으로 되어 있고 수익금 집행 투명성 제고장치가 부족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기관(사업)에 편중 지원되거나 타당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 경륜·경정의 경우 적립금의 지원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등의 외부통제 장치가 없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외부통제가 미흡

나. 외부인사 참여없이 내부절차를 통한 지원대상 결정

● 수익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이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절차를 통해 결정됨으로써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저하될 우려

– 감독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수익금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익금 지원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

– 지원대상 사업선정시 외부인사 참여절차가 없으며,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

※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 외부 민간인사가 수익금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절차를 통해 결정

※ 경마 : 특별적립금심의회에 2인 이내 민간위원 위촉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원 위촉 없이 15인 이내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수익금을 확정하고, 예비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규정

● 지원받은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세부 사업을 집행하는 **수탁기관**(사업주관기관, 주최단체 등 포함)의 경우에도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공정성 및 타당성 제고 노력 부족**

3. 수익금 지원내역 비공개가 목적외 사용 및 방만한 운영 초래

● 수익금 지원사업 선정결과와 **집행내역의 비공개**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전용, 외유성 국외출장, 접대비성 경비 등에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

4. 수익금 집행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 관리 · 감독 부실

● 수익금에 대한 **사후정산, 소관부처의 관리 · 감독이 미흡**하여 수익금이 **낭비**될 우려

– 사업완료 후 일정기한(30일) 내에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지연** 등으로 **허위 · 부당한 집행이 방치**될 소지

– 수익금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 · 감독 미흡, 결산서류에 대한 형식적 확인 · 점검** 등으로 지출 증빙부실, 목적외 사용 등 방지 곤란

● 수익금 집행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당성이 낮은 사업** 또는 수익금 관리가 **부실한 기관이 다시 지원**받는 등 **수익금 집행의 효율성 저하**

※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 : 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 경마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규정이 있으나, 평가결과 반영여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효성 미흡

5. 수익금의 허위 · 부당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가. 수익금 지원제한 규정의 실효성 저하

● **수익금의 지원 제한 사유가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지원제한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수익금 지원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목적외 사용, **허위 · 부당 집행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경우 발생 가능

※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 : 수익금의 지원제한 대상에 허위 ·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

※ 경마 : 지원제한 사업으로 국고 또는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수익금 지원이 제한된 사업에 수익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

● 수익금의 지원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를 폭넓게 규정하여 수익금이 목적외로 방만하게 지원 · 집행될 소지

※ 경륜 · 경정 : 교부 취소 등 지원제한 사업의 경우라도 경우라도 장관의 정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규정(공식사업적립금 지원가능)

나. 허위·부당집행시 환수 및 제재장치 미흡

● 수익금의 허위 · 부당 사용에 대한 **교부 취소 및 환수** 등 사후관리 규정이 법령에 근거 없이 **개별 지원사업의 내부지침으로 규정**

● 허위 · 부당집행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징수절차 등 이행강제 수단이 없어** 수익금 반환을 담보할 통제방안이 미비

● 또한, 수익금을 허위로 교부받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라도 교부 취소 및 환수 외에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어** 수익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곤란**

Ⅳ. 세부평가서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1.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체화

● 수익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익금 대상 사업 중 불공정 · 불투명을 초래할 소지가 큰 포괄적인 지원조항('특별히 필요한 사업',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등)을 삭제

– 법령에 규정된 수익금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객관화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지침 및 고시)에 있는 대상사업 유형 및 지원기준을 구체화

※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 : 내부규정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포괄적인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상의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 경마 : 법령상의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수요,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세분화

구분	지원대상 사업	개선 사항
체육진흥 투표권	•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체육 · 문화예술 분야 인재육성 • 체육 ·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양성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 문화예술 분야 인력양성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삭제 • 구체적 대상사업 열거 등을 통해 선정기준을 구체화
경륜 경정	• 기타 공익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체육 · 문화 · 예술 · 종교 관련 지원 사업 • 소년 · 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 계층 지원사업	• 불확정 개념(공익, 특별한 지원)의 삭제 • 분야별 지원사업을 유형화하고 구체적 대상사업 열거를 통해 선정기준을 구체화
경마	•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 예측할 수 없는 수요(예비비)	• 불확정 개념(시급성과 불가피성,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등)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2. 수익금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수탁사업자가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세부사업 포함)

가. 수익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공모방식 도입

● 2개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단체가 수행가능 한 사업에 대하여 공모(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수익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

– 경륜 · 경정의 경우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모대상 금액기준이 높아 이를 완화할 필요

※ 보조금법(국회 계류중)의 경우 2개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단체가 수행가능 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에 의해 부처별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규정 (보조금법 제16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지원사업 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등도 일간신문 등에 게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7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수익금지원사업 비교〉

구 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행산업 수익금
지원사업 유형 결정	• 사회적 수요 파악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법률)	• 관련 규정 없음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정(법률)	• 교부신청서를 제출(내부지침 및 고시)
선정기준 공고	• 일간신문 또는 관보 게재(시행령)	• 관련 규정 없음
지원대상 결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공개경쟁에 의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법률)	• 내부절차에 의해 결정
사업평가	• 평가 실시 다음연도 지원사업에 반영을 의무로 규정(시행령)	•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 : 규정 없음 • 경마 : 내부지침으로 규정

● **수탁사업자**(주최단체 및 사업주관기관 등 포함)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재수탁사업자 및 지원대상자를 결정**

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 운영

●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익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결정

– 특히, **경마 예비비** 집행시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한 **내부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수익금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의무화

●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에 규정)

※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신설** (시행령에 규정)

※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예시)

• 심의위원 중 지원금 운용기관 및 신청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 지원대상 기관(단체)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수익금 심사대상자가 심의위원과 친인척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그밖에 수익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기관(단체) 등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등을 제외

3. 수익금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화

● 수익금 지원 사업명, 대상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 **세부 사업내용을 공개**

※ 수익금 지원대상 및 집행내역 공개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개관련 절차는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

● 수익금의 집행실적을 **반기 단위로 체육진흥공단 및 마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시행규칙에 규정)

※ 복권사업과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경마 등은 사행산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복권사업은 지원대상 선정시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복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공개

〈복권사업과 수익금사업 비교〉

구분	복 권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경마
수익금 현황	• 복권판매 수입금 • '09년 : 915,294백만원	• 사행산업 수익금 • '09년 수익금: 882,210백만원
수익금 배분	• 공익사업 : 65 % • 기금 등 배분 : 35%	• 체육진흥투표권 : 20% • 경륜·경정 : 2.5% • 경마 : 14%
지원대상 선정	• 복권위원회 심의 •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내부절차(실국장 회의 등)
지출현황 공개	• 공개의무화(법률) • **반기별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운용 실태 공개	미공개
교부취소 및 환수	• 보조금 관련 법률 준용	행정규칙

4. 수익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평가시스템 구축

가. 수익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규정 강화

● 매년 투표권 발행액의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수익금 지출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익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익금 정산시 이를 활용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에 규정)

※ 현재 보조금 등 국가지원 사업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카드(유가보조금카드, 복지전용카드 등)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

● 수익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의 정산 보고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정산관련 규정을 법령에 신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

● 수익금 집행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집행상황 모니터링과 감사 의무화** (시행령에 규정)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경우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중간평가, 목적 외 사용 시 잔여보조금 감액 등 평가결과 조치 사항을 규정 (행정안전부)

나. 수익금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 효과성 평가

● **수익금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집행과정과 결산에 대한 **타당성 · 효과성 평가**를 통해 다음년도 **지원금 규모 결정에 반영** (시행령에 규정)

–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 · 부당집행, 지출근거 및 증빙 누락, 부실한 정산서류 제출,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조치**

※ 보조금의 경우 목적 외 사용과 방만한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일몰제 도입, 사업시행자의 수행상황 점검과 실효성 평가 등을 법률에서 규정

〈보조금 사업과 사행산업수익금 사업 비교〉

구분	보조금법	사행산업 수익금 관련 법령
목적 외 사용 방지	• 용도외 사용 금지(법률) ※ 위반시 교부취소 및 벌칙을 규정 • 재산처분의 제한, 처분제한 대상보고의무 등을 규정 (법률)	• 용도외 사용 금지(내부지침) ※ 위반시 교부취소만 규정 • 재산처분의 제한(내부지침)
관리 · 감독	• 수행상황 점검 의무화(법률) • 장부, 서류 등 검사(법률)	• 수행상황 점검 규정 없음 • 검사 규정(내부지침)
실효성 평가	**3년 일몰제**(법률)	관련 규정 없음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 교부취소 및 반환(법률) • 벌칙을 규정(법률)	• 교부취소 및 반환(내부지침) • 관련 규정 없음
신고포상금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법률)	관련 규정 없음

다. 수익금에 대한 효율적 통제시스템 구축

● **수익금 집행과정에 대한 역할분담 장치**(정책과 집행기능 분리)를 마련하여 목적외 사용 및 허위 · 부당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

– **중앙부처**의 경우 정책기능을 담당 : 수익금 집행방향,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및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원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사 등을 실시

– 수탁기관의 경우 정책추진 방향에 따른 집행기능을 담당 :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정산과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 효과성 평가 등을 담당

※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사업 집행을 위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여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5.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 · 부당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가. 수익금의 지원제한 사유 구체화

● 수익금 지원제한 사유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 · 부당집행 방지**

– 현재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된 사유 외에 지원금을 **허위 ·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부실** 등을 추가

※ 수익금 지원제한 사유(예시)

·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예산, 기금 등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운영비성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등

– 목적외로 지원될 소지가 큰 수익금의 **지원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를 삭제**

※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장관이 정책적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

나. 수익금 교부취소 · 환수 및 제재규정 신설

●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에서 목적외 사용,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수익금의 교부를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법률에 규정)

※ 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이 법령의 위임없이 중복수혜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지침을 세워놓고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를 제외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결정 ('10.4월,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례)

● **교부취소된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를 마련** (법률에 규정)

● 수익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 정부지원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허위의 신청 및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

붙임 **사행산업 수익금별 개선의견(예시)**

1.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법령

가. 수익금 지원 절차(시행령) : 공모방식 도입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 (수익금 지원사업의 선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익금의 지원대상내에서 수익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지원신청 제출기한 0월 전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00조(수익금 지원신청)** 수익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00호 서식의 수익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00월 0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 00호 서식) 2. 지원금 산출내역서(별지 제00호 서식)

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수익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수익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익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의결 한다. 1. 수익금사용계획(변경)과 수익금 사용의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원된 수익금의 교부결정 취소, 지원의 제한 및 수익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3. 수익금 사용내역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척 · 기피 · 회피 등(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수익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익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00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체육 · 문화 예술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년 이상 체육 · 문화예술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년 이상 체육 ·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신 설〉	**제10조 (위원의 제척 · 기피 등)** ① 수익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수익금 지원대상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수익금 지원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수익금 지원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수익금 지원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익금 지원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라. 수익금 관련 정보공개(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수익금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익금 지원사업명, 대상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서 다시 지원하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수익금을 재지원 받은 기관 포함)등은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 6월마다 당해 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등 운용실태를 매 6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익금의 운용실태의 공개방법·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마. 수익금 지원사업의 정산(시행규칙)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지원사업의 정산)** ①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수익금을 재지원 받은 기관 포함)은 사업을 종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0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별지 제00호 서식)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 된 정산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원금의 잔액이 있거나 정산보고서와 실제 집행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지원금의 잔액과 이자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바. 수익금 관련 정기적 모니터링(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지원사업의 수행상황점검)** ①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원사업 수행상황 파악과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수익금 관련 타당성 평가 등(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수익금 사용실태의 확인 · 검사 및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사업 추진 및 지원금(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평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00조(수익금 지원제한 및 감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조치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 시설, 장부 등을 검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익금 운용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효율적 통제시스템 구축(시행규칙)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금사업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00조(수익금 지원사업의 선정)에 따른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00조(지원사업의 정산)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00조(수익금 사용실태의 확인 · 검사 및 평가)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익금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수익금 지원제한사유 구체화(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수익금 지원제한 및 감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고 또는 공공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2. 법 제0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수익금의 교부 취소를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금 지원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종료 후 제출한 정산서가 미흡한 경우 2.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이 낮은 낮은 경우

차. 수익금의 교부취소 등(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수익금의 교부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수익금을 지원받은 때 2. 수익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4. 지원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익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 및 이자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카. 벌칙규정(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13조 (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금을 교부받은 자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수익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륜 · 경정 관련 법령

가. 적립금 지원 절차(시행령) : 공모방식 도입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적립금 지원사업의 선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적립금 지원대상내에서 적립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지원신청 제출기한 0월 전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00조(적립금 지원신청)** 적립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00호 서식의 적립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00월 0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 00호 서식) 2. 지원금 산출내역서(별지 제00호 서식)

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적립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적립금의 배분 ·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적립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적립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 · 의결 한다. 1. 적립금사용계획(변경)과 적립금 사용의 지원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원 된 적립금의 교부결정 취소, 지원의 제한 및 적립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3. 적립금 사용내역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척 · 기피 · 회피 등(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적립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적립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00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체육 · 문화 · 예술 · 종교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년 이상 체육 · 문화 · 예술 · 종교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년 이상 체육 · 문화 · 예술 · 종교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신 설〉	**제10조 (위원의 제척 · 기피 등)** ① 적립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적립금 지원대상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적립금 지원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적립금 지원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 지원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적립금 지원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라. 적립금관련 정보공개(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적립금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적립금 지원사업명, 대상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서 다시 지원하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적립금을 재지원 받은 기관 포함)등은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 6월마다 당해 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0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등 운용실태를 매 6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적립금의 운용실태의 공개방법·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마. 적립금 지원사업의 정산(시행규칙)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지원사업의 정산)** ① 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적립금을 재지원 받은 기관 포함)은 사업을 종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0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별지 제00호 서식)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 된 정산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의 정산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원금의 잔액이 있거나 정산보고서와 실제 집행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지원금의 잔액과 이자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바. 적립금 관련 정기적 모니터링(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지원사업의 수행상황점검) ①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원사업 수행상황 파악과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적립금 관련 타당성 평가(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 · 검사 및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사업 추진 및 지원금(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평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00조(적립금 지원제한 및 감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조치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 시설, 장부 등을 검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적립금 운용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효율적 통제시스템 구축(시행규칙)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사업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00조(적립금 지원사업의 선정)에 따른 적립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00조(지원사업의 정산)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00조(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검사 및 평가)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적립금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적립금 지원제한사유 구체화(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적립금의 지원 제한 및 감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동일사업을 2회이상 반복하여 지원 요청하는 사업 2. 국고 또는 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3. 제0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적립금의 교부취소를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 단체의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단체운영비적 성격의 비용 7. 적립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지원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종료 후 제출한 정산서가 미흡한 경우 2.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이 낮은 낮은 경우

차. 적립금의 교부취소 등(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적립금의 교부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립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지원받은 때 2.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4. 제00조의0 적립금 지원 홍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지원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적립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 및 이자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카. 벌칙규정(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13조 (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교부받은 자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적립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경마 관련 법령

가. 특별적립금 지원 절차(시행령) : 공모방식 도입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 (특별적립금의 지원대상 선정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적립금 지원대상내에서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 지원신청 제출기한 0월 전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00조(특별적립금 지원신청)** 특별적립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00호 서식의 특별적립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00월 0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 00호 서식) 2. 지원금 산출내역서(별지 제00호 서식)

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적립금의 배분 ·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적립금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 · 의결 한다. 1. 특별적립금사용계획(변경)과 특별적립금 사용의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소, 지원의 제한 및 특별적립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3.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특별적립금 사용내역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척 · 기피 · 회피 등(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00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농 · 어촌 및 축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년 이상 농 · 어촌 및 축산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년 이상 농 · 어촌 및 축산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신 설〉	**제10조 (위원의 제척 · 기피 등)** ①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특별적립금 지원대상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특별적립금 지원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특별적립금 지원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적립금 지원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적립금 지원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라. 특별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특별적립금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적립금 지원사업명, 대상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서 다시 지원하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특별적립금을 재지원 받은 기관 포함)의 장등은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 6월마다 당해 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0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 운용실태를 매 6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적립금의 운용실태의 공개방법 · 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마.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의 정산(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지원사업의 정산) ①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특별적립금을 재지원 받은 기관 포함)은 사업을 종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0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별지 제00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출 된 정산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의 정산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원금의 잔액이 있거나 정산보고서와 실제 집행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지원금의 잔액과 이자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바. 특별적립금 관련 정기적 모니터링(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지원사업의 수행상황점검) ①특별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원사업 수행상황 파악과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특별적립금 관련 타당성 평가(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특별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 · 검사 및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사업 추진 및 지원금(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평가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00조(지원의 제한 및 감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조치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 현장 · 시설, 장부 등을 검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적립금 운용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효율적 통제시스템 구축(시행령)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적립금사업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00조(특별적립금 지원사업의 선정)에 따른 특별적립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00조(지원사업의 정산)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00조(특별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검사 및 평가)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적립금사업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특별적립금 지원제한 사유 구체화(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지원의 제한 및 감액)**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적립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고 또는 공공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2. 제0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지원금의 교부 취소를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6. 민간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성 경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적립금 지원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종료 후 제출한 정산서가 미흡한 경우 2.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이 낮은 경우

차. 특별적립금 교부결정 취소 등(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특별적립금의 교부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적립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2. 지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지원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 4.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00조의 지원 홍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 및 이자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적립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카. 벌칙규정(법률)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13조 (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적립금을 교부받은 자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특별적립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절 교육분야 선심성 예산 집행 차단

Ⅰ. 추진배경

■ 공교육 내실화 지원, 교육복지 강화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가

※ 지방교육재정 예산(본예산 기준) : ('07) 33조 6,246억원 → ('08) 37조 8,524억원 → ('09) 40조 31억원 → ('10) 41조 954억원

■ 자치단체 교육예산 중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 지원 대상 · 기준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은 운용과정에서의 투명성 ·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예산을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요불급한 용도로 집행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 예산 지원이 교육감 방문학교에 선심성으로 지원되거나, 특정학교에 편중지원되는 등 **자의적인 지원대상자** 선정
-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연말에 나눠 먹기식으로 일괄배분하거나, 의회에서 삭감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 집행결과에 대한 관리 · 감독 부실로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시비 등 **부패 · 비리**가 발생

■ 따라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 배분 · 집행 및 운용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

Ⅱ. 특별교육재정수요 관련 예산 현황

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3년에 도입

– 예산규모 : '04년까지 교과부에서 편성한도액을 제시하였으나, '05년 이후 지방분권화에 따라 시 · 도 교육청에서 자율 결정

※ 편성한도 비율 변천 현황 : ('93~'95) 교육청 총예산의 1% → ('96~'99) 0.3% → ('00) 0.2% → ('01~'02) 0.1% → ('03~'04) 0.3% → ('05년 이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10년도 16개 시 · 도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은 **94,549백만원**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체예산의 0.3% 이내로 계상**

※ 최근 3년간 특별교육재정지원금 추이 : ('08) 108,639백만원 → ('09) 106,891백만원 → ('10) 94,549백만원

● **교부방법** : 교육청이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

※ 일부 교육청은 별도 심의회를 구성 · 운영

2. 재량사업비(현안사업비, 교단환경개선사업비 등)

● 일부 시 · 도 교육청은 현안사업, 교단환경개선 등의 명목으로 구체적 사업내용과 지원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 운영**

※ '10년도 재량사업비는 6개 교육청에서 총 40,057백만원을 편성

Ⅲ. 부패영향평가서

1. 평가대상 조문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분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고, 세부사업은 시·도교육감이 정책·단위사업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제4조제1항 관련)〉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설정
[050]교육				
	[054]교육일반			
		[01]교육행정일반		
			[01] ~ [19] (생략)	
			[20]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04]예비비 및 기타		
			[01]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별표 3]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제2항 관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정
200 물건비				
	280경상교육지원사업비			
		280-01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400 자산취득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70-01 투자 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자본형성적 사업지원비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620-06목에 계상)
600 전출금 등				
	620 학교회계전출금			
		620-06 학교 특별교육지원비	학교특별교육 지원비	• 공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 교육비지원	•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문제점

가. 법률상 예산원칙에 반하는 재정통제의 사각지대 발생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은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법령에 근거없이 훈령에서 예비비와 별도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제도를 임의로 운용**

–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위해 **예비비, 특별교부금**(지역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제도가 있음에도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

※ 2008년도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중 예비비는 대부분 불용(0.3%만 집행)되고, 실제 재해복구비(특별교부금)는 4.6%만 집행되고 있으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관련 예산은 대부분 집행('10.10월, 권익위)

〈특별교육재정수요 유사 항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목적 및 근거	예산(A)	집행액(B)	집행율 (B/A)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지방재정법 제43조)	8,273	26	0.3%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954	44	4.6%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금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대비(예산편성지침)	1,087	1,008	92.7%

–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소송비용 등을 실제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을 통해 집행

나. 예산 편성 · 집행 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결여

● 특별교육재정수요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세부기준이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특별하지 않은 일반사업에도 지원

– 예산은 기능·성질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총액편성**

– 예비비는 세부 집행결과에 대한 의회통제(사후승인)를 받는 반면에,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결산**

※ 16개 시 · 도 교육청 모두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교육청 예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경비를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운용('0. 9월, 권익위)

〈2010년도 시 · 도 교육청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교육청	편성액	편성율	교육청	편성액	편성율
서울	14,600	0.23	강원	2,580	0.15
부산	7,000	0.26	충북	4,000	0.26
대구	2,500	0.13	충남	5,200	0.25
인천	6,500	0.29	전북	6,265	0.29
대전	3,402	0.26	전남	7,000	0.29
광주	3,900	0.29	경북	7,500	0.28
울산	2,500	0.25	경남	7,000	0.24
경기	12,802	0.15	제주	1,800	0.29
			합계	94,549	0.23

● 세부사업에 대한 의회 심의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나 부족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의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추가로 확대하는 사례 발생

>>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권익위)

- ○○교육청은 **해외체험연수** 비용으로 추경에서 8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심의로 30백만원이 삭감되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10,000천원을 지원
- ○○교육청은 ○○교육종단연구 협력학교 289개교에 각 1,000천원씩 총 289,000천원을 추경예산 편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원
- ○○교육청은 전국과학대회 **우수실적 지도교사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추경예산으로 30,000천원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24,000천원을 편성

– 특히, **예측가능한 대규모 사업**도 예산집행의 필요성 ·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의 심의없이 임의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 빈발

● 일부 시·도 교육청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유사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준이 없는 포괄적인 예산**을 교단환경개선사업 등의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편성·운영

다. 지원대상 선정 · 배정과정의 공정성 · 타당성 미흡

● 지원대상 선정이 업무담당자 또는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심의회에서 결정됨으로써 **연고 · 청탁 등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될 소지**

– **교육감, 교육위원** 등 유력인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등 선심성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또한, **특정학교에 편중 지원**되는 등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 ○○교육청 산하 84개 중학교 가운데 30개교(35.7%)만이 '09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14개교는 '0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지원(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시 · 도교육청은 **상 · 하반기 2회로 나눠 일괄배정**하거나 **연말에 집중배정**하여 **불요불급한 용도에 나눠먹기식 예산배분**

※ ○○교교육청은 관내 서부교육청에 411백만원 등 5개 지역교육청에 총 20억원(70억원 중 28.6%)을 일괄하여 총액으로 미리 배정

※ ○○교교육청은 '08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의 44.9%를 12월에 집중배정하고, ○○교육청은 특별한 교육현안수요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한차례 교육지원청별로 일괄 신청을 받아 예산을 배정

● 기관 시설비 등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특별한 재정수요도 아닌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하는 등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

※ ○○교육청은 변호사(48백만원) 및 지방계약직 채용(40백만원)을, ○○교육청은 급식종사자 휴업수당(38백만원)을 사용

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초래

- 일부 예산은 외유성 국외출장, 직원복지비로 사용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도덕적 해이 현상 심각**
- 업무추진비, 격려 · 포상금, 교장실 비품구입 등 **시급하지 않은 소모성 · 선심성 용도로 사용**

>>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집행 사례(권익위)

- ○○교육청은 학부모대상 노래교실에 5,000천원 지원
-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골프연습장 개 · 보수에 40,000천원 지원
- ○○교육청은 전국소년체육대회 금, 은 획득이 예상되는 학교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200천원씩 총 5,000천원을 지원

-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지원 대상은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임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사설학원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거나 **퇴직교원단체** 운영비로도 지원
  - ※ ○○교육청은 퇴직교원단체인 금빛봉사단 운영비로 1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청은 퇴직교원단체인 삼락회 회지 제작비로 5백만원을 지원
  - ※ ○○교육청은 학원강사 연수비로 100백만원을 지원, 그 외 ○○교육청은 15백만원, ○○교육청은 30백만원 등 학원단체에 지원
- **교육과는 무관한 행사**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언론단체 등의 행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재정낭비 초래
- 매년 반복되는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계속비 성격으로 지출**하는 등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공

마.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사후관리 및 관리 · 감독체계 부실

- 지원된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

>> 사후관리 부실 사례(권익위)

- △△중학교(○○교육청)는 e-러닝실 비품확충 명목으로 25,000천원을 지원받았으나 일부는 관리실 책상, 의자, 문서함 구입에 사용
- △△여고(○○교육청)는 독서실 비품 구입 명목으로 35,000천원을 지원받으면서 그 중 일부를 중역의자 구입에 사용

● 특히, 교부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 시비 등 관리 · 감독 부실에 따른 비리도 발생**

※ 감사원은 ○○, ◎◎교육청이 공기살균기 설치사업 납품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있는 전 · 현직 교장 등 8명에 대하여 수사요청(감사원, '10.11)

※ ◎◎교육청은 '08~'09년에 걸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18건에 760백만원의 공기살균기를 구입(권익위 실태조사)

3. 개선의견

가. 법령상 근거없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대부분이 **예산 편성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타 예산과목에 반영 가능한 예산으로 제도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과목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삭제**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당초 편성목적인 **응급보전, 긴급한 재해비용 등은 예비비 또는 특별교부금(현안수요)으로 집행**

※ 유사한 성격의 예산인 예비비는 대부분이 불용('08년 99.7%)되고 있어 재해 등 긴급한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가능('10.11월 권익위에서 권고한 "교육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별교부금 부패영향평가" 참조)

나. 세부사업 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는 재량사업비 등 폐지

● 법령의 근거 없이 교단환경개선비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 기준이 없는** 포괄적 ·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시 · 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반영)

※ 행정안전부는 1996년 유사한 성격의 재량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를 예산 관련 지침에서 삭제하여 **총액예산편성 제도를 폐지**

다. 예산 편성 · 집행과정에 대한 교과부의 관리 · 감독 강화

- 교과부에서 시 · 도교육청 평가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등과 유사한 포괄적인 예산 편성여부를 점검 · 반영
- 시·도 교육청의 위반사례 발생시 불이익 부여(보통 · 특별교부금 지원을 차등지원 등)하여 예산낭비를 방지

Ⅳ. 조치사항

■ 조치사항

구분	지원대상 사업	개선 사항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제도 폐지	• 훈령 별표 2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삭제 • 훈령 별표 3의 **경상교육지원비, 투자사업지원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비목**을 삭제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총액으로 편성하는 재량사업비 등 폐지	• 교단환경개선비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이 없는 **포괄적 · 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	•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예산편성 ·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 **시 · 도교육청 평가**시 총액예산 편성 등 **포괄적인 예산 편성 · 집행여부를 점검 · 반영** • **위반사례 발생시 불이익**을 부여(보통 · 특별교부금 차등지원 등)하여 예산낭비를 방지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반영

제5절 특별교부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Ⅰ. 추진배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예산의 증가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07) 27조 1,665억원 → ('08) 31조 8,087억원 → ('09) 31조 4,752억원 → ('10) 33조 4,617억원

※ '1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32.3조원('10년도 정부예산 292.8조원의 11.4%)이고, 특별교부금은 1.1조원 규모(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9천5백억원) 보다 많은 수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예산심의 · 결산심사 등 재정통제 장치 미비 및 사용내역의 불투명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

- 시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시 · 도별 나눠먹기로 배분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 소진 관행 일상화
- 일반회계 예산사업, 계속사업, 시 · 도 사업, 예산 탈락사업 등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여 예산심의 절차 회피수단으로 이용
- 예산이 성립하기도 전에 미리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변칙적 회계처리 난맥상 초래
- 예산의 배분 · 집행과정에서도 일부 특목고 등 사립학교 편중지원, 우선순위 배정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 각종 부패 · 비리가 발생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상에 내재된 교육재정의 배분 및 운용 · 집행상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검토하여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교육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Ⅱ. 특별교부금 제도 현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 보통교부금 : 학교, 학생수, 교직원 수 등을 기초로 시·도 교육청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산식에 의해 총액으로 교부

– 재원규모 :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 × 96% + 교육세 전액

● 특별교부금 : 교육관련 국가시책수요, 지역교육 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기 위해 도입

– 재원규모 :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 × 4%

■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에 상당하는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08년 이후 1조원 초과)

※ 내국세의 13%('00.1.) → 19.4%('04.12.) → 20%('06.12.) → 20.27%('10.2)

특별교부금 세부수요별 비교

구분	시책사업 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재원규모	특별교부금의 60%	특별교부금의 30%	특별교부금의 10%
교부요건	• 전국에 걸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	•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현안수요	•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교부대상	• 국가시책사업	• 학교교육시설 • 교육행정기관의 이전, 신축, 보수 등 • 전국단위 대회 • 기타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잔액에 대하여는 시 · 도 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가능
신청주체	• 교과부 실 · 국장	• 시 · 도교육감	• 시 · 도교육감
교부시기	• 매년 1월 31일 (필요시 수시 조정 가능)	• 당해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교부절차	• 특별교부금시책사업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과부장관이 결정 ※시책사업심의회 구성 교과부 : 10명(실 · 국장등) 외부 : 6명(시 · 도포함) * 신청이 없어도 교부가능	• 시 · 도 신청에 의해 교과부가 심사하여 교부 * 조건부 부과가 가능 * 신청이 없어도 교부가능	• 소방방재청 조사 및 시 · 도 신청에 의해 교과부가 심사하여 교부 * 조건부 부과가 가능
사후관리	• 교과부에서 매년 6월 30일 까지 추진내역 제출받아 확인 · 점검 • 목적외 사용시 교과부의 사업변경 승인 후 사용 •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연도내 집행 • 사업별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교과부 승인후 사용		

특별교부금과 일반예산 등과의 비교

일반회계 예산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 기재부의 예산편성 심의 • 국회의 예산 · 결산심사	• 교과부장관이 교부결정 •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 절차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편성 • 집행내역 등 국회 상임위 보고

Ⅲ. 세부평가서

1. 국가시책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가. 평가대상 조문 : 재원의 규모 및 국가시책사업수요 교부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② (생략)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 단서규정 생략 〉

1. 「지방재정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 3. (생략)

나. 현 황

●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구성현황

–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20.27%의 96%(19.46%)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20.27%의 4%(0.81%)로 구성

※ '1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조 3,247억 원**으로 보통교부금이 31조 1,877억 원, 특별교부금은 1조 1,370억 원 규모

● 국가시책사업 수요의 교부기준 및 절차

– 교과부장관은 전국에 걸친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60%를 배정

– 시책사업수요는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 (특별교부금 교부 · 운용기준 '09.12.)

※ 시책사업심의회의 구성('10.2. 교과부)

• **교과부 10명**(제1차관(위원장), 5실장, 교육복지국장, 평생직업교육국장, 학교지원국장 및 감사관) 및 **외부위원 6명** 이상(교육전문가, 시 · 도 교육청 관계관 등)

–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 중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하고, 교과부장관이 결정

다. 문제점

① 재원의 과다로 인한 재정의 왜곡배분과 예산낭비 초래

- 특별한 재정수요에 교부하기 보다는 보통교부금의 교부비율과 유사하게 배분하는 **나눠 먹기식** 관행으로 재정낭비 요인
- 예산이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하여 진다는 이유로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예산 소진**에 주력
  - 실제 사용내역도 시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에 따른 **법령상 요건에 적합한 사업은 극히 미미**하고 계속사업이나 수요예측이 충분한 학교시설비 또는 시·도 평가 인센티브 재원 등에 소진
- 국회 심의로 확정된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임의로 사업규모를 변경 · 확대하여 **예산의 이중지원** 등 방만한 재정운영

② 시책사업 예산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일반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나, 시책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증장치가 전무**한 실정
- 기재부, 국회 등의 심의를 받지 않아 손쉬운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책사업을 **교과부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의 중복투자** 초래

③ 시책사업 선정과정의 타당성 · 공정성 확보장치가 미흡

- 시책사업심의회 구성이 **내부직원 위주**이고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어 불공정한 사업선정 우려

  ※ **교과부 10명**(실 · 국장등), **외부** 시 · 도 관계자 포함 **6명** 이상(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운영 개선 방안, '10.2.)

  - 시책사업심의회 운영도 **대규모 사업**은 오히려 **생략**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검증절차를 부실하게 운영
- 교과부에서 사업추진 **단위학교** 까지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 도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연고 등의 개입에 의한 부당한 선정 소지

④ 불투명하고 방만한 예산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 사례도 빈발

- 특별교부금 사업폐지 후에도 시 · 도 평가 등을 통해 시 · 도 계속사업으로 유지시키는 등 **시 · 도 일선 현장과는 괴리**되는 사업을 지속

●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회의,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나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

라. 개선방안

● 특별교부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제 재정수요에 상응**하도록 특별교부금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축소**

– 일정기간(예 : 3년) 이상의 **장기 계속사업은 타당성 · 효과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기간을 설정

– 보통교부금과 같이 일정기준 충족요건으로 정해지는 사업이나 시 · **도의 보통교부금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시책사업에서 제외

– 각종 연구 · 시범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등 **재정통제** 받을 필요가 있는 사업도 제외

● **교과부와 시 · 도간**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 마련**

– 교과부는 전체적인 집행기준 등 통일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시 · 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 선정** 등 세부사업 추진

– 국가시책 사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사후 확인과 점검**을 실시

●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교부금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통한 시책사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심의위원의 **자격기준, 임기 및 연임규정** 등 구체화

– 심의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책사업 추진과정의 음성적인 로비행위를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행	개선의견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② (생략)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지방재정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② (생략) ③ ———————————————— ———————————————— ————————100분의 (98)에—— ———————————————— ———————————————— 100분의 (2)에 ————————.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요건 · 기준및 절차 등) ① (생략) 1. ———————————————— ———————————————— ———————————————— ————————————————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70)에 .....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현행	개선의견
〈 신 설 〉	제3조의2(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의 구성 · 운영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수요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교부금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관계 공무원 (6인) 이내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지방교육재정 관련전문가 (4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교육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3인)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운영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미리 7일 이전에 송부하여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그 회의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교부대상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교부금 지원대상 기관의 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교부금 지원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교부금 지원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부금 지원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심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신 설 〉	**제3조의3(특별교부금 사업의 효율적 운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원활한 운용·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내역 및 운용·집행내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지역현안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명확화

가. 평가대상 조문 : 재원의 규모 및 국가시책사업수요 교부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생략)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 황

- 교과부장관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재원의 30%를 배정·교부
- 지역현안수요의 경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 장의 신청에 의하여 장관이 심사하여 교부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장관은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고,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대상(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09.12)
  - 학교 교육시설〔강당 및 체육관(다목적교실), 급식실, 도서관(정보관)〕, 기숙사, 특별교실 등의 신축 및 증축
  - 교실, 화장실, 건물, 외벽, 운동장, 냉난방 등의 개선·보수
  -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등(교육청 건물, 연수원, 수련원, 학생회관, 평생학습관,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이전, 신축, 보수 등)

– 전국단위 대회(소년체전, 전국체전,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 기타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

다. 문제점

① 교부기준이 불명확하여 재정의 왜곡배분과 예산낭비를 초래

- 교부 대상사업이 시설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교육현안 수요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특별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부분 교부되는 실정
- 교부대상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사전검토가 없고,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사례도 빈발

② 사업우선순위 선정기준 불명확 등 외부통제장치 부재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 시 · 도에서 신청한 개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교과부**에서 일일이 심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탈락 사유는 비공개**하는 경우도 발생
- 사업 지원대상을 **외부청탁에 따라 우선순위 심사 없이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는 사례도 빈발
- **교부내역이 비공개**되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지역현안수요 예산은 **특정인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거나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곳에 교부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운용으로 재원배분의 투명성 저해

③ 특정학교에 지나치게 편중 지원되는 등 재원배분의 형평성 결여

- 현안사업 수요가 사립학교에 과도하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가 빈발
- 등록금 · 입학금 및 학생선발 자율화로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립초교, 특목고, 특성화고** 등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않고 있음에도 **편중지원**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발생

④ 교부금 전반에 대한 관리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 강당, 체육관 등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응투자 조건**으로 교부토록 정해 놓고도 이를 **스스로 위반**하여 교부
-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개축대상임에도 수년간 **방치**하거나, 3년 이내 2회 이상 교부금지 대상임에도 교부하는 사례 발생

- 사립학교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시 지원금액의 15%를 감액하는 규정(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부실
- **교부기준에는 없는** 교직원 사택 등 복리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하거나 아파트를 교직원 공동주택 용도로 매입한 후 간부급 공무원에게 제공

라. 개선방안

- 현안수요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교부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하여 청탁과 로비를 사전에 차단
- 교과부의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외부청탁 · 로비에 의한 대상학교 선정 등의 소지가 있는 **교과부에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
  -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탈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부
  -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6개 시 · 도에 대하여는 **사후 확인 ·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
- 시 · 도별 현안사업수요 **사업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시 · 도별 교육감은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연초(1월말)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과반수 이상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사업 **우선순위 선정심의회** 구성 · 운영하여 세부사업 선정
-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 사립학교 대응투자 조건 등 **조건부 교부시 조건이행 여부 확인 후** 자금 교부 등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 계약대금 기성금 지급원칙, **사후정산 절차 의무화** 등 강구
- **시 · 도별, 학교별 신청내역 및 교부내역 공개**
  - **시 · 도 교육감**은 다음연도 6월 말 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행	개선의견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 후단 삭제 〉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현행	개선의견
〈 신 설 〉	**제3조의4(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수요의 교부요건·기준 및 절차 등)** ① 시·도 교육감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회(이하 "지역현안사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 1. 시·도교육청관계 공무원 (5인) 이내 2. 지역교육청 (2인) 이내 3. 시·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전문가 (2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교육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2인) ② 지역현안사업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시·도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운영한다. ③ 지역현안사업심의회 위원에 대한 임기 등과 회의운영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수요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신청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미

	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예기치 못한 긴급한 재해가 발생한 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당해 건축물의 경과연수 및 개 · 보수 · 수선 내역 등 3. 최근 5년간 당해 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 횟수 및 금액 4. 국 ·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비율 5. 당해 시 · 도의 역점 추진사업 6. 부적절한 예산집행 또는 불법 · 부당한 집행 사례 발생 횟수 및 금액정도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 · 도 교육감이 신청한 우선순위 사업이 탈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비에 해당하는 사업이 당해 시 · 도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재해발생에 따른 교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시 · 도 예산성립일 이후 발생한 시급한 수요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업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미리 정하여 공고한 사업 ⑥ 시 · 도 교육감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대응투자 등 조건이 붙여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응투자액의 납입 등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소요 자금을 해당 학교 등 수령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 · 도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학교별 신청내역 및 교부내역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재해대책수요의 효용성 제고

가. 평가대상 조문 : 재해대책수요의 교부기준 및 절차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현 황

- 교과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10%를 배정 · 교부
  -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시 · 도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사용
- 지원금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관이 지원 결정 (특별교부금 교부 · 운용기준, '09.12)

다. 문제점

①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 예기치 않은 **재해발생 목적에 맞는 실제 수요는 극히 미미**하여 재해대책 수요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
  - 재해복구비 사용액은 극히 일부('03~'07년간 평균 8.6%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시 · 도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
  - 심지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해예방 명목**으로 학교시설비 등에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

② 유사 중복예산 편성 · 운용에 따른 재정의 낭비요소 제공

- 재해대책 수요와 **유사한 예산(예비비, 특별교육재정수요)이 중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

③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사용

- 재해수요 집행잔액을 시·도별 평가를 통해 배분하는 인센티브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원인을 제공
  - 인센티브 예산은 연도말 집중집행을 초래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불가능 하게 하여 특별교부금의 변칙적인 운용을 초래
  - 인센티브 예산은 대부분 기존사업의 보충재원으로 사용되거나, 무분별한 집행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 초래

라. 개선방안

- 실제 재해복구비는 극히 미미하고, 유사목적의 예비비는 대부분 불용(99.7%)되는 등 제도존치의 실익이 없는 재해대책 수요는 폐지
- 재해수요 잔액재원에 대한 시 · 도 평가 근거규정 삭제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행	개선의견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 삭 제 〉

4. 특별교부금 관리 · 운영체계의 투명성 제고

가. 평가대상 조문 : 특별교부금 예산의 편성 · 운용 및 교부시기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 배분내역 · 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 · 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현 황

- 교과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 배분내역 · 배분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규정

  – 특별교부금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산운용 절차 규정이 없음

- 시책수요는 매년 1월 31일까지, 현안수요는 현안수요가 발생한 때, 재해수요는 재해가 발생한 때 교부토록 그 시기를 규정

  ※ 특별교부금 교부 · 운용기준('09.12)으로 "시 · 도교육감은 특별교부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한 후,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 교부금은 시 ·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 의결 받도록 규정

  – 예외적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되고 그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예산을 성립 전에 사용하더라도 **동일 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

● 특별교부금 교부 · 운용기준('09.12)에서 정한 사후관리 규정

– 시 · 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교과부에 추진내역 제출

–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연도내 집행

– 사업별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교과부 승인후 사용

다. 문제점

① 불투명한 교부시기 운용으로 인한 시 · 도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특별교부금을 **회계연도 말에 집중 교부**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시 · 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

② 변칙적 예산회계 처리로 인한 의회의 예산안 심의 등 재정통제장치 회피

● 시 · 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주기를 무시하고 **일방적 · 편의적으로 교부**함으로써 **변칙적인 예산처리를 조장**

– 시 · 도 교육청 예산의 변경을 가져오는 특별교부금을 연중 수십여 차례 나누어 교부함으로써 **잦은 추경편성** 초래

– 특별교부금은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다는 이유로 **의회의 심의없이 예산성립 이전에 미리 사용**하는 예산처리 관행이 일반화

– 회계연도 말 추경편성 이후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회피

※ 추경편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업무처리 방법을 제시('09.8. '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③ 재정투입 대비 효과분석 · 검증체계 미흡 등 재정통제장치 미흡

● 특별교부금 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 · 폐지 보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투입 대비 효과분석 · 검증이 미흡**

– 교과부 사업 주관과에서 **자체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시책사업의 효과성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

● 보통교부금의 배분내역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은 이러한 **절차적 통제장치가 부재**

〈일반예산 등과 특별교부금과의 비교〉

구분	일반예산	보통교부금	예비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행정부	• 기재부 예산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감사원 결산검사	–	• 기재부 승인 • 감사원 보고	–	–
국회	• 예산안 심사 • 결산심사 · 승인	• 상임위 보고	• 결산 심사 · 승인	• 상임위 보고	–

●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을 대부분 교과부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

라. 개선방안

● **예산의 성립전 사용 최소화**로 변칙적인 예산회계처리 방지

– 시책사업 수요 교부시기(1월말)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교부를 지양**

– 예산편성매뉴얼에 있는 **지방의회 의결 간주처리 규정 삭제**

● 특별교부금 **재정운영에 평가 · 환류** 체계 마련

– 시책수요, 현안수요 등에 대한 집행과정 모니터링과 결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의한 **타당성 · 효과성** 평가 추진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허위 · 부당집행, 지출근거 및 증빙누락, 부실 정산서류 제출 등의 경우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조치

● 특별교부금 배분기준 · 사용내역 등 **국회보고** 신설

●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 · 운용기준 등 각종 지침 · 훈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일반 국민 또는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령(시행령 또는 부령)으로 상향규정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행	개선의견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 배분내역 · 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부금의 배분기준 · 배분내역 · 배분금액 그 밖에 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현행	개선의견
〈 신 설 〉	**제10조(특별교부금의 재정운용 평가 · 분석업무 위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부금의 운용에 관한 재정분석 · 진단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등 교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현행	개선의견
제5조(특별교부금의교부)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 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내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시·도 교육감이 신청한 때** 3. **〈 삭 제 〉**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대응투자 비용 등 외부로부터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시 예산편성매뉴얼 예산총칙

현행	개선의견
제9조 ① ~ ② (생략)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9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

5. 특별교부금 사용 및 사후관리 부패통제장치 마련

가. 평가대상 조문 : 교부금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 ④ (생략)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 ·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⑥ (생략)

나. 현 황

- 교과부장관은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거나 2년 이상 미 사용시에는 시 ·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명령 또는 다음 교부액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문제점

① 교부금의 예산사용에 대한 사후통제 장치 미흡

- **시급한 수요 발생**을 이유로 교부받고도 **장기간 미집행** 하는 등 '일단 받고 보자' 예산사용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제재수단 미흡**

②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단체 지원 또는 위탁사업 수행

-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위탁수행하면서도 사후정산 절차 불투명하고, 부당사용 등에 대한 **책임확보 장치 미비**

③ 교부금의 불법 ·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처벌 등 책임확보 장치 부재

- **허위 신청자료** 등에 의한 교부임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
- 교부금을 목적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

라. 개선방안

- **2년 이상 사업 미추진** 시는 직접 사업집행 학교장 또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민간단체 등에 교부금 지원·위탁에 대한 중간 및 사후정산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 교부금의 허위 · 목적외 사용시 반환, 강제징수, 처벌규정 신설

예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행	개선의견
〈 신 설 〉	**제2조의2(타법의 준용)** 이 법에서 정한 교부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중 국가 또는 시 · 도가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거나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선정, 집행내역 보고 · 확인, 별도계정 설정, 반환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하여는「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신 설 〉	**제14조(벌칙)** ①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금을 교부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시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현행	개선의견
〈 신 설 〉	**제10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부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교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건이나 용도변경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었으나 실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 가. 교부금의 직접 수령인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인 경우 나. 기초자료 작성 부실 등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조사관 윤 주 현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6월말 지식경제부에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들어왔다.

주요 제정내용은 유통제품의 결함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며, 제품결함에 따른 위해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수거 등을 권고하거나 신문 · 방송 등을 통하여 결함제품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 등 이었다.

당시 도요타 자동차 대량 리콜사태, 납 성분이 함유된 수입산 장난감 유통 등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관리는 제조 ·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여 유통중인 제품의 안전관리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였으나 금번 법령 제정을 통하여 유통제품의 결함여부 평가를 위한 안전성 조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안전성 조사를 수행할 기관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정(안)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이 당해제품의 안전성조사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안전인증기관은 자신이 인증한 제품의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간 안전인증 업무수행이 금지되는데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안전성조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인증한 제품을 사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인증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까지 객관적으로 안정성조사를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 자문과 소관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수행한 기관은 당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없도록 개선권고를 하였고 소관부처는 흔쾌히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법령이 시행되었다.

업무가 끝난 후 소관부처로부터 자신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잘 검토해주어서 무척 고맙다는 감사전화를 받았으며, 공직자로서 국민의 안전 제고에 일조할 수 있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법령을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업무의 중요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좀 더 나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소관부처 담당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제5장 자치법규 평가

제1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진단·평가

제2절 버스운송보조금 관련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 직접평가 사례

제4절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입법례 사례

제1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진단 · 평가

'09년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단체의 부패영향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 방법을 전수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자치단체에 전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10년도는 자치법규상 부패유발요인이 많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버스운송보조금과 관련된 자치법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를 대상으로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여 특별 ·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대전 유성구는 포함) 전국 자치단체에 '10. 12. 31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자치단체가 타 자치단체와 다른 독특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전남 광양시가 '광양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여 3건의 개선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전국에서 드물게 광양시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자치법규로 규정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의 기본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자치단체가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실적을 위원회에 통보하였는데 이중 제 · 개정 자치법규에 대해 16개의 광역자치단체는 56개,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73개, 16개의 교육자치단체는 76개의 개선실적을 달성하였다.

제2절 버스운송보조금 관련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

1.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최근 환승보조금 지원 확대 및 적자노선의 증가, 준공영제의 확대 시행 등으로 버스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버스 요금이 동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물가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05년 대비 '09년 물가상승률은 13%이나 준공영제시행 자치단체 버스 재정지원 상승률은 183%였으며 '09년의 경우 국비(1,900억), 시 · 도비(8,803억), 시 · 군비(4,290억) 등 총 1조 4,998억원이 버스운송 보조금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버스운송보조금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이 미흡하여 도덕적 해이와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즉 운송원가가 높을수록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 운송업체는 경영개선 노력과 관계없이 매년 적자손실분의 일정비율을 지원받음으로써 원가절감 등을 위한 유인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버스 재정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보조금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예산 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2) 추진 경과

먼저 '10. 4월부터 5월까지 19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면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버스운송보조금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5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마친 후, 6월에 국토해양부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에 권고를 하였다.

2. 버스재정지원 개요 및 현황

(1) 우리나라 버스 운영 체계

우리나라 버스운영체계는 크게 재정지원형과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로 나뉘어질 수 있고 완전공영제는 인천 옹진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특별·광역자치단체와 창원시로 통합되기 이전의 마산시가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재정지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재정지원형(민영제)	준공영제	
		수입금관리형	위탁관리형
개념	민영기반에서 부분적으로 **적자노선** 운영에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와 버스운송 사업자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지자체가 특정한 노선에 대한 차량구입 등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운영을 위탁**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오지 · 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지원, 환승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법정 **지원항목별 보조**	**운송원가 – 운송수입금** = 정부 지원액	• 국가 : 버스 구입비 지원 • 지자체 : 운영비 일부 지원
시행기관	준공영제 시행 이외의 자치단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마산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기초자치단체

(2) 전국 버스 운영현황

'09년 현재 전국에 재정지원대상인 826개의 버스운송업체와 44,505대의 영업버스(전세버스, 고속버스 제외)가 운행 중으로 아래 표와 같다.

〈전국버스 운송현황('09, 국토해양부)〉

구 분	업체수	버스대수	종사자수
시외버스	70	7,312	13,858
시내버스	417	33,637	75,398
마을버스	339	3,556	7,453
계	826	44,505	96,159

* 고속버스 : 8개 업체, 운행버스 2,088대, 종사자 4,884명

(3) 재정지원 종류 및 종류별 규모

재정지원의 대상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중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가 약 5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 상	'09 지원액	기준 및 방법	관련 법령
재정지원 보조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509,213	시 · 도의 조례로 규정 ※고속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0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136,037		
	낡은 차량의 대체	8,129		
	환승보조금	187,774		
	유류세 인상액 보조	395,597		
	학생 · 청소년 할인 등 공적부담	25,050		
	각종 시설장비 지원 등	29,525		
	저상버스의 도입	99,653	국비와 지방비 분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천연가스버스 도입	9,000	국비와 지방비 분담	대기환경 보전법 제47조
	천연가스연료비 보조	42,597		
	공영버스 지원	19,205	• 국가 : 버스 구입비 • 지자체 : 운영비 일부 ※운송업자와 위탁협약	오지 · 도서 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해양부)
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개선 및 운행 명령으로 인한 손실분	57,711	손실액(1일)=킬로미터당 운임×운행거리×(평균승차인원-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3조
총 계		1,499,841		

또한 '09년도 재정지원은 국비 1,900억, 시 · 도비 8,803억, 시 · 군비 4,290억원으로 시 · 도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특별 · 광역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시행도시 (도입 시기)	재원출처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서울	분권	217	201	207	137	198
('04.7.)	시비	2,004	1,749	1,429	1,657	2,702
대구	분권	27	46	49	58	53
('06.2.)	시비	100	367	515	686	728
대전	분권	18	31	26	32	32
('05.7.)	시비	71	226	251	310	392
광주	분권	11	25	25	35	36
('06.12.)	시비	50	74	171	232	285
부산	분권	30	73	75	76	77
('07.5.)	시비	211	135	320	686	525
인천	분권	38	41	79	74	76
('09.1.)	시비	198	255	214	150	328

3. 개선 과제

1) 운송원가 산정 기준 명확화

(1) 평가대상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등

> **제00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자동차의 고급화
> 2. ~ 8. (생략)
> 9.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

(2) 현황

수입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자치단체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손실액 보조는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노선별 수입금을 차감한 적자손실액을 보전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준공영제 및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금액 산출방식〉

표준운송원가		운송수입금		재정지원
• 인건비 • 연료비 • 감가상각비 • 차고지비, 정비비, • 타이어비 등 • 보험료 • 적정 이윤	−	• 버스요금(카드, 현금 등) • 이자수입 • 광고수입 • 부대사업수입 • 공적할인보조금 (학생, 노인, 국가유공자) • 환승보조금	=	총금액

* 인건비 : 일반적으로 원가산정시 장애인 · 노인 고용장려금 등은 제외
연료비 : 유가보조금, 천연가스연료보조금 등 차감
감가상각비 : 대폐차보조금, 공영버스 · CNG버스 ·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등 차감

(2)문제점

가. 운송원가 산정기준 미비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대로 운송원가가 산정되거나 운송업체와 용역업체의 유착으로 인해 운송업체에 유리한 원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우선 감가상각비는 버스차량 감가상각 방법 등이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처리되고 있어 원가의 예측가능성이 적었다.

> • 대부분 자치단체가 감가상각비는 차량구입비를 법정 차량연수(9년)로 나눈 값에 의해 산정되나, ○○시와 ○○시의 경우 차량연수 5년으로 산정('10. 6월, 권익위 실태조사)

그리고 운송업체의 회계는 운송원가 산정의 기초 자료이나 업체별로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과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 운송업체 중 유류보조금, 임차료 및 선급임차료에 대한 회계처리, 사업별 구분경리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경우는 전체 업체의 30% 미만인 것으로 분석('08. 11월 경기개발연구원)

나. 수익금 축소 등을 통한 보조금 부당수령 관행화

준공영제 및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모는 운송원가에서 수입금 총액을 뺀 규모로 결정되나,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부보조금을 누락하는 행태가 빈발하였다.

특히 유가보조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대기환경보전법)을 운송원가 중 연료비에서 미차감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노후버스 교체비용에 소요되는 대 · 폐차 보조금, 노후차량 매매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폐차수입금 등이 감가상각비에서 미차감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입금 산정시 현금, 카드 등 운행 수입금 이외에 각종 정부보조금과 영업외 수익 등을 누락시켜 보조금 과다 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등 버스운송 할인보조금('07~'09년 : 34억원)도 수입금 계정에 미산입('10.4월 권익위 실태조사)한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시도 버스운송조합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조합운영비, 부채상환 등에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외부광고매체 사용료는 영업외 수익으로 수입금 계정에 포함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 • ○○도의 '09년도 버스 외부광고매체 사용료는 연간 433백만원으로 영업외 수익에 포함되어야 하나, 미반영 상태('10. 6월 권익위 실태조사)

환승할인보조금 및 학생 등 할인보조금을 수입금 계정에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하지 않아 보조금 규모가 과다 산정된 경우도 있었다.

> • ○○시는 버스업체에 '09년도 환승할인보조금 약 2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동보조금이 수입금 계정에 미반영 되어 해당금액 만큼의 원가를 상승('10. 6월, 권익위 실태조사)

다.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보조금 집행과정의 도덕적 해이 빈발

인건비, 유류비의 원가를 고의로 부풀리거나 운송경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접대비 등을 운송원가에 계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였다.

친인척을 임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개인소유 차량에 유류비를 지급하여 운송원가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었고,

- △△교통은 운수업체의 회장, 사장, 감사, 총무이사, 정비상무 등 5명을 친 · 인척으로 임명하여 290백만원의 임원인건비를 부당지급하고 총무이사라는 직위에 사장 부인을 채용하여 연간 34백만원 추가 지급('07. 11월 ○○시)
- 대표이사가 동일인임에도 2개 회사(△△교통, △△버스)에서 연간 1억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07. 11월 ○○시)
- 여객과 △△교통의 경우 폐차시는 잔량의 경유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폐차 전날 추가로 주유하여 낭비('07. 11월 ○○시)

직접적인 운송경비에 사용되지 않는 접대비, 경조사비, 화환비 등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기타비용(복리후생비 등)에 편법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 접대비는 대부분 경조사비, 화환비 등에 사용되어 버스운송 경비와 실질적으로 무관('10.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의 경우 운송원가에 접대비가 '09년도 137백만원이 포함되었고, 시는 '07~ '09년에 원가에 포함된 288백만원이 운송경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조사비, 화환비 등에 사용('10.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는 '09년도 운송원가 산정시 접대비, 회의비를 운송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하였고 운송원가 제외시 약 200백만원 보조금 규모 축소('10.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는 '08년도 운송원가 산정시 접대비 66백만원 포함시키었으나 '09년도에는 제외하였고 시는 준공영제 시행이후 접대비를 운송원가에 포함('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3)개선방안

운송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산정 기준을 법령 및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다.

- 원가산정의 최소항목 규정 : 인건비, 연료비, 복리후생비 등
- 감가상각비 9년(버스 법정 사용년수) 규정

또한 각 운송회사별로 회계처리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버스운송업 원가산정 세부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였다.

- 인건비, 연료비 등의 항목별 구성원가에 대한 산정기준
- 정부 보조금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차감 의무화
- 버스외부광고매체 사용료를 운송수입금에 포함
- 폐차수입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그리고 운송원가와 관련된 국가보조금의 경우 운송원가 산정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토록 하였고,

※ 운송원가 항목에서 차감해야 할 국가보조금(예시)

- 연료비 :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보조금 등
- 감가상각비 : 대폐차 보조금, 각종 버스구입지원금 등

운송수입금 산정시 영업외 수익(버스외부광고매체 사용료, 국가유공자 · 청소년 할인 보조금, 환승할인 보조금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였다.

또한 운송원가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접대비 등을 보조금 산정과 관련된 운송원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하였다

- 기타관리비 중 접대비 · 회의비 등 버스운송 원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비용 제외
- 기타관리비에 접대비 등이 계상되지 않도록 영수증 등 첨부

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전국광역자치단체)**

현행	개선안
(신설)	제00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감가상각비 산정시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 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연료비 산정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 등 각종 국가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제하여야 한다. ②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운수업체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③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정산 의무화

(1) 현황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준공영제 시행 자치단체는 외부회계법인이 운송업체의 회계서류 등을 감사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제점

외부감사를 하는 경우에도 버스회사가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용역업체와 버스회사간 유착 소지가 많았고

- ○○도, ○○도, ○○도, ○○시, ○○도, ○○군 등은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회계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운송조합에 지원한 후 운송조합과 용역회사가 계약('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는 버스회사가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에 제출 ('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외부 회계감사 없이 운송업체에서 운송원가,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운송원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였다. 또한 버스 재정지원금은 차량운행을 위한 비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임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시 △△교통은 임원의료비, 경조사비 등으로 46건에 2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버스는 2백만원을 사장, 상무이사 등 개인차량의 자동차세, 유류대로 지급('07. 11월 ○○시)

한편 마을버스 등 영세업체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기본 회계원칙이 정립되지 않고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정지원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선방안

먼저 운송업체는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고, 자치단체는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를 산정토록하였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는 운송업체는 제외

또한, 마을버스 등 영세한 일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버스운송업체는 자치단체가 정한 회계기준에 의해 정부보조금 집행내역, 각종 회계서류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토록 하였고, 회계법인과 버스운송업체간의 유착 소지 차단을 위해 매년 자치단체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토록 하였다.

- ○○도, ○○도, ○○도, ○○시, ○○도, ○○군 등은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회계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운송조합에 지원한 후 운송조합과 용역회사가 계약('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는 버스회사가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에 제출('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전국광역자치단체)

현행	개선안
(신설)	**제00조(외부회계감사)**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문제가 많다고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하고 연속해서 동일회계법인이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마을버스중 영세성으로 인력부족 및 기술 부족으로 회계감사를 사실상 받기가 곤란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원가산정에서 제외한다.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에 명시

3) 원가 산정 및 정산 내역 공개

(1) 문제점

운송버스 재정지원은 종류가 많고 규모가 방대(약 1조 5천억원)하여 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운송원가 부풀리기, 수입금 산정시 정부보조금 누락,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지원 등 정부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요인을 자치단체 스스로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버스 재정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통제를 위해 주민, 시민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료공개를 요구하여도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 의회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운송업체에 재정지원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의 부적절함을 지적('09년, ○○도)

※ '05년 ○○시는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내역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10. 4.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2005구합9171)

운수회사별 적자노선보조, 시설개선사업등 항목 및 일자별 지원보조금 지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원가산정 및 정산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등에 의한 보조금 집행과정의 통제를 강화토록 하였다

- 공개대상 원가 관련 정보(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 제외)
  - 보조금 집행현황 : 사업계획서, 운송보조금 항목별 · 회사별 지원내역 등
  - 원가계산서 : 버스 종류별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근거 및 결과 등
  - 경영평가 항목별 결과 등
- 공개시기 : 원가산정결과와 경영평가결과는 결과산정 즉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집행결과는 분기별(반기별) 집행후 즉시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예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전국광역자치단체)

현행	개선안
(신설)	제00조(정보공개) ① 시장(또는 도지사)는 매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명령노선보상금 포함)의 사업계획서와 지급한 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근거와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매년 초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와 지급한 내역은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보조금 집행 후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운송원가 산정근거와 결과는 매년 초에 공개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에 명시

4) 버스 운송보조금 지급 범위 및 기준 구체화

(1) 현황

운송버스의 재정지원 보조금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제2항)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 재정지원금의 종류 :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환승보조금, 유가보조금, 낡은 차량 대체, 학생·청소년 공적할인부담, 공영버스 구입 및 운영비 등

특히 비수익노선은 비수익노선별로 적자 규모를 산출하여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다.

※ ○○시 : 노선별 원가산정 후 손실분 지급
○○도, ○○도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 준용

또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해 환승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법령상 지급 대상에 없는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재정지원금 산정시 보조금 지급 대상별로 필요성을 심사하여 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나, 지급 대상에 없는 기준으로 회사별 지원규모를 산정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다수 있었다.

- ○○도, ○○도, ○○도는 재정지원금 산정시 벽지노선(10%) 이외에 법령 등에서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유류사용량**(50%), **운행대수**(40%)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규모 산정('10.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 ○○시, ○○도는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금 산정시 법령 등에서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운행대수만**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규모 산정('10.4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재정지원금 지급대상은 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자치법규에 '별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았다.

나. 비수익 노선 지급 기준 불명확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명확히 산정한 후 적자손실분을 산정하여야 하나('03년 건설교통부 지침), 유류사용량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많았다.

또한 많은 자치단체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교통량 조사시 조사자와 운송업체와의 유착소지가 높고 시기별 실제 승차인원 차이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 ○○시의 ○○리 -○○리 구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5,841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하는 방식 적용시 4,764천원의 이익발생('10.6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노선별로 일관성이 결여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이 저해되는 자치단체가 있었으며,

• ○○군은 '09년 마을버스 적자노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부는 운송원가 부족분으로 191백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기준을 준용하여 242백만원을 지급('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동일노선을 벽지노선 구간과 이중으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과다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환승보조금 지급 기준 불명확

환승보조금 지급은 환승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결손액을 보전해주는 취지이나, 환승제도 시행이후 버스 이용 승객 증가에 따른 이익율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지자체별 환승보조금 지원비율('08년, 국회입법조사처)〉

(백만원, %)

구 분	○○	○○	○○	○○	○○
환승손실액(A)	1,894,000	744,000	342,000	8,000	1,500
실제지원액(B)	1,000,000	480,000	161,000	8,000	1,500
지원율(B/A*100)	52.8	64.5	47.1	100	100

(3) 개선방안

먼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적자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한 후 수입금을 차감한 손실분의 일정 규모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적자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토록 하여 재정지원금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구간 지정의 중복으로 발생되는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이중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한편 환승보조금 산정시 승객증가율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고 법령의 지원대상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은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며,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다.

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전국광역자치단체)

현행	개선안
제00조(재정지원) ·····	제00조(재정지원) ·····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2.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환승할인재정지원 규모는 환승제도 시행이전보다 당해년도 발생된 승객증가율 중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3. (삭제)
(신설)	**제00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재정지원의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도지사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도 및 도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중 도지사(시장 · 군수)가 지정한 노선으로 한다. ② 지정된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벽지노선 구간과 중복되지 말아야 한다 ③ 노선별 손실보조금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별표 1]** 노선별 손실보조금 산정

구분	산 정 방 식
손실보조금	**(A − B) × 조정비율** A(보조금 지원대상 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원가) : 최근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보조기간중 총운송원가 B(보조금 지원대상 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수입금) : 매년 시에서 전수조사 또는 운송수입자료 등에 따른 보조기간 중 총 운송수입금 **조정비율** : 매년 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

5) 운송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 운영

(1) 평가대상 조문 :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등

제00조(구성)

① ○○도 버스정책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도의회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2명**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 연구원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버스업체대표(협회 · 조합 포함)나 운수종사자 대표**
6.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5.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시 · 군과 시 · 도간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버스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현황

많은 자치단체가 버스 재정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심의 대상은 버스정책방향,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교통전문가와 버스업체 대표,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경찰청 교통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자치단체는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버스 운송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제점

많은 자치단체는 운송업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경비등이 포함된 보조사업계획서 심의와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심사기준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

- ○○도의 한 운수업체는 '09년 연초에 제출한 보조금 사용계획서상 항목에 없었고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운수종사자의 추석선물 구입비로 2,300만원 사용('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도, ○○시, ○○도, ○○군 보조금 사용 정산 절차 미이행('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이 자치단체장의 자의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운송업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우려되었고, 재정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이 저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 ○○시 등 9개 자치단체는 버스운송사업체 관련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10.4월, 권익위 실태조사)

(4) 개선방안

먼저 버스재정지원 관련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기존의 유사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보완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심의를 강화토록 하였다.

※ 심의대상 :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또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제한토록 하였고 심의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버스운송사업자, 협회, 조합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동의로 진술이 가능토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운송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제한하며, 심의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다.

예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현행	개선안
제00조(구성)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도의회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2명**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 연구원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버스업체대표(협회 · 조합포함)나 운수종사자 대표** 6.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조(구성)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삭제)**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 연구원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삭제)** 6.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④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0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4. (이하 생략)	제0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버스**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5. **버스 재정지원관련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이하 생략)
(신설)	**제00조(위원의 제척 · 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현행	개선안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에 명시

6) 원가 자료 제출 거부 업체에 대한 제재 신설

(1) 평가대상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등

- **제00조 (보조금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호의 사업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에 한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현황

버스 재정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는 관계 법령에 의해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비수익 노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03년 건설교통부 지침)

(3) 문제점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버스업체는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각종 회계서류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 • ○○시, ○○시, ○○시의 경우 버스회사의 영세성을 이유로 다수의 버스업체가 관련자료 미제출 ('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4) 개선방안

사업계획서, 정산서 및 원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서류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예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현행	개선안
제00조 (보조금 지원의 중단) (생략)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신설)	제00조 (보조금 지원의 중단) (생략)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에 명시

7)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 인센티브제 강화

(1) 현황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되어 있으며, 재무구조의 건전성, 운행의 정시성,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등을 2년 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평가결과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알리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문제점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 운송업자는 적자 손실이 늘어나더라도 매년 손실분의 일정비율을 지원받음으로 인해 도산 등의 위험이 줄어드는 등의 요인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그 예로써 현금수입금의 탈루 및 횡령으로 적자 손실액 금액을 확대하거나 성과이윤을 받기 위해 공제조합에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 ○○시 (주)○○운수는 현금수입금 2,770만원 탈루 및 횡령('07년 MBC 보도)
- '09년 ○○시 시내버스 업체 직원 6명이 300여회에 걸쳐 수입금 400여만원 탈루 적발('09. 6월, 일간지 △△)
- ○○시 한 운수업체는 성과이윤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고 해당 운전사에게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김('10.4월 권익위 실태조사)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운송원가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었고, 장부정리를 소홀히 하거나 폐차 등록절차를 지연하여 운송원가를 상승시키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 사용하지 않은 연료(9개사, 23,855리터)를 장부에 사용한 것으로 하여 운송원가를 상승시킴('07. 11월 ○○시)
- 차량의 폐차 등록절차를 지연하여 지연기일 동안 폐차된 차량이 운행차량으로 인식되어 고정비(차량운영비)를 부당하게 수령('07. 11월 ○○시)
- 운송업체가 법인명의의 승용차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유류비용 등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07. 11월 ○○시)

또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더라도 주로 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버스운송업자가 운송원가를 절감토록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선방안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평가지표를 경영평가 지침에 반영토록 하였다.

※ 경영평가 지표 : 가점항목(수입금 관리 투명성, 회계인프라 구축, 장애인 고용 등) 감정항목(회계서류 미제출, 원가부풀리기, 보조금 과다청구 등)

>> 경영평가 항목(예시)

- **회계자료 제출** : 원가산정을 위한 각종 회계서류 등의 자료와 사업계획서, 운행실적, 보조금 수령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점
- **회계기준 준수, 회계인프라 구축 여부** : 회계정산시 올바른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영세업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
- **수입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부대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입금 관리 투명성에 노력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 **도덕적 해이** : 정부보조금 누락, 영업외 수익 미기재, 폐차등록 지연 등을 통한 원가를 부풀리는 사례 발생시 보조금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부여
- **경영개선** : 노후버스 감차,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 향상과 운송원가를 절감시키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전국광역자치단체)

현행	개선안
(신설)	제00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마련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 직접평가 사례

조례명 :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대상 조문 1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이하 "원부자재센터"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한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접근성과 공개성(3-1), 부패통제장치(3-3)

(2) 현 황

이 조례안은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의 형식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이사회의 구성, 재산 및 회계, 조직, 해산 등의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 사업비는 '12년 까지 국비 15억과 시비 15억씩 총 30억원으로 시 자체의 투융자심사를 거쳤으며 조례제정 이전 부터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다.

(3) 문제점

그러나, 보조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적합성 및 보조사업 능력이 검토되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별도로 주무부처의 설립 승인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국비를 보조하는 주무부처(지식경제부)에 의해 사업주체(센터)의 설립과 목적, 사업수행능력 등이 검토되지 않아 사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가 대부분 국가 및 광양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사회가 자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4) 개선방안

센터의 설립 형식을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주무부처의 설립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관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토록 하였다.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이하 "원부자재센터"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한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이하 "원부자재센터"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한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대상 조문 2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 · 회계 ·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부패통제장치(3-3)

(2) 현황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 등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광양시장이 센터의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실경영 및 직원의 비리 발생 시 적극적인 시정명령 등의 제재장치가 미비하고 시민들은 센터의 사업계획 타당성 및 결과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4) 개선방안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예산서 및 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부실경영 및 비리 발생시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하였다.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 · 회계 ·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 · 회계 ·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평가대상 조문 3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원부자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및 겸임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재량범위의 적정성(1-2)

(2) 현황

시장은 원부자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센터의 사업이 대부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기관은 보조사업자를 객관적으로 관리 · 감독하여야 하나 온정주의 발생 및 감독기관과 센터의 유착으로 인한 감독기능 부실 우려가 있다.

(4) 개선방안

해당조문을 삭제하여 객관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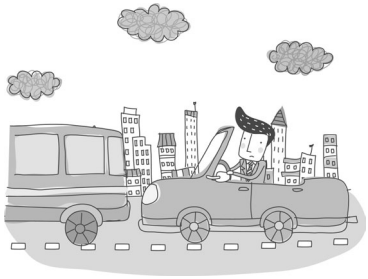

제4절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입법례 사례

1. 개요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그 수가 방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자치단체가 자율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패영향평가 담당자들은 부패영향평가가 강제성이 없어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무부서에서 평가 의뢰를 하지 않거나 개선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등 반발이 심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부패영향평가를 내부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감사담당 부서가 아니면 평가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행을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규칙(훈령, 지침)등으로 규정하여 의무화 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자치법규에 규정할 경우 자치법규는 법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부패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자치법규 제 · 개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므로 자치법규로 평가 규정을 두어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치법규 형식 중에서도 조례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 내부의 업무 성격을 지닌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0년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 후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부패영향평가 근거 조문을 넣고 또 그 세부규정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등 아주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주요 내용

기존의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먼저 제2조에 부패영향평가의 정의 규정을 두었으며,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입법안 작성 시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였다.

실시 대상은 자치법규, 훈령 · 고시 · 공고, 각종 행정지침으로 규정하여 자치법규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 · 개정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 등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절차는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등을 제 · 개정시 감사담당관실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요청토록 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다.

(2) 세부 규정

근거 규정은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광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참고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참고 1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령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자치입법 조례"라 한다)를 따르는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2. "평가"란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입안을 함에 있어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자체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주무부서의장(이하 "법제담당관"이라한다)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요문서"란 제2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제3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사전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자치법규 입안의 작성

제1절 입법안 작성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담당관 · 과 · 소(이하 "관련과"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과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부패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와 훈령 · 고시 · 공고, 각종 행정지침(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에 대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규정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제 · 개정 자치법규'라 한다)에 대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 · 개정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우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와 훈령 · 고시 · 공고, 각종 행정지침(이하 '현행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에 대해 직접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참고 2 광양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이의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의견 : 제3조에 따른 평가 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2. 개선의견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의2 (부패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와 훈령·고시·공고, 각종 행정지침(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에 대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규정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 내지 [별표 3-9]의 점검기준에 유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

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 · 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①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제8조 내지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이의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① 부패영향평가담당자(이하 '평가담당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부패요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당해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2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담당자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 · 단체 등과의 공청회 ·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 · 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① 평가담당자는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준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는다.

1. 제 · 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 : 감사담당관
2. 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 : 부시장

② 평가담당자는 주요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평가결과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나 철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은 당해 자치법규 등의 원 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단체와 합동토론의 절차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재평가 결과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결재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그 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공자 포상)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여부만 검토한다구요?

조사관 김 상 우

♬ 생소한 분야의 일감이 왔어요.

2011. 2월 국토해양부 관련법률 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의뢰받았지요.

개정내용 중에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연구 ·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식승인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로 행정업무만을 담당해온 저로써는 생소한 분야이고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되기에 처음에는 문제될 것이 없겠다 싶었지요.

☞ 국내의 가스, 전기, 기계, 각종 측정장치 등 대부분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안전성 보증 등을 위하여 기기별 성능검사를 포함한 형식승인 절차를 통과하여야 함.

♬ 어느 날 문득, 그리고

그런데 평상시 주로 경제신문을 보고 있는 저는 오래전 경제일간지에서 읽었던 대우조선해양이 미국표준이 아닌 국내표준을 기준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아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문득 떠올랐죠.

이 건과 관련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가간 기술 성적을 상호 인정해주는 제도(국제인정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하였죠.

검토가 진행될수록 각종 시설장비 등을 국내에서 인정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에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수출과 관련한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이러한 시험 · 분석시장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산업임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면제하면 수출을 한 후 외국에서 검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부 유출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평가의뢰부서에 설명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켰지요.

♬♬ 고마워요, 가슴 뭉클한 뿌듯함

의뢰부서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며칠 후 권고내용을 수용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 근무하면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무언가 한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던 그 때를 생각하면 정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부패영향분석과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부패발생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지만, 그 외에도 국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 본다는 거 이제는 아셨죠!

제6장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진단 · 평가

제2절 인사 · 감사 · 계약 등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제3절 심의 · 의결위원회 사규 부패영향평가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자율평가 개선과제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진단 · 평가

(1) 추진 배경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유관단체의 윤리 경영 선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규 · 정관 등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관리나 운영이 불투명하여 공직유관단체 부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 · 개선하는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 방식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지침」의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내부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는 우리 위원회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관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3) 2010년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추진 성과 및 진단

우리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체계 구축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실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업무 체크리스트와 풍부한 사례가 담겨 있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담당자가 실제 부패영향평가 업무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평가 대상 기관에 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부패취약 분야 관련 사규에 대해 직접 부패영향평가를 실시,개선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 기관에 전파하였다.

특히 인사 · 조직 등 대표적 공통 업무 및 심의 · 의결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규 개선사례를 선정 · 보급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을 자율적으로 검토 · 개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공직유관단체 및 위원회 공동의 노력으로 이제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적 확산에 버금가는 실질적 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급기관의 노력이 실질적 부패방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확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실무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절 인사 · 감사 · 계약 등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1) 수의계약 체결기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 지속적 특혜시비 발생
- 대부분의 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법령보다 강화된 금액 기준 적용

■ 개선방안

-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금액 기준 강화
  - 국가계약법상 현재 물품 · 용역 5천만원(공사 2억)과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가능금액 기준을 강화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부패통제장치 마련

2) 계약관련 정보공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빈발
- 원 · 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관련 부패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
-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하도급 현황 등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미공개

■ 개선방안

-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3) 청렴계약제 도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청렴계약제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징구 등으로 운영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필요
  - 특히 제재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재기간 경감을 불허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

■ 개선방안

-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 모든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청렴계약 위반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의 경감 불허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 경감 불허

4)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내부직원으로만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배제하여 승진, 특별채용 등 인사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저하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102개) 중 76개 기관이 내부직원만으로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를 구성

■ 개선방안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연임제한 규정 마련
- 특별채용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5)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조사 ·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의원면직함으로써 재취업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불허

6)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비위 공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불신 초래
- 공금횡령 직원을 고발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행태 만연

■ 개선방안

- 금품 ·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등 부패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공금횡령범죄 형사고발을 위한 자체 세부기준 마련

7) 감사업무의 공정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업무 관련자와 학연, 지역연고,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감사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
- 자체감사가 외부인사 참여없이 내부직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처리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 개선방안

- 감사수행시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명예감사관제, 감사참관인제 등을 통해 감사담당자가 아닌 학계 ·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감사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사과정을 참관
- 교차감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 동일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간에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연고 · 온정주의가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8)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과정 등을 감시하는 청렴옴부즈만은 공정한 활동이 필수적이나,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연임제한규정이 없는 기관도 존재

■ 개선방안

-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및 자격 요건 구체화
  -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자격증, 실무경력 등 기관운영의 감시 및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연임제한, 제척 · 기피 · 회피 등 청렴옴부즈만 활동의 공정성 제고 장치 마련

9)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클린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유흥업소 사용사례 지속적 발생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개선방안

- 노래방, 실 · 내외 골프장(스크린골프장 포함) 등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모두 반영
- 법인카드 사용시 카드전표에 소속 및 실명 기재 의무화
- 사용제한 업소, 위장가맹점 이용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제재조치 강화

10)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 빈발
-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내역이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이라고만 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객관적 통제 장치 미흡
- 상품권이나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자의적인 사적 사용 초래
-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미흡

■ 개선방안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 심야 및 휴일 사용, 자택 근처 사용 등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 심야 · 휴일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출장명령서 등) 제출 의무화
- 상품권 및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
  - 상품권 및 화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입내역(일시, 수량, 구입처 등) 및 배부내역(배부수량, 수령인명)을 기록하고 관리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 규정을 사규에 마련
-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대상금액 기준 강화
  -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에 회부하여 실시하는 일상감사 대상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고 대상금액 기준을 강화

제3절 심의·의결 위원회 사규 부패영향평가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내부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협회 또는 학회에 외부위원 위촉을 일임 또는 할당함으로써 자의적 선정 문제 발생
- 또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이 모호하게 규정
-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이 장기간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관계 형성 가능
- 일부 위원회는 감독부처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 개선방안

- 외부위원 위촉시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단(Pool)을 구성·위촉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증, 실무경력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해관계자와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제한
- 감독권한에 따른 영향력 행사로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부처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2) 민간위원의 청렴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위원의 관련 법령 위반, 부패행위 전력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촉될 가능성
  - 위촉된 후에도 윤리확보와 부패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로비창구가 되는 사례 빈발

■ 개선방안

- 부패행위 관련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구체적으로 명시

– 위원 위촉시 부패행위 전력자, 관련 법령 위반자 등을 배제하고, 위원 활동 과정에서 금품수수,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행위시 해촉을 의무화

- 민간위원 위촉시 윤리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시행

3)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위원의 개인이익과 공적이익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제척 · 회피 · 기피 제도 규정 미비
- 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등 유착사례가 발생하여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 개선방안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장치 마련
-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 또는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 ·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금지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회의결과만 요약 · 정리하여 회의내용에 대한 사후적 확인 불가)

  –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혹 제기 소지

- 106개 위원회 중 20개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86개 위원회 중에서도 10개 위원회만 회의록 공개를 규정
- 회의록에 대한 위원장 또는 위원의 확인 의무가 없어 담당자 등이 임의작성 처리하여 공문서 조작 가능성도 상존
- 위원회 회의록의 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106개 중 31개로, 이 중 17개 위원회만 위원 전원의 서명을 의무화

■ 개선방안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법령에 따라 위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회의 내용 전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언 요지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형태로 첨부하여 보관
- 일반인에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
-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규정

5)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위원자격이 없는 민간인사가 대리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거나 근거규정 없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편법운영 사례

■ 개선방안

- 대리참석이 불가피할 때에는 법령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금지
- 모든 위원회는 대면심의 ·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 · 의결은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한 경우에만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이해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하여 신청인의 권익보호에 소홀
- 개최일시 등 위원회 일정공개 및 심의 · 의결 후 결과통지 기한 규정이 없이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신청인이 예측 곤란

■ 개선방안

- 이해관계인의 회의참석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신청인에게 안내의무화 규정 마련
- 개최일시 등 위원회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의기간 및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통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자율평가 개선과제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계약규정

제4조(특수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시기 규정 미비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황 및 문제점

-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시기 규정 미비
  - 부정당업자 제재 시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有無 차이 발생
    ⇒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확대로 담당자에 대한 청탁 가능성 상존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명확화
  - 매월 2째주 개최를 원칙으로 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조(특수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신설〉	제4조(특수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을급)는 매월 둘째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와 방법을 이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계약규정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본문생략) 다만, 당사 사정에 의할 경우 계약체결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적정성(2-2)

(2) 현황 및 문제점

- 낙찰후 10일 이내 계약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서 체결기한 연장 조항 미비
  - 당사 사유인 경우에는 30일간 연장이 가능
    ⇒ 발주자의 사유만 인정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민원유발 가능성 상존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체결기한 연장가능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이하생략)--- 한다. 다만, 당사 사정에 의할 경우 계약체결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이하생략)---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약규정

제14조(견적자의 선정)
① 입찰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자 중에서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견적서의 징구)
①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견적의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2) 현황 및 문제점

-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음
- 가격조사의 경우에도 견적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견적서 징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담당자별 업무처리 방법 상이(문서, 구두요청)
  - 1인 견적자가 경쟁업체의 견적서를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도 확인 곤란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가격조사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규정화
- 문서, 견적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요청으로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4조(견적자의 선정) ① 입찰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자 중에서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견적서의 징구) ①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견적의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견적자의 선정) ① 가격조사를 하거나 입찰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자 중에서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견적서의 징구) ① 견적서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입찰시스템(견적의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업무처리기준

제7조(입찰참가) ①~② (내용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 · 직원에 한하며, 임 · 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황 및 문제점

- 입찰 대리인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불명확
  - 현행 사원증, 재직증명서는 위 · 변조가 가능
  - 업무담당자의 정확한 진위확인 곤란으로 입찰참가 관리 곤란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제출 구체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입찰참가) ①~② (내용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 · 직원에 한하며, 임 · 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 · 직원에 한하며, 임 · 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 · 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4. 기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한전전자상거래 전자입찰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입찰자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사업자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사 사업소에 제출하여 전자입찰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이 본사(본점)와 별도로 지점명의로 회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거나 정관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전자입찰용ID 발급(변경/폐기) 신청서 (당사 소정 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4. 법인지점인 경우 본점의 "지점등록이행각서" 1부
5. 면허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면허수첩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입찰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신규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 소정 양식에 따라 전자입찰용ID 발급(변경/폐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출입책임자(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날인)
2.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3.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 자료
4. 법인등기부등본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2)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입찰 업체 등록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도 한전에 업체등록 서류제출 및 담당자 승인 필요

– 한전과 조달청에 중복등록신청으로 업체 불편 초래 및 불필요한 대면접촉 유발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조달청 업체 등록정보 연계 및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으로 업체등록 처리(별도 서류제출 불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5조(전자입찰 입찰자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사업자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사 사업소에 제출하여 전자입찰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이 본사(본점)와 별도로 지점명의로 회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거나 정관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전자입찰용ID 발급(변경/폐기) 신청서(당사 소정 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4. 법인지점인 경우 본점의 지점등록이행각서 1부 5. 면허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면허수첩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제5조(전자입찰 입찰자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2영업일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국전력공사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2) 현황 및 문제점

- 신임 임원은 임명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현행 법령 및 규정상 건설본부장(계약직)은 임원(이사)이 아님

  – 이사회 안건 제안 및 의결 참여권 없음

● 그러나, 건설본부장은 상임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 준수가 요구됨

–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에도 체결대상 별도지정 가능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상임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도 청렴계약 체결대상 추가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따라 임원청렴계약을 체결하는 적용대상(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2. 상임감사위원 3.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 4.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에서 정한 상임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리스크감시업무 운영세칙

제10조(감시수준의 차등화 등) ③ 상시감시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개별 부보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별표 4의 감시단계별 상시감시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시단계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황

- 리스크감시모형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감시단계를 차등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시단계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문제점

- 리스크감시모형 운영 결과 낮은 감시단계에 해당됨에도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높은 감시단계로 조치될 경우 해당 부보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 감시단계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재량의 행사범위와 그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다만,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로 수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0조(감시수준의 차등화 등) ③ 상시감시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개별 부보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별표 4의 감시단계별 상시감시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시단계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감시수준의 차등화 등) ③ 상시감시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개별 부보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별표 4의 감시단계별 상시감시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감시단계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

자금융자 업무지침요령

제5장 제1절 신용대출

3 나. 부실악화, 업체 자금상환, 사업지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실발생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환이 필요한 경우 본사(자금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감액 또는 상환 조치없이 대환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황 및 문제점

- 부실악화, 업체 자금상환, 사업지속 여부 등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실악화, 업체 자금상환, 사업지속 여부 등 고려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개정 필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5장 제1절 신용대출 3. 본사승인 나. 부실악화, 업체 자금상환, 사업지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실발생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환이 필요한 경우 본사(자금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감액 또는 상환 조치없이 대환할 수 있다.	제5장 제1절 신용대출 3. 본사승인 나. 다음과 같이 부실발생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사(자금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감액 또는 상환 조치없이 대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활동 및 자금상환이 악화된 경우 (2)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액 감소 (3) 거래처의 부도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

KORAIL 한국철도공사

역 주차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영업의 위임 또는 양도, 임대금지)
영업인은 주차장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임대할 수 없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황

- 철도조직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역 주차장이 산재되어 있으나, 주차장의 관리 ·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이 부재
- 각 지역별 천차만별의 주차요금 징수에 따라 관련민원 다수 발생
- 역 주차장의 개발 및 관리운영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한 역 주차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이 필요

(3) 문제점

- 영업인(수탁자)이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임대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제재수단 규정이 없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영업인(수탁자)이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임대하였을 경우에 대비해 영업승인 취소 등 충분한 제재수단을 마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1조(영업의 위임 또는 양도, 임대금지) 영업인은 주차장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임대할 수 **없다.**	제11조(영업의 위임 또는 양도, 임대금지) 영업인은 주차장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영업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사유화차취급 및 유지보수 지침 일부개정(안)

제33조(경비의 산출기초)
[별표 2] '사유화차 유지보수경비 산출방법 표준'
보수비={(재료비+공비)+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10%)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2) 현황

- 사유화차 사외공장 검수 확대 시행에 따라 사외검수 차량에 대한 취급 및 유지보수 기준의 재정립 필요
- 또한, 사유화차 유지 보수경비 산출방법의 경비항목과 산출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표준화 필요

(3) 문제점

- 개정안에는 보수비 산정 시 공비와 일반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였으나, 「원가계산 지침」에 의한 월별 '차량유지보수원가'에는 공비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상
- 또한,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이윤을 계상하여야 하나 본 개정안에는 이윤을 누락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유화차 유지 보수경비(수선비, 보수비) 산출의 적정성 확보
  - 개정안 : 보수비={(재료비+공비)+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 개선안 : 보수비=재료비+공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3조(경비의 산출기초) [별표 2] '사유화차 유지보수경비 산출방법 표준' 보수비={**(재료비+공비)+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10%)**	**제33조(경비의 산출기초)** [별표 2] '사유화차 유지보수경비 산출방법 표준' 보수비=**재료비+공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10%)**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 영업대행 약관

제10조(사고)
① 공사의 영업대행업무 수행 중 공사 또는 방송국의 착오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약자의 사정으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었을 때에는 광고료를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③ 공사의 영업대행업무 수행 중 공사 또는 방송국의 착오로 청약자의 방송광고가 방송된 때에는 공사와 청약자가 상호협의하여 처리합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황 및 문제점

- 방송광고 청약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 존재
  - 방송광고 청약자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의 처리 기준이 상호협의로 규정되어 청약자의 경제적 부담 발생 가능
  - 용어('사고')의 불명확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필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방송광고영업대행약관의 개정시 제10조의 제목 수정(사고 운행 불일치) 뿐만이 아닌, '운행불일치'의 개념 명확화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할 것
  - 방송광고청약자의 사정에 의하지 않은, 운행불일치 발생시 광고료 청구하지 않도록 조문 개정할 것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0조(사고) ① 공사의 영업대행업무 수행 중 공사 또는 방송국의 착오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운행불일치) 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공사의 영업대행업무 수행 중 공사 또는 방송국의 착오로 청약자의 방송광고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2. 청약자의 사정으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3. 청약자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
② 청약자의 사정으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었을 때에는 광고료를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③ 공사의 영업대행업무 수행 중 공사 또는 방송국의 착오로 청약자의 방송광고가 방송된 때에는 공사와 청약자가 상호협의하여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제1호, 제3호의 경우 해당분의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제2호의 경우 광고료를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재산관리규정

(별표2) 표준임대차계약서(업무시설)

제4조(임대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①~④ (생략)

⑤ 임대목적물의 가액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2)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건물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반영 등 재산재평가 이후 임대료의 증가요소가 있을 경우, 임대료 증액부과
- 증액의 경우만 적시되어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형평 초래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임대목적물에 대한 평가결과 임대료 감액요소가 있을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⑤ 임대목적물의 가액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료를 **가감**하기로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단, 물품 제조의 계약에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계약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품질보증 구분이 곤란하거나 회사에 특히 유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2) 현황

-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3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공사, 제조(물품제조를 제외), 용역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물가조정 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해서 물가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문제점

- 우리 회사는 2010.10.1.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회사 계약관련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과 같은 제한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인 설계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어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본건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의 규정과 같은 검증절차(例. 특수심의원회 심의 및 사장 결정 등)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함께 개정(신설)하여 시행

서울메트로

위원회설치 · 운영예규 제정(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사전에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 ④ (생략)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3)

(2) 현황

- 참고 사례

– 재산심의회

제7조(서면심의등) ①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서면심의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재산가액 또는 대부료, 임대료가 1,000만원이하인 것을 말한다.

– 인사위원회

제49조의2(서면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95.9.6)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② 상벌위원회에서 포상심의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문제점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라 함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그 결정권자의 재량 범위가 분명하지 못하여 안건에 따라 자의적으로 서면결의에 부칠 가능성이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경미한 안건의 범위를 금액기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도록 하여야 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 ④ (생략)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다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위원회설치 · 운영예규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 ⑤ (생략)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황

- 위원회 참석수당
  -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1일 7만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3만원 추가

● 위원회 심사수당

– 법령 · 조례,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예산특별성과금 심사수당, 투자심사 수당 등

※ 2010년 예산집행 세부지침

(3) 문제점

● 내부 · 외부위원의 구분 없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내부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수당 지급대상을 '외부위원'으로 명확히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위원회설치·운영예규

제8조(수당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일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별도 지급기준 필요시 위원회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2) 현황

- 수당 지급금액

구분		현행	조정	비고
계		23만원	20만원	
참석수당	기본	10만원	7만원	1일 2시간 이하
	추가	3만원	좌동	2시간 이상시
자료검토수당		10만원	좌동	사전 자료검토시 지급가능

(3) 문제점

-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본 7만원, 2시간 이상 시 추가 3만원으로 규정하고서 단서조항으로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액지급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며, 재량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량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당 지급금액의 불명확성을 해소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8조(수당 등)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일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별도 지급기준 필요시 위원회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조(수당 등)**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일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③ ~ ⑤ (제정안과 같음)

KOMSCO
한국조폐공사

고객불만처리지침

제7조(처리기간) (생략)
1.~2. (생략)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2) 현황 및 문제점

- 고객불만 처리기간 미준수시 고객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 신설
- 처리기간 명확화를 위한 조문 신설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규정 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처리기간) (생략) 1.~2. (생략)	제7조 (처리기간) ① (생략) 1.~2. (생략) 3.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고객불만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만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불만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2. 고객불만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감정 · 검사 ·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고객불만처리지침

제8조(처리절차) ①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불만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 "고객불만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 "고객불만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2) 현황 및 문제점

- 고객불만의 접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전직원에게 접수권 부여 및 부당한 접수거부 금지
- 고객불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VOC시스템 등재의무 규정 및 하부기관 권한 위임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규정 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8조(처리절차) ①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불만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 "고객불만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 "고객불만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처리절차) ①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다른 규정 또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객불만사항은 직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최초로 접수한 사람은 접수내용을 지체없이 VOC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총괄부서 또는 주무부서로 신속하게 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객불만사항을 접수한 주무부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등을 VOC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하부기관에서 접수한 일반처리 불만사항 중 소속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우선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VOC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주택자금지원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복지규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주거안정자금"이라 함은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금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2) 현황 및 문제점

- 주거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해석의 논란이 있고, 실제 업무 적용시 확대 해석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어 한정적으로 규정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규정 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복지규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주거안정자금"이라 함은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금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복지규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주택마련 및 임차를 위한 자금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주거안정자금"이란 **무주택 직원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 시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9.12.28.)

주택자금지원요령

제24조(제재)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당해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최종 자금회수일로부터 3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지원금액의 유용 및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 ~ 10. (생략)

(1) 평가항목

- 제재의 적정성(1-2)

(2) 현황 및 문제점

- 부정하게 주택자금을 수혜한 자에 대해 향후 지원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정수혜자에 대한 제재강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규정 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4조(제재)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당해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최종 자금회수일로부터 3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지원금액의 유용 및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 ~ 10. (생략)	**제24조(제재)**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최종 자금회수일로부터 5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다만, 제9호와 제10호는 지원금액의 유용 및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 ~ 10. (생략)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제4조(등급기준) 세부지침 제6조제4항의 전문가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의사의 전문가 등급 기준(안) (제4조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1 급	• 의사면허증 취득 후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민간 상장 · 등록기업 임원으로 6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 전문의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6년 이상 경력자
2 급	• 의사면허증 취득 후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민간 상장 · 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3 급	• 의사면허증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급 이상 공무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 민간 상장 · 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분야 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업무연관부서 근무경력 기준)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4 급	• 3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의사의 석, 박사 학위는 별도의 경력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1)

(2) 현황

- 전문가파견사업의 보건의료 전문가(의사 등)의 참여 증대
  - 현재, 의사의 전문가 산정기준은 별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나, 개별 전문가의 등급적용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개선이 촉구됨

- 타 분야 전문가 등급을 준용,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을 기준으로 의사의 전문가 등급기준(안) 마련 (관련:협보건-2617)

  - 전문가 등급(경력) 정산 시 특혜발생가능성의 차단 효과

(3) 문제점

- 의사의 전문가 등급 기준(안)의 자격요건 내용이 불분명하여 등급 정산 시 업무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일반 전문가 등급 기준 내용과 혼합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높음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격요건의 명확성 검토 필요
- 특정 분야(보건 · 의료 분야)를 명시
- 의사의 전문가 등급기준 개선의견(안)

구 분	자 격 요 건
1 급	• 의사면허증 취득 후 20년 이상 경력자 • 의사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보건의료분야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으로 6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 전문의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6년 이상 경력자
2 급	• 의사면허증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 • 의사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보건의료분야 4급 이상 공무원 – 보건의료분야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전문의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3 급	• 의사면허증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 의사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보건의료분야 5급 이상 공무원 – 보건의료분야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민간 상장·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분야 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4 급	• 3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시행세부지침

제27조(유숙소의 운영) 협력단은 봉사단파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예측가능성(3-2)

(2) 현황 및 문제점

- 해외봉사단 유숙소 설치 및 운영지침의 부재
  봉사단 유숙소 운영지침의 부재로 무분별한 남용 발생
  - 수도권 단원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지방거주단원 이용 곤란
  - 단원간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 발생
- 파라과이 사무소, 유숙소 폐지 건의 (2010.9)
  - 유숙소 운영상 애로사항 다수 발생
  - 유숙소 폐쇄, 공적업무로 상경한 지방단원에게 숙박비 지급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봉사단 유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봉사단 유숙소 운영과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방지
- 주요 내용
  - 봉사단 유숙소 설치기준 명확화
  - 봉사단 유숙소 사용용도의 명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U-City 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

3.1. 설계변경 조건

(1) 사업지구의 여건이 특수하여 설계용역 발주시보다 과업이 추가 또는 축소되는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별도의 방침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특정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본 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적정대가 산정방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지구 여건이 특수하여 설계용역 발주시보다 과업이 추가 또는 축소되거나 이 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인 사업지구 여건의 특수성 또는 기준 적용의 곤란 등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주체(방침의 최종결정자)가 누락되어 있어 재량기준의 명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준 적용 예외사항에 대한 사업지구의 특수성 및 적용 곤란에 대한 판단주체 및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

광역적 사업추진계획 수립 업무지침

제12조(광역적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절차)

⑤ 사업주관부서장 및 각 지역본부장은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연차별 사업 종류별 개발가능 후보지 추진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후보지 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토지수급계획담당부서장과 협의 후, 개별사업에 대하여 사장방침을 득하여 추진하고 매년 말 수립하는 광역적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2)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이 시급한 경우 후보지 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연차별 사업 종류별 개발가능 후보지 추진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주관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이 후보지 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급성에 대한 판단재량이 광범위하고 불분명함(시급성 판단을 남용하는 경우 후보지 조정회의 운영취지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후보지 조정회의가 생략되는 사유인 '사업의 시급성' 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폐비닐처리기술 공모사업 관리운영지침

- 공모신청 자격
  - 제안하는 폐비닐처리기술이 기술의 안정성, 발전성 또는 효율성 등 측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실증시설로 처리기간 내 배정물량을 시범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 관련기술, 처리시설 및 장비를 직접운영(기술, 시설 전속사용계약 포함)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체에 한함
  - 환경관련 인, 허가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체에 한함
  -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채택된 기술을 공단 지정일까지 협약체결 가능한 자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재량범위의 적정성(2-2)

(2)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환경공단은 저급 영농폐비닐의 민간 재활용 기술향상과 산업발전을 위해 폐비닐처리기술공모 사업을 시행하 수행업체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업무를 지침과 같은 절차로 실시

- 공모신청 자격 중 환경 관련 인 · 하가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체로 정한 자격기준은 구체성이 없어 재량규정의 명확성과 재량범위 적정성을 벗어날 소지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모대상 기술 참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량규정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

자금운용예규

> **제3조(자금관리)** 자금주관부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운용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별 자금계획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부패통제장치(3-3)

(2) 현황 및 문제점

- 자금주관부서장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간 및 월별 자금계획을 감안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선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음
- 주거래은행 선정절차 등 근거가 없어 특혜의혹 또는 투명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주거래은행 선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제도화할 것을 건의함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제50조(운영서비스평가) ① 공사는 휴게시설의 운영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운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의 시설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등 운영상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현저한 부실운영 등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외부기관 참여 또는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연간평가 결과를 계약기간 누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우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2) 현황 및 문제점

- 휴게시설(휴게소, 주유소)의 경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 결과 현저한 부실운영 등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현저한 부실운영 등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휴게시설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 수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계약해지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50조(운영서비스평가) ① ~ ② (생략) ③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현저한 부실운영 등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50조(운영서비스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운영자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록

1. 부패영향평가 제도 안내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익신고자 보호법

1 부패영향평가 제도 안내

부패영형평가 제도란?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1. 도입배경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 ·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 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27%는 "법령 등 제도정비"를 지목('03. 3. 청렴위 국민인식도 조사)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 · 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 ·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 차단 필요('03. 12. 국무회의 대통령)

2.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 입법과정에서의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3. 평가대상

- 법 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자치법규 : 조례, 규칙 등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사규, 정관 등

4.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절차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 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통상 30일)까지 부패영형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 ·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 ·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게 통보

※위원회는 필요시 평과결과가 규제영향분석, 법령심사에 참고가 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에 평가결과를 통보

●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부처는 개선의견 반영결과를 법제처 심사의뢰시 위원회로 통보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 · 국무회의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후 필요시 관련의견 제출

5. 부패영향평가 기준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해 나가기 위해 부패유발요인을 공공부문의 공급측면, 민간부문의 수요측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행정절차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검토

- 공급측면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불완전한 재량권 행사에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세부 검토항목은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으로 구성
- 수요측면은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민간부문이 정책이나 제도에 순응에 따른 비용부담 차원, 즉 준수의 용이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세부 검토항목은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으로 구성
- 절차측면은 행정절차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처리기한·처리결과 등이 예측가능한지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세부 검토항목은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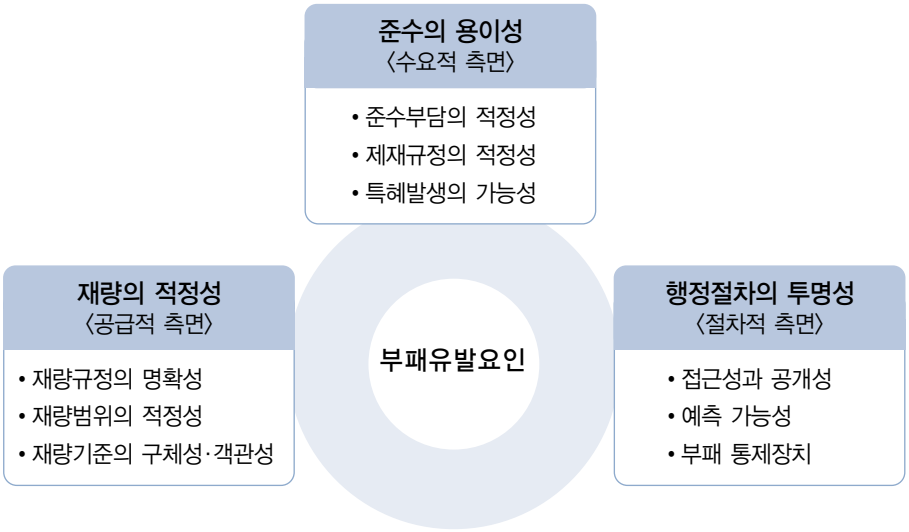

●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재량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량범위의 적정성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 설명이 없어도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근 성 공 개 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 측 가 능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 패 통 제 장 치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하거나 이해충돌 방지장치 등과 같은 부패가능성을 예방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참고 **부패영향평가 항목별 검토요령**

기본 검토사항

- 법령내용에 대한 문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의 적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 등을 분석 · 예측
- 법령 분야별로 관련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필요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에 적극 활용
- 기관 및 업무별로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분석결과, 수사 ·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내용 등 부패 실태자료를 관리하여 평가대상 법령 선정 · 분석과 개선안 마련 등에 활용

1.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개요

- 법령 등의 적용대상 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음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주요 준수자는 부담 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 내용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① 자세히 알고 있음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③ 잘 모름 ④ 전혀 모름	
나. 주요 준수자는 준수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① 필요하고 적정한 부담 ② 필요하지만 과도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④ 불필요하지만 부담은 적음	
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마.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 준수부담이 과도하다는 반응일 경우 주요 준수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부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사.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개요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검토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며,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에는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유사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라.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마.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특정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바.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 또는 미약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패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아.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자.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 개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 · 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판단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 · 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 주요 수혜자 · 이해관계인 등은 관련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다. 주요 수혜자 · 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가?	
라.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가?	
마. 혜택(특혜)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바. 특혜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사. 특혜(혜택) 부여가 불가피한 경우 그 정도가 필요한 수준인가?	
아.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할 수는 없는가?	
차. 부패소지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재량의 적정성

(4) 재량규정의 명확성

■ 개요

-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가 누구인지, 재량적 결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결정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단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나.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 고려사항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다. 재량권의 행사대상 또는 세부내용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라.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마.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바.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5) 재량범위의 적정성

■ 개요

●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관례에 비추어 특별히 벗어나 있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재량범위가 과도하고 자의적 남용가능성은 없는지를 판단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가?	
나. 법적 근거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마.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과도한 경우 적정한 재량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6)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 개요

● 재량기준의 구체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충이 없더라도 누구나 당해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

● 재량기준의 객관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법령 등에 명백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그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 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다.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평 가 지 표	평 가
마. 재량기준의 객관성 · 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바. 재량기준의 객관성 · 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7) 접근성과 공개성

■ 개요

● 접근성

– 이해관계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피력할 수 있는 참여제도(장치)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법령에 보장되어 있는가를 판단

● 공개성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도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나.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다.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라. 이해관계자 등은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 · 이해하고 있는가?	
마.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 · 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바. 이해관계자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사.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8) 예측가능성

■ 개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나.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다.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 · 절차 · 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라. 조건부 인 · 허가, 사전 인 · 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마. 관계기관의 협의 ·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 · 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바.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사.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아.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9) 부패통제장치

■ 개요

● 과도한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하거나 이해충돌 방지장치 등과 같은 부패가능성을 예방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판단

■ 체크리스트

평 가 지 표	평 가
가.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나.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 이해관계자 · 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다. 민원사무처리기본법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법령 등이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라.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가?	

평 가 지 표	평 가
마. 이의신청 사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존재하는가?	
바.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주고 있는가?	
사.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있는가?	
아. 평가대상 법령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가?	
자.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차.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카.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 이해관계자 · 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 ·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1.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 ·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1.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 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 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 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국회가, 1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 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 ·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 ·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와 조례 · 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1.7〉

⑤ 삭제 〈2009.1.7〉

⑥ 삭제 〈2009.1.7〉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부칙 〈제9968호, 2010. 1.2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 생략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제3조 (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

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 · 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 ·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 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 ·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 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 · 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 · 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 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 · 접수 · 분류 ·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 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 · 기피 · 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 · 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1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 조사 · 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 (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 · 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 · 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 ·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제74조에 따른 보상위원회 위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제26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7조 (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와 조례 · 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 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 · 기업 ·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 · 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 · 처리절차 ·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제36조 (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 (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 (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 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3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 ·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 (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6조 (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 · 내용 · 일시 ·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 · 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 · 사람 · 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47조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 · 성명 ·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 · 진술
4. 그 밖에 확인 ·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 · 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 (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 고소 · 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 (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4조 (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65조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 (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조 (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3조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 (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 (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

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 (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 (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 (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 (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 ·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 (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

호 ·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 (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88조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 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9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 · 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 · 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 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 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 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8]

제92조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 ·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

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

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472호, 2011. 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 행 일 : 2011년 6월

편집·발행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우편번호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전화 : 02) 360-6590(부패영향분석과)

팩스 : 02) 360-3549

인 쇄 : (사)한국장애인 e-work협회

전화 : 02) 2272-0307

팩스 : 02) 2272-0317